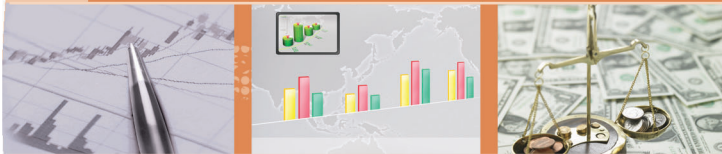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 12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국경탄소조정을 포함한 탄소세 논의와 동향

I 탄소세 배경 / 3

1. 국제적 환경 개선 노력 3
2. 탄소세 도입논의 7

II 국제기구 논의사항 / 10

1. 탄소배출 규제 관련 논의사항 10
2. 국경탄소조정 관련 논의사항 12
3.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 관련 논의사항 14

III OECD 국가의 탄소 배출 현황 / 17

IV 국가별 탄소세 운영 현황 / 21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 39

- 1. 미국 39
 - 가. FDII 및 GILTI 관련 최종 규정 발표 39
 - 나. 사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 최종 규정 발표 40
 - 다. CFC 관련 특정 배당금 공제 제한 규정 발표 41
 - 라. BEAT 관련 최종 규정 발표 42
 - 마. 바이든 정부 세제 개편 제안 43
 - 바.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부담 완화 정책 발표 44
 - 사. 연방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보고서 발표 46
- 2. 캐나다 47
 - 가. 공정 과세 관련 경제성명서 발표 47

II

유럽 / 49

- 1. 그리스 49
 - 가. 조세회피 방지 관련 법안 초안 의회 제출 49
 - 나.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세금 인센티브 확대 법안 제출 51
 - 다. 코로나19 관련 추가 조치 발표 52
 - 라. 2021년도 예산 초안 의회 제출 53
 - 마. 조세분쟁위원회 법원 외 조세분쟁 조정 기능 운영 결정 54
 - 바. 과세 거주지 이전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도입 55
- 2. 네덜란드 56

목 차

가. 상호합의절차 관련 재무부령 개정	56
나. 최종 수익적 소유자 등록 관련 법률 시행	56
다. 2021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57
라.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59
3. 노르웨이	60
가.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60
4. 덴마크	63
가. 녹색조세개혁이 포함된 국가기후정책 발표	63
나. 2021년도 예산안 발표	64
다. 녹색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탄소세 인상	64
5. 독일	65
가. 자녀부양가족에 대한 조세혜택 법률 초안 발표	65
나. 연례조세법안 초안 발표	66
다. 원천징수세액 감면 절차 현대화 법안 초안 발표	67
6. 룩셈부르크	68
가.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68
7. 벨기에	69
가. 코로나19 관련 급여세 원천징수액 한시적 감면 시행세칙 발표	69
나. 조세 시스템 현대화 추진안 발표	70
다. 고액 증권 보유에 대한 과세 결정	72
8. 스웨덴	72
가. 코로나19 관련 강제적 보고규정에 따른 보고기한 연장	72
나. 2021년도 예산안 발표	74
9. 스위스	76
가. 블록체인 거래 관련 세법 개정 불필요 입장 발표	76
10. 스페인	77
가. 자동차산업 기술혁신 관련 조세혜택 확대	77
나.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78

CONTENTS

다. 디지털서비스세 및 금융거래세법 의회 승인	79
11. 아일랜드	81
가. 인지세 회피 규정 관련 지침 발행	81
나. 코로나19 극복 지원 관련 법안 초안 발표	83
다. 2021년도 예산안 발표	84
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자 관련 과세안 확정	88
12. 영국	88
가.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율 일시적 인하	88
나. 2020 「Finance Act」 제정	90
다. 시설퇴소아동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의 소득세 면제 도입	92
라. 영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해외 제품의 VAT 정책 개정	93
마. 플라스틱포장세 도입	94
바. 혼성불일치 제도 수정안 초안 발표	94
13. 오스트리아	96
가. 강제적 보고규정 관련 실행지침 초안 발간	96
나. 코로나19 관련 추가 조세정책 승인	97
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초안 의회 제출	98
14. 이탈리아	99
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령 개정	99
나.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승인	100
다.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발표	101
15. 포르투갈	103
가. 부가가치세 신속시정조치 도입	103
나. 2021년 예산 법안 초안 의회 제출	104
16. 프랑스	106
가. 2020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 발표	106
나.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법인세 등 분할납부 허용	107
다.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 발표	108

목 차

라.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109
마. 디지털서비스세 징수 예정 발표	111
바. 2021년도 사회재정법안 발표	112
17. 핀란드	113
가.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마스크 비용 소득공제 허용	113
나.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114
다. R&D 세액공제 및 자산 즉시상각 한도 증액 법안 의회 제출	115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17

1. 중국	117
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 법인 및 개인소득세 특례규정 발표	117
나.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감면	118
다. 2021년도 세법규정 개정안 발표	119
2. 홍콩	120
가. 로열티 소득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한 해석서 개정	120
3. 인도	121
가. 알기 쉬운 과세 플랫폼 도입	121
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발표	123
4. 인도네시아	124
가. 해외 디지털거래에 대한 VAT 과세규정 발표	124
나.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결	125
다. 연구개발(R&D) 관련 추가 세제혜택 지침 발표	126
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세제혜택 발표	128
마.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추가 세법 개정안 발표	129
5. 싱가포르	131
가. 코로나19 관련 지급금에 관한 세무처리규정 발표	131
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발표	132

다. 중소기업의 세금신고 절차 디지털화 지원 133

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종 세법 개정안 발표 134

마. 코로나19 대응 법인세 신고 간소화 발표 135

6. 호주 137

가. MEC 기업 집단의 양도소득세 회피 관련 주의 발표 137

나. 다국적기업 무이자 금전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138

다. 2020/21년도 예산안 발표 138

7. 뉴질랜드 140

가.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140

나. 최고소득세율 개정안 국회 의결 141

IV

국제기구 / 144

1. OECD 144

가. 디지털세 논의 Pillar 1, 2 Blueprint 공개 144

나. BEPS Action 14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 발표 146

다. 암호화폐 조세정책 보고서 발표 147

2. EU 148

가. Tax Package 발표 148

나. 조세회피방지지침 이행 관련 보고서 발표 149

다. VAT GAP 조사 보고서 발표 151

라. DAC7 관련 합의 도출 및 DAC8 작업 착수 152

표 목 차

제1부

국경탄소조정을 포함한 탄소세 논의와 동향

〈표 III-1〉 OECD 주요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 변화(1970~2019)	19
〈표 IV-1〉 탄소세 도입 국가의 운영 현황	22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표 II-1〉 노르웨이 2021년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61
〈표 II-2〉 스페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79
〈표 II-3〉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 확장표	89
〈표 II-4〉 연간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101
〈표 II-5〉 핀란드 2021년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114
〈표 III-1〉 호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139
〈표 III-2〉 이자비용공제규정 관련 도입 현황	150
〈표 III-3〉 CFC 규정 관련 도입 현황	150

그림목차

제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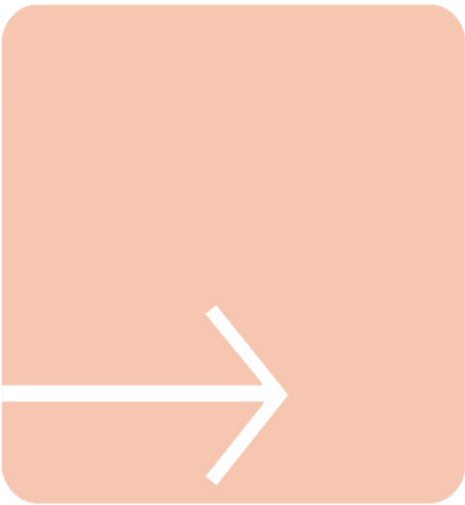
국경탄소조정을 포함한 탄소세 논의와 동향

[그림 II-1] OECD 국가 및 파트너 국가들의 석탄 및 천연가스 실효세율 가중평균	11
[그림 II-2] OECD 국가 및 파트너 국가의 탄소 실효세율 및 배출량	11
[그림 II-3] 과거 경제위기 이후 탄소배출량	15
[그림 III-1] OECD 가입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 순위(2019년 기준)	18
[그림 III-2] OECD 주요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 변화(1970~2019)	20



제1부

국경탄소조정을 포함한 탄소세 논의와 동향



I 탄소세 배경

1 국제적 환경 개선 노력

- ▣ 산업 활동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인류의 공통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세계 기구 및 각국은 각각의 능력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능한 협력 및 환경개선 관련 정책과 세제 도입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및 기타 환경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 탄소배출에 대한 논의는 1985년 오스트리아 필라흐회의(Villach Conference)에서 시작되었으며, 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세계 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은 1988년 공동으로 기후변화(Climate Change)¹⁾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설립함
 - ▶ 협의체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AR)는 기후 변화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당사국총회에서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됨²⁾

- ▣ 이후 UN은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를 개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발표함
 - ▶ 협약은 몬트리올의정서³⁾에서 범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간 협의체

1) 기후변화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 활동에 기인하여 지구 대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가변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로 정의함;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조 제2항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 1990년 제1차 평가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 1995년 제2차 평가보고서는 교토의정서에서 (3)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는 파리협정에서 채택됨

3) 온실가스의 생산과 소비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개선 노력의 시작점으로 1987년 몬트리올에서 채택됨. 이후의 환경협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환경협약의 선례가 되나, 채택 당시 세부적인 이행 및 규제내용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함

및 각국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른 것임

- ▣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을 막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됨⁴⁾
 -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⁵⁾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권고함
 - ▶ 협약은 형평성, 비용효율성, 기후변화의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원칙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정책 시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 협약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들에게만 적용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됨
 - 공통의무사항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 및 공개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국가통계와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함
 - 특정의무사항은 회원국의 분류(Annex I ⁶⁾, Annex II⁷⁾, Non-Annex I ⁸⁾)⁹⁾에 따라 다른 의무를 부여함
- ▣ 이후 협약의 Annex II에 해당되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필요함에 따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감축의무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포함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일본 교토에서 1997년 12월 11일 채택함¹⁰⁾

4)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ttps://unfccc.int/files/essential_background/background_publications_htmlpdf/application/pdf/conveng.pdf, 검색일자: 2021. 1. 21.

5) 상동, Article3(1), pp. 9~10.

6) Annex I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함. 해당 국가에는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Annex II 국가, 유럽 경제공동체(EEC)가 포함됨

7) Annex II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 하는 의무를 규정함. 해당 국가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포함됨

8) Non-Annex I에는 Annex I, II 외의 국가가 포함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함

9) UN Climate Change, “Type of Parties,” <https://unfccc.int/process/parties-non-party-stakeholders/parties-convention-and-observer-states>, 검색일자: 2021. 1. 21.

10) Kyoto Protocol - Html version, <https://unfccc.int/kyoto-protocol-html-version>, 검색일자: 2021. 1. 15.

- ▶ 교토의정서는 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권고만으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하였고,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필요함을 인지함에 따른 것임
- ▶ 각국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¹¹⁾과 흡수원¹²⁾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 및 제거량을 추산하기 위한 국가 제도를 권고함¹³⁾
 - 온실가스의 배출원에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이 포함됨¹⁴⁾
- ▶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해 온 선진국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함
 - 교토의정서의 Annex B¹⁵⁾에 해당하는 국가에 제1차 공약기간¹⁶⁾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보다 평균 5.2%가량 줄이는 감축목표치를 설정하고 각 국가별로 -8%에서 +10%까지의 의무감축률을 부여함¹⁷⁾
 - 이전의 유엔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II에 속한 국가들 중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해 온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의 Annex B에 다수 포함됨
- ▶ 또한 선진국들이 자국에 부여된 감축의무를 국내적인 수단으로만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¹⁸⁾,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¹⁹⁾ 등 의무이행에 유연성(Flexibility Mechanism)을 부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11) 배출원이란,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그 연무질 또는 전구물질을 방출하는 모든 과정 또는 활동을 말함

12) 흡수원이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 그 연무질 또는 전구물질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활동 또는 체계를 말함

13) Kyoto Protocol, Article 5.

14) Kyoto Protocol, Annex A, Greenhouse gases.

15) Annex B 해당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구주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 포함됨

16) Kyoto Protocol, Article 3에는 수량적 배출량 제한·감축 제1차 공약기간을 2008~2012년으로 설정함. 이후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을 2013~20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을 채택함

17) Kyoto Protocol, Article 3(1); (7)

18) 청정개발체제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19) 공동이행제도란, 선진국들 간에 탄소배출량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서 감축시킨 탄소배출량의 일부를 공동이행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emissions reduction units: ERU)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배출권거래제란, 탄소배출권²⁰⁾을 할당받은 국가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교토 의정서 이후 EU의 주도 아래 다국적 배출권 거래시장 및 거래소가 형성됨²¹⁾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의 한계점이 드러남

- ▶ 온실가스 배출량 1위였던 미국은 의무감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2001년에 교토의정서를 탈퇴함
- ▶ 또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2013~2020년인 제2차 공약기간 불참을 선언하면서 참여국 전체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게 됨
- ▶ 국제사회는 선진국의 불참, 감축목표·기간·방법, 개도국 재정지원 등의 문제로 한계점에 부딪혔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됨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2015년에 채택됨²²⁾

- ▶ 일부 국가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체제를 넘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²³⁾,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된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이고도 구속력 있는 체제가 마련됨
- 각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
-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²⁴⁾

20) 탄소배출권이란,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및 등가물 등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됨
 21)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전 세계에 10여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거래의 대부분은 유럽시장의 유럽기후거래소(European Climate Exchange: ECX)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2) The Paris Agreement, "What is Paris Agreement,"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 검색일자: 2021. 1. 15.
 23)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2017년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했지만,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함
 24) Paris Agreement, Article 2(1).

- ▶ 온실가스 단계별 감축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하여 5년마다 새로운 기후행동목표를 제출하는 데 합의함
 - 각국은 2020년 이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별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²⁵⁾을 5년 단위로 제출해야 함²⁶⁾
 - 감축목표의 경우 선진국들은 감축목표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한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목표 채택을 지향하도록 규정함²⁷⁾
- ▶ 각국의 감축목표 이행 및 촉진을 위해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실시함²⁸⁾
 - 이행점검은 각국이 공약한 탄소 배출량을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됨
- ▶ 파리협정은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거래시장 체제의 설립을 규정함²⁹⁾
 - 당사국들 간에 탄소 배출 감축 거래도 인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체제와 비시장적 접근방법의 두 가지 거래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장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 카토비체에서 2018년에 개최된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자원 제공 및 기술 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함

2

탄소세 도입논의

- ▣ 국제적 환경 개선노력에 더불어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거론되는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짐

25) UN Climate Chang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s),"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nationally-determined-contributions-ndcs/nationally-determined-contributions-ndcs>, 검색일자: 2021. 1. 21.

26) Paris Agreement, Article 4(9), 14(1).

27) Paris Agreement, Article 4(4~5).

28) Paris Agreement, Article 14(1).

29) Paris Agreement, Article 6(4).

- ▶ 탄소세(Carbon Tax)란,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함유한 제품이나 물질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목임³⁰⁾
 - 탄소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출량과 비례관계에 있는 탄소 함유량(Carbon Content)을 기준으로 과세함
- ▶ 탄소세의 주된 납세자는 탄소를 배출하거나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임
 - 탄소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생산 단위당 배출을 감소시키도록 권장할 수 있고, 저탄소 상품으로의 소비 성향의 변화를 조장할 수 있음
-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 규제수단, 부담금제도, 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 관련 정책 및 세제를 시행 중이나, 탄소세의 도입이 대두되고 있음
 - ▶ 직접적 규제수단과 부담금제도의 경우 교통 부문과 에너지 사용 등 특정 부문에만 집중 과세되고 있으며, 산업지원 또는 물가안정 등의 기능에만 치우치는 실정임
 - ▶ 배출권거래제는 적은 비용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거래참여자가 존재해야 함
 - ▶ 반면에 탄소세는 이러한 거래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음
 - ▶ 파리협정으로 모든 국가가 국제 환경 개선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각 국가는 탄소세의 도입으로 자발적인 기여가 필요함
- ▣ OECD는 탄소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수단(Market-Based Instruments)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³¹⁾
 - ▶ 도입초기에는 산업 부문이 탄소세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함
 - ▶ 탄소세는 에너지세와 과세대상이 비슷하므로,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연계하여 탄소세를 도입해야 함
 - ▶ 징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산·유통 단계에서 과세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30) Carbon Tax Center, "What's Carbon tax?," <https://www.carbontax.org/whats-a-carbon-tax/>, 검색일자: 2021. 1. 21.

31)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https://www.oecd.org/environment/indicators-modelling-outlooks/40200582.pdf>, 검색일자: 2021. 1. 21.; OECD, The OECD's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2011.

- ▶ 탄소세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조세저항의 극복이 중요하므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후 대내외 경제여건, 국가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해야 함
- ▣ 개별국가 차원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집약산업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³²⁾
 - ▶ 기업들은 탄소 관련 규제가 약한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대응을 함으로써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초래함
 - 탄소누출은 한 국가의 탄소배출 감소가 다른 국가의 탄소배출 증가로 상쇄되어 국제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됨
 - 또한 탄소배출 감축규제가 있는 국가의 기업은 감축규제가 없는 국가의 기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경쟁력이 저하됨
 - ▶ 탄소누출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탄소 국경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BCA)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 국가는 탄소세 도입 시 탄소국경조정을 함께 고려해야 됨

32) OECD, "Border Carbon Adju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A Literature Review,"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5k3xn25b386c-en.pdf?expires=1612419472&id=id&accname=guest&checksum=DB7276A376F43EEEA13E4991A5C88479>, 검색일자: 2021. 2. 4.

II 국제기구 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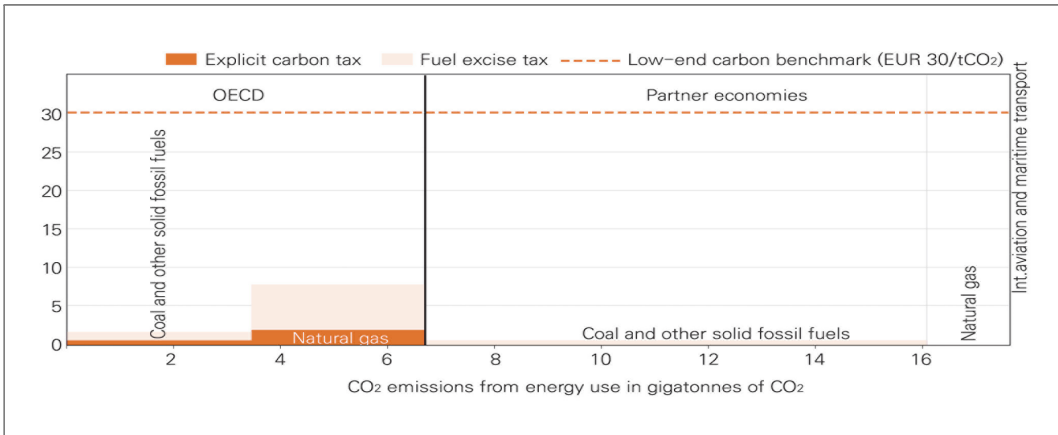
1 탄소배출 규제 관련 논의사항³³⁾

- ▼ 현행 탄소 가격 정책은 시민과 기업이 기후 비용을 고려할 만큼의 탄소 가격 신호를 전달하지 못함
 -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 이행에 필요한 탄소 가격 수준은 2020년까지 최소 40~80달러/tCO₂e, 2030년까지 50~100달러/tCO₂e 이상으로 추정됨³⁴⁾
 - ▶ 2019년 현재 전체 CO₂ 배출량의 85%는 비도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도로 부문의 탄소세 부과율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과된 탄소세의 97%는 탄소 배출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반영한 추정치인 CO₂ 1톤당 30유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만이 비도로 부문의 CO₂ 1톤당 30유로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 항공 및 해상 운송 산업은 전체 CO₂ 배출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산업의 탄소세 부과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국제 항공 및 해상 운송 분야의 실효세율은 0%임
 - ▶ 석탄 및 천연가스에 대한 탄소 가격 정책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그림 II-1]과 같이 탄소세율은 최저 기준인 CO₂ 1톤당 30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석탄의 탄소세율을 천연가스의 탄소세율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음

33) OECD(2019), "Taxing Energy Use 2019,"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axing-energy-use-2019_058ca239-en, 검색일자: 2021. 1. 13; OECD(2020), Tax Policy Reforms 2020: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ax-policy-reforms-2020_7af51916-en, 검색일자: 2021. 1. 13.

34) World Bank(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4ff9c5ce4b0a53decccfb4c/t/59b7f2409f8dce5316811916/1505227332748/CarbonPricing_FullReport.pdf, 검색일자: 2021. 1. 21.

[그림 II-1] OECD 국가 및 파트너 국가들의 석탄 및 천연가스 실효세율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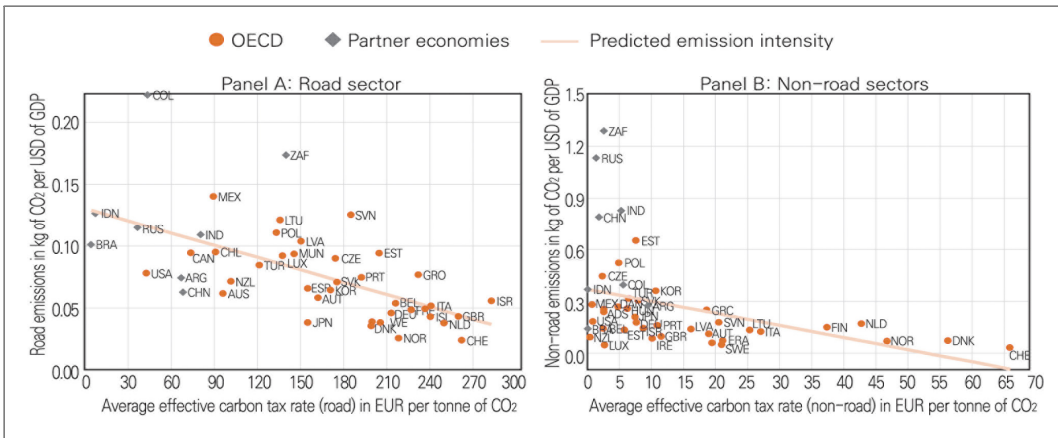


자료: OECD, "Taxing Energy Use 2019,"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axing-energy-use-2019_058ca239-en, 검색일자: 2021. 1. 13.

▣ OECD는 탄소세 설계 시 시민과 기업의 저탄소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탄소 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그림 II-2]는 더 높은 실효세율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일수록 도로 부문(Panel A), 비도로 부문(Panel B) 여부에 관계 없이 GDP 대비 탄소 집약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II-2] OECD 국가 및 파트너 국가의 탄소 실효세율 및 배출량



자료: OECD, "Taxing Energy Use 2019,"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axing-energy-use-2019_058ca239-en, 검색일자: 2021. 1. 13.

2 국경탄소조정 관련 논의사항³⁵⁾

- ▣ 탄소 배출량 감소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책임(CBDR-RC)”이라는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국가마다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이 상이한데, 이러한 비대칭적인 국가별 탄소배출 규제는 효과성과 공정성 문제를 야기함

 - ▶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비규제 지역의 해외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탄소 누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정책의 공정성 측면에서 규제 지역의 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s: BCA)은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 보조금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탄소 누출과 규제에 따른 국내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임

 - ▶ 아직 정책 구현 단계에 있으며, 최근 EU에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³⁶⁾
 -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에너지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등의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음

- ▣ 탄소국경조정은 ① 탄소 배출 범위, 제품 적용 범위 ② 지리적 범위 ③ 무역 적용 범위 ④ 내재 탄소 측정 ⑤ 수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크레딧 ⑥ 수익 사용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탄소 배출 범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범위 1: 산업 공정 및 기타 현장 활동에 의해 생성된 직접 배출
 - 범위 2: 외부에서 수입된 에너지와 관련된 간접 배출

35) OECD(2020), “Climate Policy Leadership in an Interconnected World: What Role for Border Carbon Adjustments?,” https://www.oecd-ilibrary.org/environment/climate-policy-leadership-in-an-interconnected-world_8008e7f4-en;jsessionid=HES743aIQQ6CqgRO9b5-9S0w.ip-10-240-5-5, 검색일자: 2021. 1. 13.

36) KOTRA, 「EU,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에 따르는 영향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4709>, 검색일자: 2021. 1. 21.

- 범위 3: 중간 제품, 시장으로의 제품 운송, 최종 사용, 제품 폐기와 관련된 배출을 포함한 제품의 수명주기에 포함되는 기타 모든 간접 배출
 - ▶ 제품 적용 범위는 높은 온실가스 집약도와 높은 무역노출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함
 - ▶ 지리적 범위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거나 일부 국가에 대한 면제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국가별 면제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관료적 재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자격 조건을 정의해야 함
 - ▶ 무역 적용 범위는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수입에만 적용할 것인지, 수입과 수출 모두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함
 - ▶ 내재 탄소 측정은 다음의 방법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제품 기반 접근법: 각 수입 제품에 포함된 실제 탄소 배출량을 추정함
 - 섹터 기반 접근법: 섹터 특성에 따라 탄소 집약도에 대한 기본 값을 할당함
 - ▶ 국내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탄소 가격 책정을 바탕으로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음
 - ▶ 탄소국경조정 체제하에서 얻은 수익을 국내에서 사용할지 또는 해외로 이전할지를 결정함
- ▣ 탄소국경조정의 도입 효과를 사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BCA의 도입은 탄소 누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³⁷⁾
- ▶ 특히, BCA 설계 시 배출-집약형, 수출-집중형(Energy-intensive, Trade-exposed, EITE) 부문을 모두 커버하는 경우, 수출에 대한 리베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재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경우 탄소 누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사전에 WTO 규범 간의 호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도 설계 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기존 정책이 함께 수반되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함
- ▣ 현재 탄소국경조정 제도는 EU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2021년 제

37) Branger, F. and P. Quirion(2014), "Climate policy and the 'carbon haven' effect,"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Vol. 5/1, pp. 53-71, <http://dx.doi.org/10.1002/wcc.245>, 검색일자: 2021. 1. 22.; Böhringer, C., E. Balistreri and T. Rutherford(2012), "The role of border carbon adjustment in unilateral climate policy: Overview of an Energy Modeling Forum study(EMF 29)," Energy Economics, Vol. 34, pp. S97-S110, <http://dx.doi.org/10.1016/j.eneco.2012.10.003>, 검색일자: 2021. 1. 22.

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³⁸⁾

- ▶ 공식 명칭은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하 CBAM)으로,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유럽 그린딜 전략 중 하나로 제안하였으며, 2020년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로드맵 수립 후, 2020년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개 협의를 통하여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완료함
- ▶ 설문 응답자들은 탄소 누출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있으나, 기존의 EU 배출권 거래 제도(ETS)나 탄소 누출 제한 규정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음
-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CBAM이 탄소 누출 문제를 완화하며, EU 내 저탄소 기술 및 제품 및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CBAM 설계 방식은 누출 위험이 높은 부문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또는 제품 소비 시 부가세 형식의 과세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응답함
- ▶ 제품 적용 범위는 제품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가치사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응답함
- ▶ CBAM을 적용해야 하는 상위 5개 부문은 전력, 시멘트 제조, 철강, 화학, 원유 부문임
- ▶ 탄소 함량 계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수입품에 대한 탄소 함량 계산 방식이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CBAM 자체 검증 허용은 부적합할 것으로 응답함

3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 관련 논의사항³⁹⁾

-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봉쇄 조치 및 경제 활동의 둔화로 운송 및 산업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일시적인 배출량 감소효과가 기후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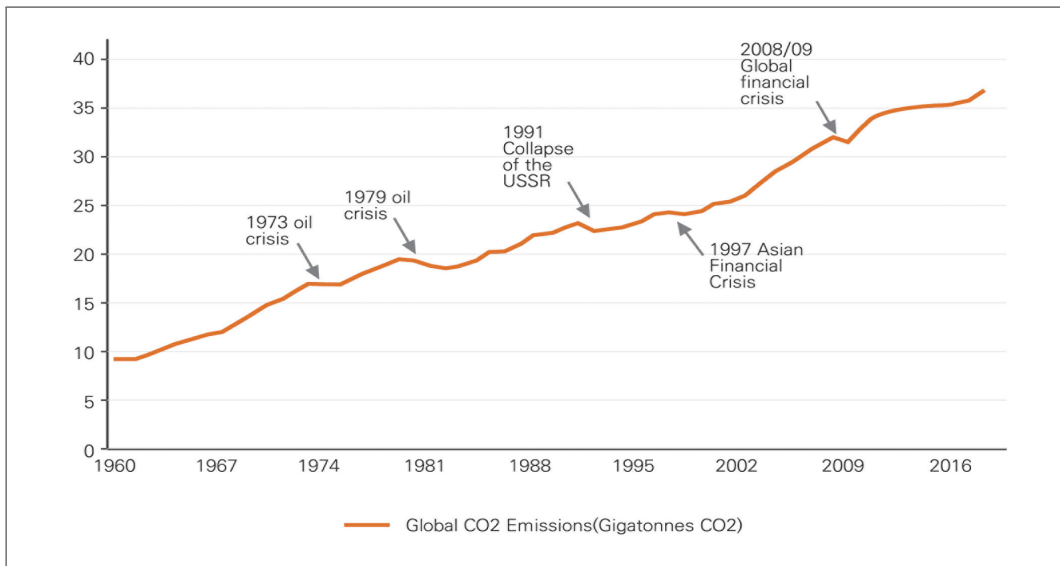
38) European Commission, "EU Green Deal - Revision of the Energy Taxation Directive,"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227-Revision-of-the-Energy-Tax-Directive>, 검색일자: 2021. 1. 25.; European Commission, Summary Report - Public consult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228-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public-consultation>, 검색일자: 2021. 1. 25.

39) OECD(2020), "COVID-19 and the low-carbon transition: Impacts and possible policy responses,"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covid-19-and-the-low-carbon-transition-impacts-and-possible-policy-responses-749738fc/>, 검색일자: 2021. 1. 13.

완화시킬 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기후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축적과 구성으로, 일시적인 배출량 감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음
- ▶ 글로벌 금융 위기를 포함한 과거 위기를 살펴보면 위기 기간에는 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위기 이후 탄소 배출량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3] 과거 경제위기 이후 탄소배출량



자료: OECD(2020), "COVID-19 and the low-carbon transition: Impacts and possible policy responses,"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covid-19-and-the-low-carbon-transition-impacts-and-possible-policy-responses-749738fc/>, 검색일자: 2021. 1. 13.

☐ 코로나19 위기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둔화시킬 수 있음⁴⁰⁾

-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하여 기업은 투자 및 혁신 활동을 감소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할 수 있음

40) Baker, S. et al.(2020), "COVID-induced economic uncertainty and its consequences," VOX CEPR Policy Portal, <https://voxeu.org/article/covid-induced-economic-uncertainty-and-its-consequences>, 검색일자: 2021. 1. 22.; IEA(2020), "Oil Market Report-April 2020-Analysis-IEA," <https://www.iea.org/reports/oil-market-report-april-2020>, 검색일자: 2021. 1. 22.; PV Magazine, "BNEF lowers 2020 global PV outlook due to coronavirus concerns," 2020, <https://pv-magazine-usa.com/2020/03/16/bnef-lowers-2020-global-pv-outlook-due-to-coronavirus-concerns/>, 검색일자: 2021. 1. 22.; IEA, "The Covid-19 crisis is hurting but not halting global growth in renewable power capacity," May 20, 2020, <https://www.iea.org/news/the-covid-19-crisis-is-hurting-but-not-halting-global-growth-in-renewable-power-capacity>, 검색일자: 2021. 1. 22.

- ▶ 석유 수요의 급감에 따른 유가 하락은 저탄소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음
- ▶ 글로벌 공급망 중단으로 인하여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음
- ▣ 이에 OECD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택된 녹색 회복 패키지(Green Recovery Packages)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 녹색 회복 패키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급 관세 및 생산 세액 공제를 통하여 재생 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녹색 정책으로, 이에 대한 OECD의 주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적인 탄소 가격 신호가 없는 투자 지원은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공급 관세 및 생산 세액 공제는 재생 에너지의 개발, 보급 및 채택을 지원하여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에 기여함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및 개조에 대한 투자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정책 설계 시 개발 및 기술 수준, 인프라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녹색 부양 정책의 분배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해당 프로그램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전 및 사후 평가를 녹색 부양 패키지에 포함해야 함
 - ▶ 앞의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OECD는 저탄소 인프라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탄소 가격을 높여 저탄소 전환에 대한 민간 부문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것을 제안함
 - ▶ 결과적으로 녹색 회복 패키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장기 경기 회복의 핵심 부분일 것으로 예상됨⁴¹⁾

41) Birol, F., "How to make the economic recovery from coronaviru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one," IEA, Mar 31, 2020, <https://www.iea.org/commentaries/how-to-make-the-economic-recovery-from-coronavirus-an-environmentally-sustainable-one>, 검색일자: 2021. 1. 22.

III

OECD 국가의 탄소 배출 현황

- ▣ OECD 국가의 연간 탄소 배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 탄소 배출량 DB인 EDGAR(Emission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e Research)에서 발간하는 ‘Fossil CO₂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0년 보고서의 값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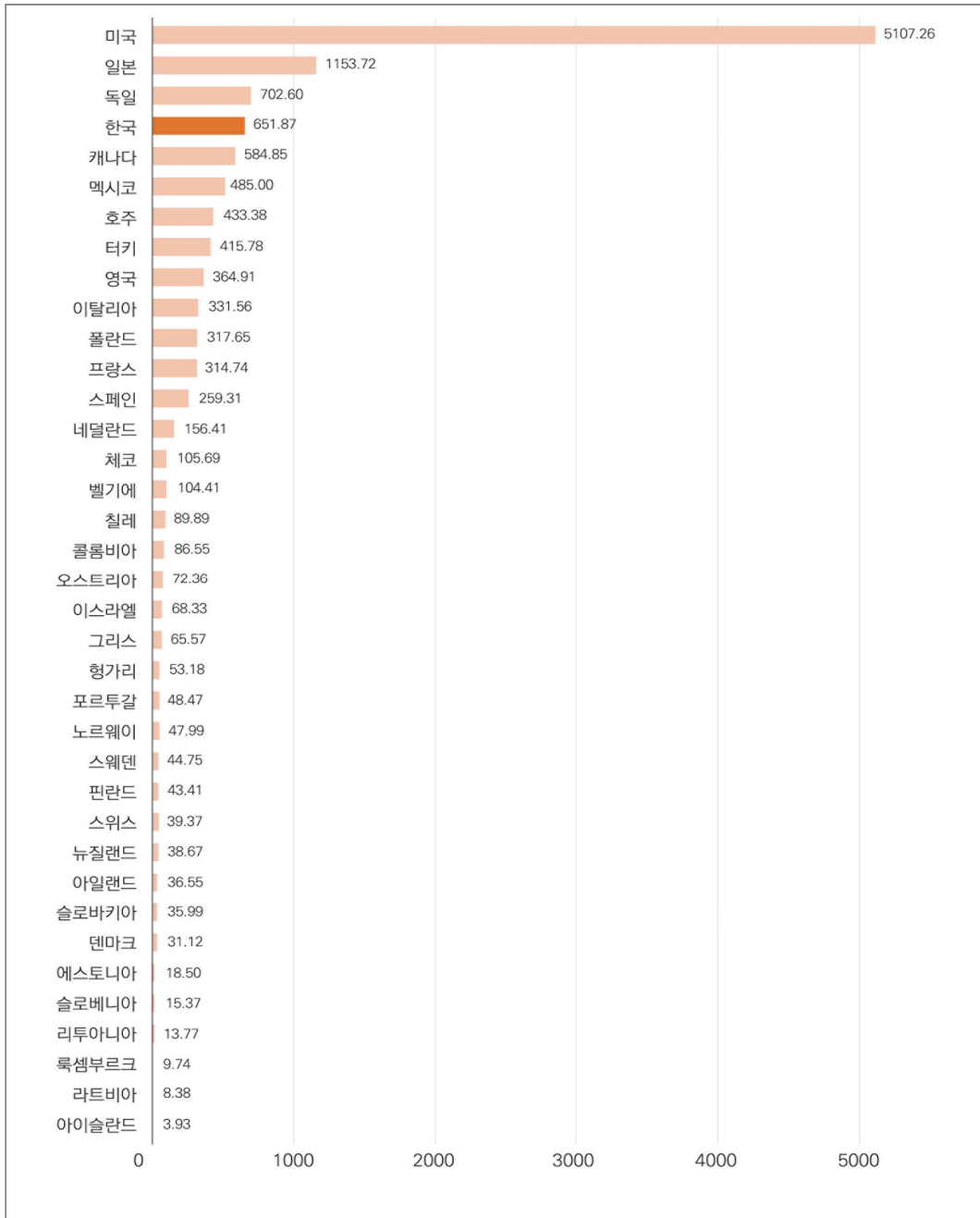
 - ▶ 해당 보고서에서 국가별 화석연료의 총 탄소 배출량 값을 사용하였으며, 본 지표는 화석연료의 연소 및 플레어링, 시멘트, 강철 및 화학 화합물 제조 등 산업 공정과 제품 사용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포함하고 있음
- ▣ [그림 III-1]을 통해 OECD 가입국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였을 때, 상위 배출 5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로 나타남

 - ▶ 최다 배출국인 미국은 51억 726만tCO₂e로, 두 번째로 높은 배출수준을 보인 일본 배출량의 4.4배에 달하는 압도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음
- ▣ OECD 가입국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을 경우, 2019년 기준 최다 탄소 배출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남

 - ▶ 중국(115억 3,520만tCO₂e), 미국(51억 726만tCO₂e), 인도(25억 9,736만tCO₂e), 러시아(17억 9,202만tCO₂e), 일본(11억 5,372만tCO₂e) 순이며, 해당 상위 5개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8%를 차지함

[그림 III-1] OECD 가입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 순위(2019년 기준)

(단위: 백만CO₂)



주: 이탈리아는 바티칸시국과 산마리노 공화국, 프랑스는 모나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스위스는 리히텐 슈타인의 값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EDGAR, *Fossil CO₂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0 report*, <https://edgar.jrc.ec.europa.eu/overview.php?v=booklet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21. 1. 21.)

- ▾ 2019년 기준 전 세계 국가별 전체 탄소 배출량 평균은 약 1억 7,625만tCO₂e로, 1970년 대비 약 140.6%, 2000년 대비 약 47.5% 증가함(〈표 III-1〉 참조)

 - ▶ OECD 평균은 2019년 기준 3억 3,408만tCO₂e로, 전 세계 평균 대비 약 1.9배 수준임
 - 200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7년 이후 그 값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그림 III-2 참조)
 - 1970년에서 200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평균이 약 28.6%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서 2019년까지는 약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OECD 주요국의 경우 캐나다, 호주, 한국이 연간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1970년 대비 331.2% 증가하였음

 - ▶ 미국과 일본은 200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2019년 기준으로 배출량 3위인 독일보다 각각 7.3배와 1.6배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 영국, 독일, 프랑스는 1970년대 후반 이후로는 꾸준히 연간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연간 탄소 배출량이 1970년 대비 46.7% 감소하였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약 35.1%와 약 32.6% 감소하였음

〈표 III-1〉 OECD 주요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 변화(197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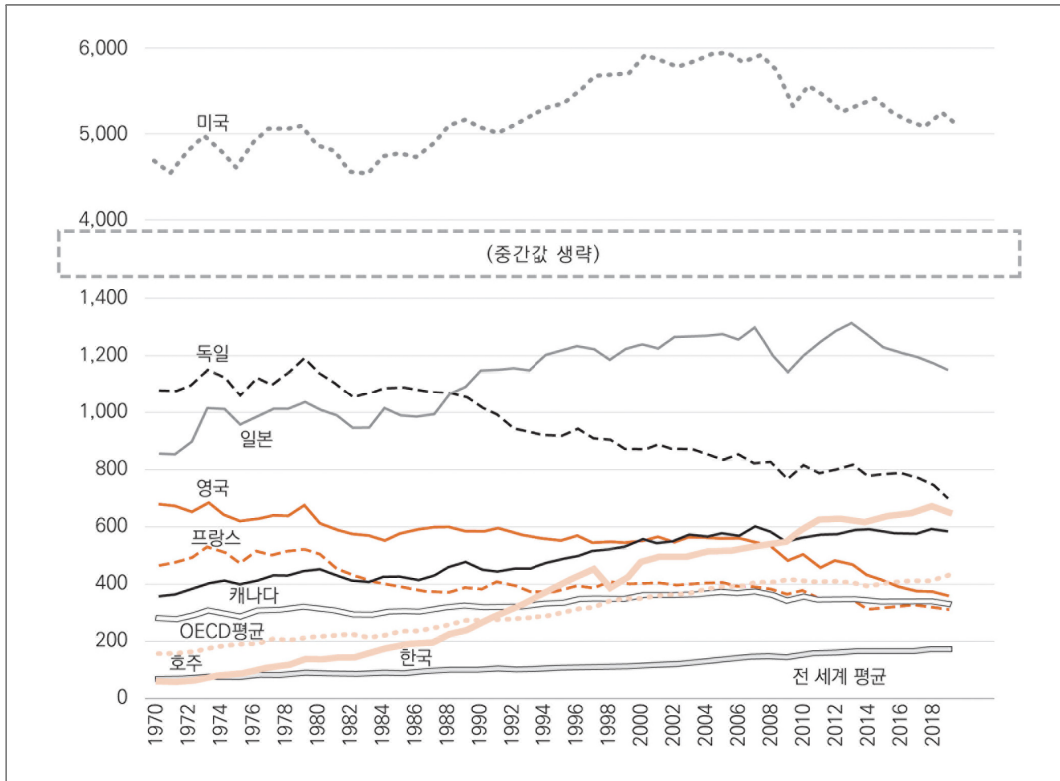
(단위: 백만CO₂e)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OECD 평균	전 세계 평균
1970	62.77	4,685.43	1,082.06	857.85	684.53	467.00	359.78	160.99	282.11	73.26
1975	91.70	4,608.95	1,062.51	958.20	623.36	476.70	403.53	193.92	290.29	80.95
1980	141.60	4,874.23	1,138.27	1,013.21	613.88	507.23	453.77	222.45	315.22	92.94
1985	189.63	4,775.40	1,090.35	991.66	581.21	394.32	429.51	238.28	307.10	94.95
1990	270.65	5,065.06	1,018.22	1,149.47	588.07	386.37	453.40	277.61	324.15	106.03
1995	404.64	5,358.97	918.87	1,221.11	554.13	381.84	488.46	302.71	337.41	110.72
2000	483.72	5,917.36	871.32	1,241.63	552.98	402.18	557.41	354.23	362.86	119.46
2005	516.42	5,948.47	837.54	1,276.93	561.56	408.43	580.23	392.06	372.44	139.71
2010	597.80	5,567.64	816.67	1,197.43	502.39	379.53	566.71	413.28	357.58	157.94
2015	639.01	5,248.96	786.83	1,227.95	415.63	322.52	587.57	404.02	342.12	168.54
2019	651.87	5,107.26	702.60	1,153.72	364.91	314.74	584.85	433.38	334.08	176.24

자료: EDGAR, *Fossil CO₂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0 report*, <https://edgar.jrc.ec.europa.eu/overview.php?v=booklet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21. 1. 21.)

[그림 III-2] OECD 주요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 변화(1970~2019)

(단위: 백만CO₂)



자료: EDGAR, *Fossil CO2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0 report*, <https://edgar.jrc.ec.europa.eu/overview.php?v=booklet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21. 1. 21.)

IV 국가별 탄소세 운영 현황

- ▾ 전 세계에서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곳은 1990년 핀란드로, 그 뒤를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폴란드가 1990년대 초에 탄소세를 도입함
 - ▶ 도입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2020년 현재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일본,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24개국이 탄소세를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OECD 탄소배출량 상위 5개국인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캐나다 중 현재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서만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음
 - ▶ 이 밖에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4개 국가가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음

- ▾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탄소세 부과를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면제 조항을 활용하고 있음
 - ▶ 전력 생산이나 기차·선박·항공 등 특정 부문 운송에 사용되는 연료, 수출 연료 등에 대한 면제가 주를 이루며,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제1차 산업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면제하기도 함
 - ▶ 다수의 국가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이하 ETS)를 함께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TS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에게는 탄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임
 - 그러나 핀란드는 예외적으로 EU ETS 적용 사업자에게도 탄소세를 부과함
 - ▶ 일부 국가에서는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시설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음
 - 우크라이나는 500tCO₂e 이하의 배출자에 대해 탄소세를 면제함
 - 또한 싱가포르는 25ktCO₂e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칠레는 25ktCO₂e의 온실가스 혹은 100톤 이상의 미립자 물질을 방출하는 시설을 탄소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 면제 조항 외에 별도의 오프셋 정책을 마련하여 탄소세 부담 완화를 꾀하는 국가들도 존재함
 - ▶ 슬로베니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ETS 적용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탄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 멕시코는 국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나 국제기구 인증을 받은 탄소배출권을 통한 감축량을 인정받아 탄소세를 상쇄시킬 수 있음
 -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국내 배출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세를 경감함
 - 앞서 언급한 슬로베니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역시 유사 조항을 추가적으로 두고 있음
 - ▶ 콜롬비아의 경우 탄소세 납부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허용함

- ▾ 많은 국가에서 탄소세 납부 의무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연료의 생산자 혹은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에 부여하고 있으나,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칠레, 싱가포르의 경우 해당 연료의 사용자에게 탄소세 납부 의무를 둠

- ▾ 국경탄소조정을 위한 탄소국경세는 현재 정책 구현 단계에 있어 아직 도입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표 IV-1〉 탄소세 도입 국가의 운영 현황

국가		내 용	
1	핀란드	시행연도	1990
		개요	- 1990년에 전 세계 최초로 탄소세(Hiilidioksidivero)를 도입한 국가로, 에너지세(energiaverotusta)의 일부를 구성함 - 2019년 1월 1일부터 난방용 연료 및 작업 장비용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변경함 · 연료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양뿐만 아니라 연료의 전체 존재 기간 중 배출량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탄소세 세율은 EUR62/tCO ₂ e (USD71/tCO ₂ e)에서 EUR53/tCO ₂ e(USD76/tCO ₂ e)로 인하함 - 반면 석탄 자원의 전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열 및 발전소에 대한 탄소세 일부 면제가 에너지세 일부 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석탄에 대한 세금 부담이 소폭 증가함

〈표 IV-1〉의 계속

국가		내 용	
1	핀란드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란드 탄소세는 주로 산업, 운송 및 건물 부문의 CO2 배출에 적용됨 - EU ETS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게도 탄소세를 부과함 - 전력 생산, 상업용 항공 및 요트 연료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음 - 특정 산업 및 연료 사용은 정유 공장 및 CHP의 연료 사용 또는 석탄 및 천연가스를 산업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탄소세가 일부 면제됨 - 토탄을 제외한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화석연료의 유통 및 수입업체에 탄소세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연료: EUR62/tCO₂e(USD68/tCO₂e) - 이외 화석연료: EUR53/tCO₂e(USD58/tCO₂e)
		목표 세율(가격)	- 확인 불가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¹⁾	- USD 14억 2,000만
2	폴란드	시행연도	1990
		개요	- 폴란드 탄소세는 CO2 배출, 먼지, 하수 및 폐기물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환경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보호법(Prawo ochrony środowiska)」에 근거하여 도입됨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됨 -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산출된 연간 세액이 800zloty 미만인 법인의 경우 면제됨 - EU ETS 적용 사업자는 탄소세가 면제됨 - 모든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 기타 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사용자에게 탄소세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PLZ0.3/tCO ₂ e(USD0.07/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 확인 불가
		납부 주기	- 매년
세수(2019)	- USD 100만		
3	노르웨이	시행연도	1991

〈표 IV-1〉 의 계속

	국가	내 용	
3	노르웨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웨이 탄소세(CO2 avgift)는 광물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대륙붕에서의 석유 활동에 대한 별도의 법률로 나누어짐 - 2019년 NOK508/tCO₂e에서 2020년 NOK544/tCO₂e로 탄소세 세율을 인상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면세 조항을 복구하거나 보상 조치 등을 마련함 · 특정 산업 공정에 적용되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세를 2020년 4월 1일부터 복구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면세액을 축소해 나갈 계획임 · 어선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면제도 폐지되었으나 임시 보상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보상 수단 또한 단계적 방식으로 감소할 예정임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됨 · 국제 항공 및 국제 운송, 연료 수출 및 광물유 내 바이오 연료에 대해 탄소세가 일부 감면됨 · 해양 석유 생산 활동을 제외하고, EU ETS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탄소세가 면제됨 - 액체 및 기체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생산자,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는 천연가스까지 과세함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upper): NOK545/tCO₂e(US\$53/tCO₂e) - 하위(lower): NOK31/tCO₂e(US\$3/tCO₂e)
		목표 세율(가격)	- 적용사항 없음
		납부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 매월 - 역외 석유: 매년
		세수(2019)	- USD 13억 7,400만
4	스웨덴	시행연도	1991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탄소세(Koldioxidskatt)는 에너지세(skatt pa energi)로, 탄소 집약적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스웨덴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배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2019년 8월 1일 탄소세에 대한 면세 조항을 제거하거나 축소함 · 광업에서 사용되는 디젤에 대한 부분 면제를 폐지함 · EU ETS제도가 적용되는 열병합발전설비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 탄소세의 89%가 면제되어 왔으나, 생성된 열이 산업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9%로 감소함

〈표 IV-1〉 의 계속

	국가	내 용	
4	스웨덴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및 배제되는 부문을 고려했을 때, 주로 건물 및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됨 - EU ETS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비(非)제조부문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제외하고는 탄소세가 면제됨 - 연료 수출, 특정 운송(기차, 선박, 항공), 전력 생산, 임업 및 농업의 경우 탄소세가 일부 면제됨 -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과세되며, 대상 화석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kr1190/tCO ₂ e(USD119/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세율을 매년 재산정함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 USD 23억 1,400만
5	덴마크	시행연도	1992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탄소세(CO₂-afgift)는 탄소 고배출 자원 소비 억제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 에너지세, 유황세, 녹색투자보조금 등이 포함된 환경세 패키지의 일부로 점진적으로 도입됨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및 배제되는 부문을 고려했을 때, 주로 건물 및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됨 - EU ETS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지역난방 및 폐기물 소각 공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면제 대상임 - 국제 항공 및 국제 운송, 연료 수출과 함께 특정 운송 수단(기차, 선박, 항공) 및 전력 및 열생산 산업의 경우 탄소세가 일부 면제됨 - 세금은 모든 화석연료를 다루며, 대상 화석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 DKR177/tCO₂e(USD26/tCO₂e) - 불화가스(F-가스): DKR150/tCO₂e(USD22/tCO₂e)
		목표 세율(가격)	-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세율 재산정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 USD 5억 2,000만		

〈표 IV-1〉의 계속

국가		내 용	
6	슬로베니아	시행연도	1996
		개요	- 슬로베니아 탄소세(Okoljska dajatev za onesnazevanje zraka zemisijo CO2 za zgorevanje goriva)는 환경 오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세의 일부로 도입됨
		적용 대상·연료	- 면제 및 배제되는 부문을 고려했을 때, 주로 건물 및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됨 · 연료의 수출, 항공 및 전력 생산 그리고 EU ETS 적용사업자는 탄소세 면제 대상임 - 천연가스와 모든 액체 및 고체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EU ETS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온실가스 배출자는 EU 배기 가스 배출 허용량을 준수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대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업을 통해 인정받는 온실가스 감축량(CERs)이나 다른 국가에 투자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량을 투자국의 실적으로 간주하는 ERUs 등을 통해 규정 준수 의무의 최대 11%를 상쇄시킬 수 있음
		세율(탄소 가격)	- 확인 불가
		목표 세율(가격)	- 적용사항 없음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 USD 8,100만
7	에스토니아	시행연도	2000
		개요	- 에스토니아 환경 오염 제한을 목표로 제정된 「환경요금법 (Keskkonnatasude seadus)」 내에 탄소세를 규정하고 있음
		적용 대상·연료	- 산업 및 전력 부문의 CO2 배출에 적용됨 · EU ETS 중복 적용 시 탄소세를 면제함 -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화석연료가 대상이 되며, 대상 화석연료의 사용자에게 탄소세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확인 불가
		목표 세율(가격)	- 적용사항 없음
		납부 주기	- 분기별
		세수(2019)	- USD 300만

〈표 IV-1〉 의 계속

국가		내 용	
8	라트비아	시행연도	2004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트비아 탄소세(Nodokli par ogleka dioksida)는 환경 오염의 제한을 목표로 하는 「천연자원세법(Dabas resursu nodokla likums)」의 일부로 도입됨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EU ETS 비적용 시설의 탄소 배출 억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 11월 14일 「천연자원세법」의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탄소세율이 인상되고 탄소세 수입의 지방 할당이 폐지됨 · 기존의 EUR4.5/tCO₂e(USD5달러/tCO₂)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EUR9/tCO₂e(USD10/tCO₂)로 인상됨 · 기존에는 탄소세 세수의 40%가 해당 수익이 창출된 지자체에 할당되었으나, 개혁 이후 전액 중앙 정부 예산으로 편입됨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ETS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산업 및 전력 부문의 CO₂ 배출에 적용됨 - 토탄을 제외한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EUR9/tCO ₂ e (USD10/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EUR12/tCO₂e(USD13/tCO₂e) - 2022년 EUR15/tCO₂e(USD17/tCO₂e)
		납부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배출자: 연별 - 대규모 배출자: 분기별
		세수(2019)	- USD 900만
		9	스위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탄소세(CO₂ levy)는 세계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O₂ 법」에 따른 스위스 기후 정책의 핵심 도구로, 스위스 배출권거래제(Swiss ETS)의 보완적 역할을 함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산업, 전력, 건물 및 운송 부문의 CO₂ 배출에 적용됨 · EU ETS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탄소세가 면제됨 · 경쟁력이 높은 분야이나 탄소세 부담이 큰 사업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특정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 탄소세를 면제함 · 대형 화석연료 발전소는 탄소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운송 연료의 수입업자는 부분적으로 면제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CO₂ 배출에 대해 보상의 의무가 있음 -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표 IV-1〉의 계속

	국가	내 용	
9	스위스	관련 중복 제도	- 스위스 ETS
		오프셋	-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혹은 그에 따른 보상을 약정한 기업은, 해당 의무 이행을 통해 탄소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음 - 탄소세를 전액 면제받는 화석연료 발전소는 절반 이상을 국내 배기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통해 CO2 배출량을 보상해야 하며, 나머지는 국제 배출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탄소세를 일부 면제받는 운송 연료의 수입업자는 국내 배기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에 기인하는 CO2 배출의 일부를 보상해야 함
		세율(탄소 가격)	- 확인 불가
		목표 세율(가격)	- 스위스 정부는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탄소세 세율 인상을 제안함 · 현행 CHF120/tCO ₂ e에서 연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 CHF210/tCO ₂ e까지 인상함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 USD 12억 3,500만
10	리히텐슈타인	시행연도	2008
		개요	- 리히텐슈타인 탄소세는 스위스 연방의 환경부담금 법안을 리히텐슈타인이 이행하도록 하는 양국 간 조약의 결과로 시행됨
		적용 대상·연료	- 주로 산업, 전력, 건물 및 운송 부문의 CO2 배출에 적용됨 · EU ETS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탄소세가 면제됨 · 경쟁력이 높은 분야이나 탄소세 부담이 큰 사업자는 202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특정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 탄소세를 면제함 · 운송 연료의 수입자는 일부 면제가 적용되나, 이에 상응하는 CO2 배출에 대해 보상 의무가 있음 -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혹은 그에 따른 보상을 약정한 기업은, 해당 의무 이행을 통해 탄소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음 - 탄소세를 일부 면제받는 운송 연료의 수입업자는 국내 배기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에 기인하는 CO2 배출의 일부를 보상해야 함
		세율(탄소 가격)	- 확인 불가
		목표 세율(가격)	- 적용사항 없음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 USD 400만		

〈표 IV-1〉 의 계속

국가		내 용	
11	아이슬란드	시행연도	2010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슬란드 탄소세(Kolefnisgjald a kolefni af jaroeftnauppruna)는 환경 및 자원세의 일부로, 정부의 차량 및 연료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EU ETS의 보완적 역할을 함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40년 탄소 중립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후행동계획 2018~2030'의 일환으로, 탄소세 세율을 2020년 1월 1일부터 10% 인상하고 탄소세 부과 대상에 불화가스(F-gas)를 추가함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문의 CO2 배출에 탄소세가 적용됨 · EU ETS가 적용되는 사업자와 항공 부문의 경우 탄소세가 면제됨 - 액체 및 기체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화가스(F-gas): ISK2500/tCO₂e(USD9/tCO₂e) - 기타연료: ISK4235/tCO₂e(USD30/tCO₂e)
		목표 세율(가격)	- 기후 변화 대처 및 파리협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금리를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함
		납부 주기	- 격월
		세수(2019)	- USD 4,100만
12	아일랜드	시행연도	2010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일랜드 탄소세(Natural Gas Carbon Tax, Mineral Oil Tax: Carbon Charge and Solid Fuel Carbon Tax)는 에너지 효율 증대와 연료 빈곤 상황 완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EU ETS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 조치의 역할을 함 - 세율은 초기 EUR9/tCO₂(USD7/tCO₂)에서 현재 EUR26/tCO₂(USD29/tCO₂)까지 증가하여, 차후 2030년에는 정부의 기후 행동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EUR80/tCO₂(USD87/tCO₂)까지 인상될 예정임 - 세수는 취약한 에너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투자를 위해 재분배됨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문의 CO2 배출에 탄소세가 부과됨 · EU ETS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및 운영자는 EU 에너지 과세 지침에서 허용하는 최소 수준까지 탄소세를 부분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음 · 특정 산업 공정, 연료 수출, 전력 생산, 운송 및 항공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음 -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표 IV-1〉 의 계속

	국가	내 용	
12	아일랜드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운송 연료: EUR26/tCO ₂ e(USD28/tCO ₂ e) - 기타 화석연료: EUR20/tCO ₂ e(USD22/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 2030년까지 EUR80/tCO ₂ (USD89/tCO ₂)
		납부 주기	- 격월
		세수(2019)	- USD 4억 8,100만
13	우크라이나	시행연도	2011
		개요	- 우크라이나 탄소세는 고정오염원의 대기 오염에 대한 환경세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세법에 도입됨
		적용 대상·연료	- 주로 산업, 전력 및 건물 부문의 CO ₂ 배출에 대해 적용됨 · 2019년부터 500tCO ₂ e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해서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음 -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사용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적용사항 없음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UAH 10/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 2023년 UAH 30/tCO ₂ e에 도달하기 위해 매년 UAH 5/tCO ₂ e의 세금을 인상할 예정임
		납부 주기	- 분기별
세수(2019)	- USD 4,800만		
14	일본	시행연도	2012
		개요	- 일본 탄소세(Tax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는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고 기후 변화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 전반에 공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적용 대상·연료	- 전 부문의 CO ₂ 배출에 탄소세가 적용됨 · 산업 활동, 전력, 운송,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화석연료의 특정 사용에 대해 탄소세가 면제됨 -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생산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도쿄 CaT, 사이타마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표 IV-1〉 의 계속

	국가	내 용	
14	일본	세율(탄소 가격)	- JPY289/tCO ₂ e (US\$3/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 적용사항 없음
		납부 주기	- 격월
		세수(2019)	- USD 24억 3,800만
15	프랑스	시행연도	2014
		개요	- 프랑스 탄소세는 에너지 제품 소비세(taxes interieures sur la consommation des produits energetiques)의 일부로 도입되었으며, EU ETS에 대한 보완정책 조치의 역할을 함 - 2022년 EUR86.2/tCO ₂ 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9년경 사회적 반발로 전국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되어, 2020년 현재 EUR50/tCO ₂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적용 대상·연료	- 주로 산업, 건물 및 운송 부문의 CO ₂ 배출에 대해 적용함 · EU ETS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됨 · 특정 산업 공정(연료 비연소 사용), 전력 생산, 운송, 항공, 대중교통 및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탄소세가 일부 면제됨 -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EUR45/tCO ₂ e (USD49/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 기존 안은 2022년 EUR86.2/tCO ₂ e까지 매년 10.4/tCO ₂ e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수정 이후 새로운 궤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납부 주기	- 분기별
		세수(2019)	- USD 89억 6,800만
16	멕시코	시행연도	2014
		개요	- 멕시코 탄소세는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 세금에 근거한 소비세(Ley del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on y servicios)로, 세금이 연료의 전체 탄소 함량에 대해서가 아닌 천연가스 대비 추가 CO ₂ 배출 함량에 대해 부과됨
		적용 대상·연료	- 전 부문의 CO ₂ 배출량에 적용됨 · 과세액은 연료 판매 가격의 3%로 제한됨 - 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생산자와 수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적용사항 없음
		오프셋	- 탄소세 납세 의무가 있는 기업은 멕시코에서 개발된 CDM 프로젝트나 EU ETS의 탄소배출권(CER)을 통해 탄소세 납부 당시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배출권으로 지불할 수 있음

〈표 IV-1〉 의 계속

	국가	내 용	
16	멕시코	세율(탄소 가격)	- 상위(upper): MXN59/tCO ₂ e (USD2/tCO ₂ e) - 하위(lower): MXN7/tCO ₂ e (USD0.3/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 적용사항 없음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 USD 2,100만
17	스페인	시행연도	2014
		개요	- 스페인 탄소세(Impuesto sobre los Gases Fluorados de Efecto Invernadero)는 불화가스(F-gas)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적용 대상·연료	- 전 부문의 불화가스 배출량(HFC, FFC 및 SF6)에 적용됨 · 불화가스의 수출, 화학 공정이나 새로운 장비 및 약물에의 사용, 지구온난화 가능성 150 미만의 F-가스의 경우 탄소세가 일부 면제됨 · 신규 장비나 설비에 충전되어 있는 불화가스의 경우 과세가 면제됨 · 법인은 폐기물 규제에 따라 불화가스를 회수할 때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스페인 시장에서 모든 불화가스의 첫 사용은 세무국에 신고가 필요함 · 과세는 기존 장비의 재충전 시에만 이루어짐
		관련 중복 제도	- 적용사항 없음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확인 불가
		목표 세율(가격)	- 확인 불가
		납부 주기	- 4개월마다
세수(2019)	- USD 1,200만		
18	포르투갈	시행연도	2015
		개요	- 포르투갈 탄소세는 녹색 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특별 소비세(Codigo dos Impostos Especiais de Consumo)로 도입되었으며, EU ETS의 보완적 역할을 함 - 탄소세를 포함한 에너지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 얻은 수입을 탈탄소화 및 기타 기후 행동 조치에 사용함 - 탄소세 세율을 전년도 평균 EU ETS 탄소 배출권 가격과 연계함
		적용 대상·연료	- 주로 산업, 건물 및 운송 부문의 CO ₂ 배출에 적용됨 · EU ETS 적용 사업자는 탄소세가 면제됨 · 특정 산업 공정(연료의 비연소 사용) 및 운송 수단, 취약 계층에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음 -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표 IV-1〉 의 계속

	국가	내 용	
18	포르투갈	관련 중복 제도	- EU ETS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EUR23.619/tCO ₂ e(USD26/tCO ₂ e) (2020년 기준)
		목표 세율(가격)	- 전년도의 평균 EU ETS 할당량을 기준으로 매년 세율이 변경됨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 USD 2,800만
19	칠레	시행연도	2017
		개요	- 칠레의 탄소세는 기존에는 50MW 이상의 열용량을 가진 설비에 부과하였음 - 2020년 2월 24일 대기업 과세 강화 및 개인 과세 완화를 위한 세제 개혁의 일부로 계획됨에 따라 현재 2만 5천tCO ₂ 이상을 방출하는 설비뿐만 아니라 매년 100톤 이상의 미립자 물질을 공중으로 방출하는 시설에 적용하는 안으로 개정됨
		적용 대상·연료	- 주로 전력 및 산업 부문의 CO ₂ 배출을 탄소세 납부 대상으로 하며, 2만 5천tCO ₂ 이상을 방출하는 설비뿐만 아니라 매년 100톤 이상의 미립자 물질을 공중으로 방출하는 시설에 적용됨 - 모든 화석연료가 과세 대상이며, 대상 화석연료의 사용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적용사항 없음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USD5/tCO ₂ e(과세액은 납부일의 환율에 따라 현지 통화로 지불함)
		목표 세율(가격)	- 적용사항 없음
		납부 주기	- 매년
세수(2019)	- USD 1억 6,600만		
20	콜롬비아	시행연도	2017
		개요	- 콜롬비아 탄소세(Impuesto nacional al carbono)는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적용 대상·연료	- 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됨 · 석유화학 및 정유 부문에 속하지 않는 천연가스 소비자 및 탄소 중립(carbon neutral) 인증을 받은 화석연료의 소비자는 면세 대상임 - 과세 대상은 연소되는 모든 액체 및 기체 화석연료이며, 대상 화석연료의 판매자 및 수입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음

〈표 IV-1〉의 계속

	국가	내 용	
20	콜롬비아	관련 중복 제도	- 적용사항 없음
		오프셋	- 온실가스 배출자는 탄소세 납부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콜롬비아의 국가 인가 기관이나 국제인정기구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의 회원 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인가한 감사관에 의해 인증된 납부액이어야 함
		세율(탄소 가격)	- 확인 불가
		목표 세율(가격)	-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세율을 재산정함
		납부 주기	- 격월
		세수(2019)	- USD 1억 1,100만
		21	아르헨티나
개요	- 2018년 1월 1일 기존의 연료세를 대체하여 대부분의 액체 연료에 대해 탄소세(Impuesto al dióxido de carbono)를 시행함 - 세수는 국민주택기금, 운송기반시설신탁, 사회보장제도 등의 운영에 사용됨		
적용 대상·연료	- 산업 전 부문의 CO2 배출과 거의 대부분의 액체 연료 및 석탄에 탄소세가 적용됨 · 국제 항공 및 운송, 연료 수출, 바이오 연료에 활용되는 액체 연료나 및 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경우 탄소세가 일부 면제됨 - 대상 화석연료의 생산자,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탄소세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적용사항 없음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확인 불가		
목표 세율(가격)	- 액체 연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재산정함 - 석탄, 석유 코크스, 중유: 2019년에 목표 세율의 10%로 시작하여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 USD 1억7,900만		
22	캐나다 ²⁾	시행연도	- 2018
		개요	- 2016년 10월 캐나다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탄소세 관련 범캐나다 접근 방식(Pan-Canadian Approach to Pricing Carbon Pollution)을 발표하여, 주 및 준주에 자체 탄소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함

〈표 IV-1〉 의 계속

국가		내 용	
22	캐나다 ²⁾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에는 주 자체 시스템이 적용됨 · 자체 시스템이 부재한 온타리오,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및 서스캐처원의 경우 연방 탄소세 시스템을 적용하고, 관련 세수를 인센티브로 해당 주에 환급함 - 2018년 6월 21일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도입과 함께 탄소세가 시행됨 · 2022년까지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경로를 확정할 예정임
		적용 대상·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별로 면제 사항에 차이가 존재하나 대체로 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음 · 뉴브런즈윅은 2020년 말까지 전력 발전에는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경유와 프로판의 국내 난방 시에도 탄소세를 면제함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농업, 수산업, 국제 항공 및 운송, 연방 OBPS 산하 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 등에 탄소세를 면제함 · 북극 지역(유콘, 누나부트)의 경우 항공편의 연료와 디젤 및 천연가스, 어선이나 낚시 활동에 사용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탄소세를 면제함 - 모든 화석연료의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납세 의무가 있음 · 브리티시컬럼비아의 경우 과세 대상에 타이어까지 포함됨
		관련 중복 제도	- 적용사항 없음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2018년 최소 CAD10/tCO _{2e} 에서 시작하여 2022년에는 CAD50/tCO _{2e} 까지 연간 CAD10씩 인상해야 함
		목표 세율(가격)	- 2022년까지 CAD50/tCO _{2e}
		납부 주기	- 매월
		세수(2019)	- 확인 불가
23	싱가포르	시행연도	2019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시행하였으며, 초기 5년간의 세율을 SGD5/tCO_{2e}로 설정하고 2023년까지 변경 세율을 검토할 예정임 - 싱가포르에서 출범한 AirCarbon Exchange는 운송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배출권인 EEUS를 제공할 예정임 - 현재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 배출권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도입에 긍정적임

〈표 IV-1〉의 계속

	국가	내 용	
23	싱가포르	적용 대상·연료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ktCO ₂ e 이상인 산업 및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됨 · 바이오매스의 연소와 냉장 및 에어컨 장비의 비제조업 사용과 같은 경우 탄소세가 면제됨 - 모든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는 기타 연료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설비의 운영자에게 시설 수준에서 탄소세와 관련한 배출량을 보고할 책임이 있고 해당 기관에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적용사항 없음
		오프셋	- 적용사항 없음
		세율(탄소 가격)	- SGD5/tCO ₂ e (USD4/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 정부는 2030년까지 세율을 SGD10~15/tCO ₂ e로 인상할 계획임
		납부 주기	- 매년
		세수(2019)	- 확인 불가
24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행연도	2019
		개요	-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소세는 2019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탄소 배출로 발생하는 외부 비용을 그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내포하도록 탄소 가격을 책정하고, 이러한 오염으로 인한 피해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적용 대상·연료	- 산업, 전력, 건물 및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적용됨 · 60%의 기본 면제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오프셋(5~10%), 무역 여부(10%), 온실가스 감축 달성 여부(10%), 환경부 탄소 예산 정보 요구사항 준수(5%) 등에 따른 추가 면세율 적용으로 최고 95%의 면제가 가능함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연료의 사용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음
		관련 중복 제도	- 적용사항 없음
		오프셋	- 청정개발체제(CDM) 등 현행 국제 표준을 참고하여 계획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내 배출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기업은 탄소세 부담을 5~10% 줄일 수 있음
		세율(탄소 가격)	- R120/tCO ₂ e(USD7/tCO ₂ e)
		목표 세율(가격)	- 2022년까지는 인플레이션 반영과 연간 2%의 추가 인상이 이루어지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변동만 이루어짐
		납부 주기	- 매년
세수(2019)	- 확인 불가		

주: 1) 정부 수입은 각종 ETS 경매수입 보고서와 2019년 혹은 가장 최근 연도의 각국의 예산 등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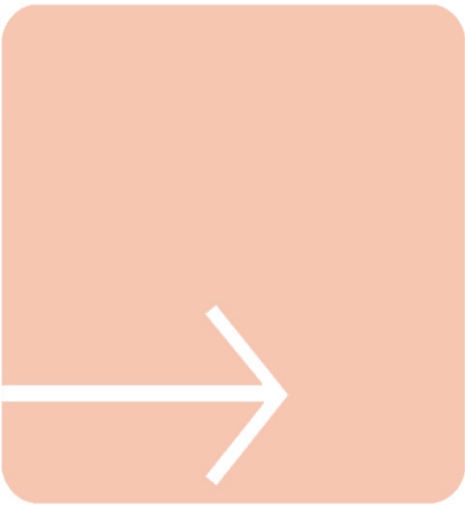
2) Government of Canada, "How we're putting a price on carbon pollution,"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pricing-pollution-how-it-will-work/putting-price-on-carbon-pollution.html>을 병행 참고함, 검색일자: 2021. 1. 19.

자료: The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map_data, 검색일자: 2021. 1. 14. 국가별 내용 발췌 및 정리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1 미국

가. FDI 및 GILTI 관련 최종 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7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7월 6일 법인의 국외 발생 무형자산 소득(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이하 FDII) 및 국외 관계사의 무형자산 발생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 Income, 이하 GILTI)의 공제와 관련한 최종 규정 TD9901을 발표함⁴²⁾

 - ▶ 본 규정은 FDII 혹은 GILTI가 발생하는 국내 법인이나, FDII 및 GILTI를 인정하거나 법인 소득세율 적용을 선택한 개인에게도 적용됨
 - ▶ 2019년 3월 6일 발표한 규정 REG-104464-18과 기본 접근방식 및 구조를 유지하나 일부 내용이 수정됨
- ▾ FDII와 GILTI의 소득 공제율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각각 21.875%와 37.5%로 축소됨

 - ▶ FDII 및 GILTI에 대한 소득 공제는 「Tax Cuts and Jobs Act」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 공제율은 각각 37.5%과 50%임⁴³⁾
- ▾ GILTI와 관련하여 CFC의 국내 주주에 대해 국외에서 미국 실효세율의 90%를 초과하는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졌을 경우, 국내 과세 시 관련 총소득액(gross tested-income)을

42) News IBFD, "United States - United States Issues Regulations on Deduction for FDII and GILTI," Jul 13,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13_us_1(accessed Jul 14, 2020)

43) Federal Register, "Deduction for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and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Jul 15, 202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7/15/2020-14649/deduction-for-foreign-derived-intangible-income-and-global-intangible-low-taxed-income>(accessed Jul 16, 2020)

제외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⁴⁴⁾

- ▶ GILTI의 과세 제외 자격은 적격 사업 단위별로 이루어지며, 한 번 선택하면 5년 유지되고 번복이 불가능함

나. 사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 최종 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8호]

- ▣ 미국 국세청은 2020년 7월 28일 「CARES법」에 의해 신규 도입된 사업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내국세법」 Section 163(j)의 변경사항에 관한 최종 규정 패키지를 발표함⁴⁵⁾

 - ▶ 본 조항은 2017년 12월 22일 「Tax Cuts and Jobs Act」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2020년 3월 27일 개정됨
- ▣ 본 최종 규정을 통해 이자 한도 구성 요소, 공제 한도 계산방법, 납세 대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사업 이자비용 공제는 일반적으로
 - ① 납세자의 사업이자 소득
 - ② 납세자의 조정 과세 소득(ATT)의 30%(일부의 경우 50%)
 - ③ 납세자의 물품구매 담보대출(floor plan finance) 이자비용의 합계로 제한됨
 - ▶ 2020년 과세연도 기준 총수익이 2,600만달러⁴⁶⁾ 이하인 특정 소규모 사업체,⁴⁷⁾ 부동산 거래 또는 사업체, 농업 사업체 및 특정 규제를 적용받는 공익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 패키지는 최종 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안 규정, 세수관리 절차 고시와 같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 ▶ 최종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기타 사업 이자비용 공제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 규정 REG-107911-18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함

44) *Tax Notes International*, "GILTI High-Tax Exclusion Regs Clear OIRA," Jul 13, 2020, pp. 278-279.

45) IRS News Release, "IRS issues final regulations and other guidance on business interest expense deduction limitation,"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final-regulations-and-other-guidance-on-business-interest-expense-deduction-limitation>(accessed Aug 20, 2020)

46)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7억 7,100만원임

47) 수익액 기준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됨

- 특정 제약에 대한 최종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본 제안 규정의 규칙을 따를 수 있음
- ▶ 「고시 Notice 2020-59」에서는 「내국세법」 Section 163(j)(7)(B)에 따라 적격 주거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거래 또는 사업에 대해 세이프하버 조항을 제공함

다. CFC 관련 특정 배당금 공제 제한 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8월 27일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공제와 관련하여 최종 규정인 T.D.9909를 발표함⁴⁸⁾
- ▣ 「내국세법」 Section 245A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온 특정 배당금의 공제를 제한함
 - ▶ 2017년 12월 「Tax Cuts and Jobs Act」 제정과 함께 「내국세법」에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100% 공제를 허용하는 지분소득 면제제도를 도입한다는 Section 245A 조항이 신설된 바 있음
 - ▶ 본 규정을 통해 배당금 중 특별처분액의 50%와 특별감자액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게 됨⁴⁹⁾
- ▣ CFC 계열사 간에 지급한 배당금을 외국 개인지주회사 소득(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이하 FPHCI)에서 제외한다는 「내국세법」 Section 954(c)(6) 조항을 폐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 「내국세법」 Section 954(c)(6)은, CFC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이자, 임대료 및 로열티는 FPHCI로 간주하지 않고, 수령한 CFC의 미국 내 사업 관련 소득이나 지급한 CFC의 subpart F 소득⁵⁰⁾과 관련되지 않은 소득으로 할당하는 것을 허용함

48) News IBFD, "United States-Final Regulations Issued on Participation Exemption for Dividends Received from Foreign Corporations and Look-Through Exception for FPHCI," August 2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8_us_1, 검색일자: 2020. 9. 14.

49) KPMG, "Temporary regulations under section 245A; denial of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for certain dividends from CFCs,"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06/tnf-temporary-regulations-section-245A-drd-cfc.html>, 검색일자: 2020. 9. 29.

50)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이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2년 「내국세법」에 규정하였으며,

- ▶ 해당 조항은 2019년 6월 발표한 임시 규정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 이후 회계연도 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만료됨⁵¹⁾
- ▣ 본 최종 규정은 과세연도가 2019년 6월 14일 이후 종료되는 건에 대해 적용되며, 임시 규정과 최종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최종 규정만 적용됨

라. BEAT 관련 최종 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0년 9월 1일 세원잠식 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이하 BEAT)를 보완하는 최종 규정 T.D.9910을 발표함⁵²⁾
 - ▶ BEAT는 국외로의 세원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으며, 미국에서 창출한 연 매출이 5억달러⁵³⁾를 초과하고 세원잠식률⁵⁴⁾이 3% 이상인 기업에 적용됨
 - 공제 처리된 국외 관계사 지급금액을 다시 합산한 조정과세소득에 최소 세율 10%⁵⁵⁾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며, 이 금액이 납세자의 정규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세액이 발생함⁵⁶⁾
 - ▶ 이때 BEAT는 이론적으로 세원 이전으로 발생하는 1달러의 소득세 혜택이 100만달러⁵⁷⁾의 BEAT 납세 의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절벽효과(cliff effect)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Subpart F 소득에는 ① 보험 소득(insurance income) ② 외국기지회사(foreign base company: FBC) 소득 ③ 국제적 보이콧(International boycott) 소득 ④ CFC를 대신하여 납부한 불법적 뇌물(bribes)과 사례금(kickbacks) 등 ⑤ 미국 「내국세법」 §901(j)가 외국세액공제를 부인하는 해당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다(최정희·양인준,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CFC) 세제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35집 제4호, 2019. 12., p. 71; p. 82).

51) KPMG, "Temporary regulations under section 245A; denial of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for certain dividends from CFCs,"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06/tnf-temporary-regulations-section-245-A-drd-cfc.html>, 검색일자: 2020. 9. 29.

52) *Tax Notes International*, "IRS Releases Final BEAT Waiver Regs," September 7, 2020, p. 1394

53)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23억 5천만원임

54) 해당 납세자가 소득세 산출 시 적용받은 총공제액 대비 국외 관계사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아 얻은 세금 혜택 금액

55) 2026년부터는 12.5%의 세율이 적용됨

56) Shearman&Sterling, "Final Beat Deduction Wavier Regulations Provide Some Relief," <https://www.shearman.com/perspectives/2020/09/final-beat-deduction-waiver-regulations-provide-some-relief>, 검색일자: 2020. 9. 22.

57)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6,550만원임

- ▾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BEAT의 절벽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외 관련사에 지급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공제를 전액 포기하거나 공제액을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이미 확정된 선택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 공제 여부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새롭게 선택할 수 있음

- ▾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본 최종 규정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음
 - ▶ 단, 적용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후의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전체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함

마. 바이든 정부 세제 개편 제안

[조세동향 20-11호]

- ▾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은 선거기간 중 다음과 같은 세제 관련 개편안을 제시함⁵⁸⁾

- ▾ 법인과 고소득 개인의 세금을 인상하고, 법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 ▶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회계상 이익이 1억달러⁵⁹⁾ 이상인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한세 기준을 적용함
 - ▶ 연간 소득 40만달러⁶⁰⁾ 이상인 개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
 -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12.4%의 노령, 생존자 및 장애 보험세(Old-ages,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를 신설하고, 2018년에 폐지된 고소득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 상한액을 부활시킴
 - 개인소득세 최고 소득 구간의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함
 - 연 소득이 100만달러⁶¹⁾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자본소득에 대해 기존의 20%에서 근로 소득과 동일한 39.6%의 세율을 적용함

58) Tax Foundation, Joe Biden-2020 Tax Plan, "Details and Analysis of President-elect Joe Biden's Tax Plan," October 22, 2020, <https://taxfoundation.org/joe-biden-tax-plan-2020>, 검색일자: 2020. 11. 23.

59)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7억원임

60)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4,280만원임

61)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700만원임

- ▶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모든 수입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해외 생산에 부과하던 세금의 2배 수준인 21%의 최저 세금을 부과함
- ▣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유의미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확대함
 - ▶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CDCTC)를 1인당 최대 3천달러⁶²⁾에서 8천달러⁶³⁾로 확대함
 -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일 경우 1만 6천달러⁶⁴⁾로 제한됨
 - ▶ 17세 이하 아동에게 적용되던 아동 세액공제 상한액을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아동에게는 6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함
 - 17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 코로나 경기부양특별법(HEROES Act)」에 제안된 내용임
 - 본 공제는 2021년 첫 적용 이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됨
 - ▶ 첫 주택 구입에 대해 최대 1만 5천달러의 소득공제를 제공함
 - ▶ 건강보험료 세금공제를 확대하여, 소득의 8.5% 이상을 건강보험에 지출하지 않도록 함⁶⁵⁾

바.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부담 완화 정책 발표

[조세동향 20-11호]

- ▣ 미국 국세청은 2020년 11월 2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납부 옵션을 변경 및 확장하는 구제안을 발표함⁶⁶⁾
- ▣ 일시적으로 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의 경우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추심 절차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음
 - ▶ 월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Form 433-A 또는 B를 작성하여 재정 상태에

62)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2만 1천원임

6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85만 6천원임

64)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71만 2천원임

65) Joe Biden for President: Official Campaign Website, "A Tale of Two Tax Policies: Trump Rewards Wealth, Biden Rewards Work," <https://joebiden.com/two-tax-policies>, 검색일자: 2020. 11. 16.

66) IRS, "IRS makes it easier to set up payment agreements; offers other relief to taxpayers struggling with tax debts"(November 2, 2020), <https://www.irs.gov/newsroom/irs-makes-it-easier-to-set-up-payment-agreements-offers-other-relief-to-taxpayers-struggling-with-tax-debts>, 검색일자: 2020. 11. 16.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세액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이자가 부과됨

- ▶ 납부가 지연되는 동안 신청자의 지불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함

▣ 특정 납세자는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을 제출하여 실제 세액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⁶⁷⁾

- ▶ IRS 웹사이트 내 Compromise Pre-Qualifier 페이지에 제시된 문항에 응답한 후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 ▶ 제안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해당 납세자에 대해 기존 분할납부를 포함한 모든 징수 활동이 중단됨
- ▶ IRS가 제안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제안이 자동으로 수락된 것으로 인정됨

▣ 구제책으로서 납세 지연에 의한 과태료 면제안을 정리함

- ▶ 기존 과태료 면제 기준에서 후순위에 있던 합리적 사유에 의한 납세 지연을 구제책으로 제시함
 - 자금 부족 자체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자금이 부족하게 된 사유는 합리적인 사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⁶⁸⁾
- ▶ 최초 과태료 감면 정책(First Time Penalty Abatement)과 같은 세금신고서 미제출 혹은 세금 미납에 따른 행정적 구제책을 안내함⁶⁹⁾
 -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거나 과태료가 징수된 과세연도 직전 3년간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으며, 현재 필요한 모든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함
 - 최초 과태료 면제 이후의 미납에 대한 과태료와 미납액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부과되는 이자는 면제되지 않음

67) IRS, "Offer in Compromise," <https://www.irs.gov/payments/offer-in-compromise>, 검색일자: 2020. 11. 23.

68) ① 화재, 사상,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장애의 발생 ② 기록의 부재 ③ 납세자 또는 납세자 직계 가족의 사망, 중병, 무능력 또는 불가피한 부재 ④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와 신중함을 기하였으나 이행이 곤란하였음을 입증하는 기타 이유(IRS, Penalty Relief Due to Reasonable Caus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enalty-relief-due-to-reasonable-cause>, 검색일자: 2020. 11. 23.)

69) IRS, "Penalty Relief Due to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or Other Administrative Waiver,"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enalty-relief-due-to-first-time-penalty-abatement-or-other-administrative-waiver>, 검색일자: 2020. 11. 23.

- ▣ 2019년 과세연도에 한하여 납부액이 25만달러⁷⁰⁾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재무제표 또는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연방예산 적자 감축을 위한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0-12호]

-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0년 12월 9일 미국 연방예산 적자 감축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함⁷¹⁾
 - ▶ 본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연방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과세 관련 방안을 모색함
- ▣ 의회예산국은 본 보고서에서 연방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 ▶ 5%의 연방 부가가치세를 도입함⁷²⁾
 - 현재 주별로 최종 판매시점에 부과하는 판매세(sales tax)만 존재함
 - ▶ 항목별 공제를 폐지함⁷³⁾
 - 현재 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고정된 금액의 표준공제나 주세 및 지방세·대출이자·기부금·일부 의료비 등을 구분하여 공제를 받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개인소득세 세율을 인상함⁷⁴⁾
 - 2026년부터 인상이 계획된 개인소득세 세율에 대해 기존 안을 변경하여 과세소득 단계 전 구간 혹은 일부 구간에 대해 1%p를 인상하는 안을 제안함

70)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675만원임

71) Congressional Budget Office,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1 to 2030," <https://www.cbo.gov/publication/56783>, 검색일자: 2020. 12. 17.

72)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mpose a 5 Percent Value-Added Tax," <https://www.cbo.gov/budget-options/56872>, 검색일자: 2020. 12. 23.

73)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liminate Itemized Deductions," <https://www.cbo.gov/budget-options/56849>, 검색일자: 2020. 12. 23.

74)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ncrease Individual Income Tax Rates," <https://www.cbo.gov/budget-options/56846>, 검색일자: 2020. 12. 23.

- ▶ 증권 구매 및 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함⁷⁵⁾
- ▶ 1년 이상 장기보유 자본 이득 및 적격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2%p 인상함⁷⁶⁾

2 캐나다

가. 공정 과세 관련 경제성명서 발표

[조세동향 20-12호]

- ▣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0년 11월 30일 디지털 경제 및 종업원 스톡옵션과 관련한 공정과세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성명서인 Fall Economic Statement 2020을 발표함⁷⁷⁾
- ▣ 2021년 7월 1일부터 캐나다 소비자에게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거주 업체 및 유통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간소화된 GST/HST 등록 및 송금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과세를 용이하게 함
 - ▶ 총 과세 공급액이 12개월 동안 3만캐나다달러⁷⁸⁾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등록 요건이 적용됨
 - ▶ 캐나다 거주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B2C 거래에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본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 물류전문업체(fulfilment warehouse)⁷⁹⁾를 통해 공급되는 재화나 플랫폼에 기반한 단기 숙박업소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제안함

7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Impose a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https://www.cbo.gov/budget-options/56876>, 검색일자: 2020. 12. 23.

76) Congressional Budget Office, "Raise the Tax Rates on Long-Term Capital Gains and Qualified Dividends by 2Percentage Points," <https://www.cbo.gov/budget-options/56847>, 검색일자: 2020. 12. 23.

77) News IBFD, "Canada - Canada Tackles Taxation of Digital Economy and Employee Stock Options in Fall Economic Statement," December 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2-02_ca_1, 검색일자: 2020. 12. 17.

78) 2020. 12.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3만 3천원임

79)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 선별, 포장, 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센터 혹은 물류 창고

- ▣ 중견기업에 고용된 고소득 개인의 스톡옵션에 대한 공제혜택을 연간 20만캐나다달러⁸⁰⁾로 제한함
 - ▶ 기존에는 근로자가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소득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무한 공제가 가능하였음
 -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스톡옵션 계약을 통해 개인소득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불균형적인 혜택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함⁸¹⁾
 - ▶ 2021년 6월 이후 근로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과 고용주에게 부여된 법인신탁 혹은 뮤추얼 펀드 신탁에 적용됨
 - ▶ 캐나다 통계 민간기업(CCPC)이나 연간 총수익이 5억캐나다달러⁸²⁾ 이하인 사업체는 적용 대상이 아님

80) 2020. 12.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089만원임

81) Government of Canada,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Supporting Canadians and Fighting COVID-19 - 4.8.2.1 Employee Stock Options," <https://www.budget.gc.ca/fes-eea/2020/report-rapport/chap4-en.html#48-A-Fair-Tax-System>, 검색일자: 2020. 12. 17.

82) 2020. 12.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72억 1,500만원임

II 유럽

1 그리스

가. 조세회피 방지 관련 법안 초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07호]

- ▶ 그리스 재무부는 2020년 7월 9일 EU 조세회피 방지 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이하 ATAD) 및 국가 간 의무보고 협정 등과 관련한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⁸³⁾
- ▶ 이 법안에 따라 ATAD 2016/1164 제5장 1절에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전출세(exit tax)를 납부해야 함⁸⁴⁾
 - ▶ 국외전출세가 부과될 자산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규칙을 제공하며, 시장가치의 상향을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음
 - ▶ ATAD 제5장 2절에 근거하여 납세자는 특정 상황하에서 5년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함
 - 분할납부 일정은 국외전출세 신고서 제출을 통해 확정되며, 이때 명백하고 실제적인 미납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리스 세무당국이 보증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유가증권의 자금 조달 목적 혹은 담보 설정 자산이거나 건전 자산 혹은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12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이 그리스로 복귀하는 경우 국외전출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이 경우 NIL 신고서⁸⁵⁾를 제출해야 하며, 그리스 세무당국이 보증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83) News IBFD, "Greece-Government Submits Transposition of EU Directives and Other Provisions to Parliament," Jul 2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20_gr_1(accessed Jul 22, 2020)

84) News IBFD, "Greece - Greece Submits the Transposition of ATAD's Exit Tax Rules for Public Consultation," Jul 1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14_gr_2(accessed Jul 16, 2020)

85) 특정 기간에 대해 신고할 EU 무역이 없는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 유형임(SAP Documentation, https://help.sap.com/doc/saphelp_sbo92/9.2/ko-KR/46/12e5efc0144f08e10000000a114a6b/frameset.htm, 검색일자: 2020. 7. 28.)

- ▶ 국외전출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2020년 1월 1일부터 법안 공포일까지 발생한 자산 또는 세금의 과세 목적상 거주지 및 활동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일 이후 세 번째 달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과태료 없이 이전 신고가 가능함

- ▣ 법안은 ATAD 2와 관련하여 혼성불일치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포함함⁸⁶⁾
 - ▶ 혼성불일치 결과로 이중 공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투자자의 수준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투자자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지급인 차원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당기에 발생한 이중 포함 소득이나 규정에 따라 후년에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본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 소득 불포함을 통해 공제가 발생할 경우 지급인의 소재지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나, 지급인의 소재지에서 공제를 허용한다면 불일치의 결과를 초래하는 지급액은 수취인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함
 - ▶ 혼성불일치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은행부문의 혼성 규제 자본에 대한 규칙이 적용됨
 - ▶ 본 법안은 역혼성 불일치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음

- ▣ DAC6(Directives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6)⁸⁷⁾ 내 과세정보 자동교환 의무 시행을 목표로 하는 규칙을 포함함⁸⁸⁾
 - ▶ 납세자가 국가 간 의무보고 협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 국가 간 의무보고 협정에 따라 납세자가 단식부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5천유로,

86) News IBFD, "Greece-Greece Submits the Transposition of ATAD's Anti-hybrid Rules for Public Consultation," Jul 1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14_gr_3(accessed Jul 16, 2020)

87) 회원국과 EU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간 조세 포탈 및 회피 방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가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고 내수 시장과 경쟁 원리가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침임("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DAC) Evaluation, Platform for good tax governance meeting," March 26, 2019,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presentation_dac_evaluation_v3.pdf, 검색일자: 2020. 7. 28.)

88) News IBFD, "Greece-Greece Submits the Transposition of DAC6's Reporting Obligations for Public Consultation," Jul 1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14_gr_4(accessed Jul 28, 2020)

복식부기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1만유로⁸⁹⁾의 과태료가 부과됨

- ▶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사항은 2021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이력은 2021년 2월 28일까지 보고해야 함

나.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세금 인센티브 확대 법안 제출

[조세동향 20-08호]

- ▣ 그리스 개발투자부는 2020년 7월 13일 R&D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와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⁹⁰⁾
- ▣ 2020년 9월 1일부터 과학 및 기술 연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의 감가상각을 포함하는 R&D 지출비용에 대해 연구 수행 시점의 사업 총수입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함⁹¹⁾
 - ▶ 위 비율에 따른 비용이 총수입액보다 클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이월함
 - ▶ 공인된 감사인(회계사 및 감사 법인 등)이 기업이 제출한 비용 및 금액의 실현 여부를 국제재무보고표준(IFRS) 및 세법에 따라 관련 감사를 수행함
- ▣ 특정 조건하에서 개인 엔젤투자자가 국가 스타트업 등록부에 등록된 자본 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⁹²⁾
 - ▶ 공제되는 투자액은 스타트업당 최대 10만유로⁹³⁾이며, 3개 스타트업의 투자액까지

89)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10만원임

90) News IBFD, "Greece-Increased Depreciation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Expenditure and Tax Incentives for Angel Investors Clarified," August 1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30_gr_2\(accessed Aug 20, 2020\)](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30_gr_2(accessed Aug 20, 2020))

91) 그리스 의회 홈페이지, 「개발투자부의 권한에 대한 법률」 초안(Σχέδιο Νόμου του Υπουργείου Ανάπτυξης και Επενδύσεων με τίτλο:) 제46조, <https://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c8827c35-4399-4fbb-8ea6-aebdc768f4f7/11326903.pdf>, 검색일자: 2020. 9. 1.

92) 그리스 의회 홈페이지, 「개발투자부의 권한에 대한 법률」 초안(Σχέδιο Νόμου του Υπουργείου Ανάπτυξης και Επενδύσεων με τίτλο:) 제49조, <https://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c8827c35-4399-4fbb-8ea6-aebdc768f4f7/11326903.pdf>, 검색일자: 2020. 9. 1.

93)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168만원임

적용되어 최대 30만유로⁹⁴⁾의 공제가 가능함

- ▶ 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이루어지며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적용됨

다. 코로나19 관련 추가 조치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 그리스 세무당국은 2020년 8월,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인하 및 증여세 감면 조치를 발표함
- ▶ 2020년 4월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인하 조치의 영향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⁹⁵⁾
 - ▶ 코로나19 조치로 인한 법률 4690/2020의 조항에 따라 임대료를 40% 감면하여 받은 개인 및 법인 임대인은, 할인한 임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세액공제 혜택은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특별연대기여금 ④ 특별소비세 ⑤ 부동산세 (ENFIA) ⑥ 부가가치세 ⑦ 「조세절차법」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태료의 순서로 적용됨⁹⁶⁾
 -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임대인은 혜택 적용을 위해 전자 임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국외에 거주하는 그리스 국민의 코로나19 관련 기부 및 부모의 자녀 거주지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규정하는 E.2133호 시행령을 발표함^{97), 98)}

94)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2,505만원임

95) News IBFD, "Greece-COVID-19 Pandemic: Greece Reduces the Tax Burden of Lessors that Receive Reduced Rents due to COVID-19 Measures," September 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07_gr_3, 검색일자: 2020. 9. 14.

96) 그리스 정부 관보 B3505/2020(Προβολή ΦΕΚ B 3505/2020), http://www.et.gr/ids-nph/search/pdfViewerForm.html?args=5C7QrtC22wHUdWr4xouZundtvSoClrL8kjrMFdNWp0kliYHTRwL0-OJInJ48_97uHrMts-zFzeyCiBSQOpYnTy36MacmUFCx2ppFvBej56Mmc8Qdb8ZfRjQZnsIAdk8Lv_e6czmhEembNmZCMxLmTRb4iMiKGONiOR0A4ORYEF1pNZUPiZH5TmwBLS8amsW, 검색일자: 2020. 9. 29.

97) Bloomberg Law: Tax, "Greece Tax Agency Issues Circular Clarifying Taxation of Donations Due to Coronavirus," August 17, 202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1B22FFG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search=BNA%25200000173ee37d977a9ffe7710500000#jcite, 검색일자: 2020. 9. 16.

98) News IBFD, "Greece-Tax Authorities Clarify Provisions Regarding Gift Taxes and Taxes on Monetary Donations,"

- ▶ 해외에 10년 연속 거주하는 그리스 국민이 적절한 동산 기부를 하고 지난 12년간 부동산 취득 이력이 없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됨
- ▶ 자녀의 첫 거주지 마련을 위한 부모의 금전적 지원액에 대해 과거 부과되던 부모혜택세(parental benefit tax)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며, 15만유로까지 공제됨

라. 2021년도 예산 초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10회]

- ▣ 그리스 정부는 2020년 10월 5일, 2021년도 예산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⁹⁹⁾
- ▣ 근로자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R&D,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함¹⁰⁰⁾
 - ▶ 민간부문의 근로자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을 39.7%에서 3%p 인하한 36.7%로 변경함
 - ▶ 근로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에게 부과하던 특별연대기여금 제도를 2021년부터 폐지함
 - ▶ 26개 섬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세금(ENFIA)을 면제함
 - ▶ 녹색 및 디지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금융상품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지출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0%의 비율로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함
 - ▶ 교통수단, 커피 및 무알코올 음료, 영화 관람료에 적용되었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 13%의 적용 기한을 2021년 4월까지 6개월 연장함
- ▣ 2020년에 입법화된 다음의 세금 조치들을 반영함¹⁰¹⁾

August 1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18_gr_2(accessed Sep 23, 2020)

99) News IBFD, "Greece-Government Proposes to Reduc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 Draft Budget for 2021," October 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07_gr_1(accessed Oct 28, 2020)

100) News IBFD, "Greece-Greece Announces Reductions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uper Depreciation for Green Projects and other Tax Cuts," September 1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16_gr_2(accessed Oct 28, 2020)

101) News IBFD, "Greece-Government Proposes to Reduc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 Draft Budget for 2021," October 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07_gr_1(accessed Oct 28, 2020)

- ▶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9%의 특별 세율을 도입함
- ▶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5%로 인하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중지함

다. 조세분쟁위원회 법원 외 조세분쟁 조정 기능 운영 결정

[조세동향 20-12호]

- ▣ 그리스 재무장관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조세분쟁위원회의 법원 외 세금 분쟁 조정 기능의 운영을 결정함¹⁰²⁾

 - ▶ 조세분쟁위원회는 Bill 4714/2020에 근거하여 2020년 8월 설치되었으나, 분쟁 해결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 재무장관의 결정이 필요하였음
- ▣ 이번 결정으로 납세자는 관세 분쟁을 제외한 세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 미해결 분쟁에 대해 조세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는 2020년 10월 30일까지 논의가 보류된 사안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웹사이트(www.eefdd.gr)를 통해 전자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납세자 및 법적 대리인의 이름, 세금 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및 정확한 주소를 명시하고, 변호사의 서명이 있어야 함
- ▣ 조세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납세 관련 분쟁사항은 다음과 같음

 - ▶ 과세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분쟁 중인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국가의 과세권이 만료된 경우
 - ▶ 부적격한 세금증명서의 수령으로 분쟁 중인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국가의 과세권이 만료된 경우
 - ▶ 명백하게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금 또는 벌금액의 수치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세금 청구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102) News IBFD, "Greece-Greece Gives Effect to the Out-of-Court Tax Dispute Regime as of November 2020," November 2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1-24_gr_2, 검색일자: 2020. 12. 17.

- ▶ 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리한 조세 제재를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 ▶ 가산세, 이자, 할증료 및 과태료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 조세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전자로 개최될 수 있으며, 결정은 다수결을 통해 이루어짐
- ▶ 납세자는 분쟁 조정을 위한 조세분쟁위원회의 제안 결정을 전달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여야 함

바. 과세 거주지 이전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도입

[조세동향 20-12호]

- ▣ 그리스 정부는 2020년 12월 4일 그리스로 과세 거주지를 이전하는 개인에 대하여 세금 감면정책을 도입함¹⁰³⁾
-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의 소득세 및 특별 연대 기여금에 대해 50%의 감면을 적용함¹⁰⁴⁾
 - ▶ 직전 8년 중 7년 간 그리스의 과세 대상 거주자인 자
 - ▶ EU/EEA 국가 또는 그리스와 행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자신의 과세 거주지를 이전한 자
 - ▶ 그리스 국내법인 혹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과 종속고용 관계를 맺거나, 그리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
 - ▶ 이후 최소 2년 이상 그리스에 거주할 것을 명시한 자
 - ▶ 그리스 내 임금 고용과 개인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한하며,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과세 거주지 이전 신청은 그리스에서 근무하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함

103) News IBFD, "Greece-Greece Adopts a Tax Break for Individuals Transferring their Tax Residence to Greece," December 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2-04_gr_1, 검색일자: 2020. 12. 15.

104) News IBFD, "Greece-Greece Proposes a Tax Break for Individuals Transferring their Tax Residency to Greece," November 2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1-24_gr_3, 검색일자: 2020. 12. 17.

2 네덜란드

가. 상호합의절차 관련 재무부령 개정

[조세동향 20-07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0년 6월 22일 상호합의절차 관련 개정 재무부령을 발표함¹⁰⁵⁾
 - ▶ 금번 개정은 네덜란드 「조세중재법(Tax Arbitration Act)」, 조세조약 및 EU 중재 협약(EU Arbitration Convention)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임
 - ▶ 개정 재무부령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건,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방법, 상호합의절차 진행 과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시 조건 부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본 시행령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2020년 6월 1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조세중재법(EU 조세분쟁 해결지침의 국내이행 법률)」상의 상호합의절차 규정을 추가함
- ▶ 정기적 상호합의절차와 조기 상호합의절차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합의개시일이 과도하게 앞당겨지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자가 신청 당시 체약상대국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추가 승인을 요구함
- ▶ 조정에 관한 기간(법정 5년)이 경과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관이 그 확정된 조세채무에 관하여 대응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

나. 최종 수익적 소유자 등록 관련 법률 시행

[조세동향 20-07호]

- ▾ 네덜란드는 2020년 7월 8일부터 최종 수익적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등록에

105) News IBFD, "Netherlands-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New Decree on Mutual Agreement Procedures," June 23,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6-23_nl_1(accessed Jul 29, 2020)

관한 개정 법률을 시행함¹⁰⁶⁾

- ▶ 상기 UBO 등록 관련 내용은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것으로, 네덜란드 「상업 등기법」과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방지법」을 개정함으로써 그 내용이 반영되었음¹⁰⁷⁾
 - EU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은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해당 국가 소재 기업들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도록 요청하였음

☐ 상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의무와 그 의무 이행일은 다음과 같음

- ▶ 2020년 7월 8일부터 ① 법인은 최종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② 재단법인은 그 재단에 지급된 당해 연도 지급금 기준 25% 미만의 금액을 지급한 자에 관한 기록(출연금액, 지급일자 등)을 남겨야 함
- ▶ 법인은 2020년 9월 27일부터 네덜란드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UBO 등록 관련 시스템에 그 법인의 최종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개정 법률의 몇몇 의무는 관계 법률 개정을 요하는바, 실제 의무 부과 개시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법인의 UBO 정보 열람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분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음
 - 기업은 상기 UBO 시스템을 통하여 UBO 정보가 민간의 제3자에게 제공된 횟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술은 현재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서 개발 중임

다. 2021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0년 9월 15일 2021년도 세법 개정안(Tax Plan 2021)을 발표하고 의결을 위해 하원에 제출함¹⁰⁸⁾

106) News IBFD, "Netherlands-Bill on 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Register Enters into Force," Jul 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08_nl_1(accessed Jul 29, 2020)

107) News IBFD, "Netherlands-Law on 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register submitted to lower house of parliament," April 5, 20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19-04-05_nl_1(accessed Jul 29, 2020)

108) News IBFD, "Netherlands-Minister of Finance Presents Tax Plan 2021," Sep 1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15_nl_1(accessed Sep 16, 2020).

- ▶ 본 세법 개정안은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기타 간접세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2021년도 법인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¹⁰⁹⁾

- ▶ 최하위 법인세율을 16.5%에서 15%로 인하하며, 최하위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20만유로¹¹⁰⁾에서 24만 5천유로¹¹¹⁾로 인상함
- ▶ 최상위 법인세율은 2021년도에 21.1%로 인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5%로 유지함
- ▶ 특허박스제도의 세율을 7%에서 9%로 인상함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0년도의 손실을 사전에 상계하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도입함
- ▶ 이자비용공제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외화환산차익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해 해당 이익은 불공제되는 비용까지를 한도로 상계함
- ▶ 자회사의 청산 또는 사업부문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결손금을 최대 500만유로¹¹²⁾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함
- ▶ 결손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결손금이 100만유로¹¹³⁾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과세 대상 이익에서 50%까지로 제한됨(단 결손금 이월공제 적용 기간은 6년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됨)

▣ 2021년도 개인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¹¹⁴⁾

- ▶ 최하위 소득세율을 37.1%로 기존 세율 대비 0.25%p 인하하며, 최상위 소득세율은 49.5%로 유지함
- ▶ 일반 세액공제 금액의 최대치를 2,711유로¹¹⁵⁾에서 2,837유로¹¹⁶⁾로 확대하였으며, 고용

109) News IBFD, "Netherlands-Tax plan 2021-Corporate Income Tax measures," Sep 1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16_nl_2\(accessed Sep 23, 2020\)](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16_nl_2(accessed Sep 23, 2020)).

110)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203만원임

111)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3,323만원임

112)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억 415만원임

113)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원임

114) News IBFD, Netherlands-Tax Plan 2021-Personal Income & Wage Tax Measures, Sep 1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9-16_nl_1, 검색일자: 2020. 9. 23.

115)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9만원임

116)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6만원임

세액공제는 3,819유로에서 4,205유로로, 노령 세액공제는 1,622유로에서 1,703유로로 확대함

- ▶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정비용 보상에 대한 과세면제 등 소득세 지원정책을 개정 법안에 도입함
- ▶ 종업원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급여세 과세가 면제되며, 2021년부터 퇴사한 종업원의 교육비 지출액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됨
- ▶ 종업원에게 업무 관련 비용을 일정 비율로 보상하며, 이는 과세되지 않음
 - 보상 비율은 첫 40만유로¹¹⁷⁾에 대해 1.7%(단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로 확대됨),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1.2%가 적용되며, 2021년도부터 1.18%로 감소할 예정임

▣ 2021년도 기타 간접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 2021년부터 탄소세가 도입됨
 -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30유로¹¹⁸⁾가 적용되며, 해당 세율은 매년 10.56유로¹¹⁹⁾씩 증가할 예정임
- ▶ 단기채무상품에 대해서 0.044%, 장기채무상품에 대해서 0.022%가 적용되던 기존 은행 세율(Bank tax rate)을 각각 0.066%, 0.033%로 인상함
- ▶ 2021년부터 18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세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함
- ▶ 부동산 거래세는 2021년부터 기존 6%에서 8%로 인상함

라.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조세동향 20-12호]

- ▣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12월 8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조세정책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함¹²⁰⁾

117)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4,433만원임

118)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만원임

119)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만원임

120) Rijksoverheid, <https://www.rijksoverheid.nl/ministeries/ministerie-van-financien/nieuws/2020/12/09/kabinet-versterkt-vangnet-voor-bedrijven-en-banen>, 검색일자: 2020. 12. 17.; News IBFD, "COVID-19 Pandemic: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조세정책의 적용기한을 2021년 4월 1일까지 연장함
 - 긴급 납부기한 연장¹²¹⁾
 - 과세관청에 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이행해야 하는 기한과 관련한 행정적인 의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일시적 지연 허용
 - 코로나19 기간 동안 독일로 통근하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한 독일과의 상호협약
 - 독일과의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라 독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네덜란드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보장보조금에 대한 면세 혜택
 -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
- ▶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과 함께 출장요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관련한 조세 혜택을 새롭게 도입함
 - 2021년 4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 키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
 - 출장요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제, 재고 및 조정 비용의 일시적 인상

3 노르웨이

가.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10호]

- ▣ 노르웨이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¹²²⁾

Government Extends, Introduces Tax Measures,” December 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09_nl_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121) 이 제도는 기존 적용기한이 2021년 1월 1일이었음

122) Regjeringen, “Taxes 2021,” 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643d38ec7c994b81b359c520502296b0/2021_tax_prop_1_chap_1_2.pdf(accessed Oct 14, 2020); News IBFD, “Wide Selection of Direct Tax Measures in Budget for 2021,” October 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08_no_1.html(accessed Oct 14, 2020)

- ▾ 개인 납세자와 관련하여 소득세의 누진세율 인하, 근로소득 등에 대한 기초 보조금 확대, 청년주택투자저축제도의 대상자 한정 및 연간 최대 저축액 확대, 근로자의 면세 상품 한도액 확대, 근로자의 기업 주식 매수 시 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 부유세 과세표준 할인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함
 - ▶ 소득구간 1, 2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0.2%p 인하함
 - 개인납세자의 기본 소득세율은 22%이고, 소득구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누진 세율이 적용됨

〈표 II-1〉 노르웨이 2021년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단위: 크로네)

소득구간	종류	2020년도	2021년도	변화
1	소득기준	180,800	184,800	2.2%
	세율	1.9%	1.7%	- 0.2%p
2	소득기준	254,500	260,100	2.2%
	세율	4.2%	4.0%	- 0.2%p
3	소득기준	639,750	651,250	1.8%
	세율	13.2%	13.2%	-
4	소득기준	999,550	1,021,550	2.2%
	세율	16.2%	16.2%	-

자료: Norwegian Ministry of Finance, "Taxes 2021," 2020, pp. 18-19.

- ▶ 근로소득, 사회보장 지원금 및 연금소득에 대한 최소공제(Minstefradrag)의 공제율을 1%p 확대함¹²³⁾
 - 최소공제란, 납세자는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실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고정 비용을 선택할 수 있음
 - 2020년도 최소공제율은 소득의 45%이며, 공제액은 최소 4천크로네¹²⁴⁾에서 최대 10만 4,450크로네¹²⁵⁾임
- ▶ 만 34세 이하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청년주택투자저축제도의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연간 최대 저축액을 2만 5천크로네¹²⁶⁾에서 2만 7,500크로네¹²⁷⁾로 확대함

123) PWC, "Norway: Individual-Deductions," <https://taxsummaries.pwc.com/norway/individual/deductions>(accessed Nov 3, 2020)

124) 2020. 11. 3.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7만원임

125) 2020. 11. 3.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247만원임

- ▶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면세 상품의 한도를 2천크로네¹²⁸⁾에서 5천크로네¹²⁹⁾로 확대함
 - ▶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주식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할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의 최대 한도를 1인당 5천크로네¹³⁰⁾에서 7,500크로네¹³¹⁾로 확대하고, 공제율 또한 주식 매수가격의 20%에서 25%로 확대함
 - ▶ 주거용 및 상업용 자산 가치를 문서화한 납세자에 대하여 부유세 과세표준 평가 시 추정 가치를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인 평가를 적용함
- ▣ 기업과 관련하여 자산 평가 할인을 확대, 저세율 관할 국가에 위치한 관련 회사(related company)에 지급한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함
- ▶ 기업의 자산 평가의 할인율을 35%에서 45%로 확대함
 - ▶ 저세율 관할 국가에 위치한 관련 회사에 지급한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 기타 조세정책으로는 탄소세 면세 폐지, 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폐지, 상속세 폐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함
- ▶ 탄소세(CO2 tax) 면세를 폐지하고 폐기물에 대한 조세를 도입할 예정임
 - ▶ 성형수술, 미용시술 및 대체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고, 의학적으로 정당하며 공공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면세함
 - ▶ 2014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부과하던 상속세를 폐지함
 - 노르웨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상속세 폐지 이후에도 2014년 이전 사망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해 왔음¹³²⁾

126)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07만원임

127)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38만원임

128)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4만원임

129)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1만원임

130)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61만원임

131)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92만원임

132) Skatteetaten, "Inheritance tax is abolished,"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gift-and-inheritance/inheritance-tax-is-abolished/> (accessed Oct 28, 2020)

4 덴마크

가. 녹색조세개혁이 포함된 국가기후정책 발표

[조세동향 20-07호]

- ▶ 덴마크 의회는 2020년 6월 22일 녹색조세개혁(Green Tax Reform)이 포함된 ‘국가기후정책2030’을 발표함¹³³⁾, ¹³⁴⁾
- ▶ 탄소세(CO₂ Tax)를 통합하고 난방세(Heating Tax)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녹색조세개혁에 합의함
 - 2020년 가을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제안에 통합된 탄소세 부과 및 환경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수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 2021년 1월 1일부터 난방세를 석탄연료 사용 시 단위열량(GJ)당 56.7크로네¹³⁵⁾에서 62.3크로네¹³⁶⁾로 인상하고, 전기연료 사용 시 킬로와트(kWh)당 15.5외르(ø re)¹³⁷⁾, ¹³⁸⁾에서 기업은 0.4외르¹³⁹⁾로 가정은 0.8외르¹⁴⁰⁾로 경감하기로 합의함
 - ▶ 덴마크는 현재 미네랄오일세, 가스세, 석탄세, 탄소세, 전기세와 같은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음¹⁴¹⁾
 -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참여 기업은 탄소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난방세와 관련하여 지역난방시설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탄소세를 납부해야 함

133) 덴마크 재무부, “Klimaaf tale for energi og industri mv, 2020,” <https://kefm.dk/media/13163/aftaletekst-klimaaf tale-energi-og-industri.pdf>, 검색일자: 2020. 7. 28.

134) News IBFD, “Danish Parliament Agrees on Climate Action Plan Including Tax Measures to Achieve Reduction of CO₂,” June 2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6-24_dk_1.html(accessed Jul 14, 2020)

135) 2020. 8. 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707원임

136) 2020. 8. 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1,764원임

137) 1크로네(DKK)는 100외르(ø re)임

138) 2020. 8. 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28원임

139) 2020. 8. 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0.75원임

140) 2020. 8. 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1원임

141) OECD,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Denmark,” <https://www.oecd.org/tax/tax-policy/taxing-energy-use-denmark.pdf>, 검색일자: 2020. 7. 29.

나. 2021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 덴마크 재무부는 2020년 8월 3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함¹⁴²⁾
 - ▶ 금융활동과 관련한 급여세(payroll tax)를 15.2%에서 15.3%로 인상하고, 1천만크로네¹⁴³⁾ 이상의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도입함
 -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함
 - ▶ 초콜릿, 커피, 수도, 형광등,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세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에너지세 인상을 2023년까지 연기함
 - ▶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규모를 확대하고 IT 감독기구 및 특별위원회를 설립함
 - 과세관청은 추가적으로 8개의 센터를 설립하고, 1천명의 직원을 고용함
 - 독립적인 IT 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과세관청의 노후된 시스템을 대체하고 현대화를 감독하도록 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과세관청의 건설적인 장기 계획을 위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함

다. 녹색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탄소세 인상

[조세동향 20-12호]

- ▣ 덴마크 정부는 2030년까지 덴마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Green Tax Reform 1단계 계획을 2020년 11월 23일 발표하였음¹⁴⁴⁾

142) 덴마크 재무부, "Forslag til finanslov for finansåret 2021," <https://fm.dk/media/18181/ffl21a.pdf>, 검색일자: 2020. 9. 14.; News IBFD, "Government Presents its Budget for 2021," September 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01_dk_1.html, 검색일자: 2020. 9. 23.

143)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억 2천만원임

144) IBFD, "Government Announces Phase One Of Its Green Tax Reform,"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24_dk_1.html, 검색일자: 2020. 12. 18.

-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에너지세를 강화할 예정이며, 광물 산업의 경우 2025년부터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 구체적으로 기존의 에너지 1기가줄(GJ)당 4.50덴마크크로네¹⁴⁵⁾였던 에너지세가 10.50덴마크크로네¹⁴⁶⁾까지 인상될 예정임
 - 농업 분야의 경우 기존의 1기가줄(GJ)당 1.50덴마크크로네¹⁴⁷⁾에서 7.50 덴마크크로네¹⁴⁸⁾까지 인상될 예정임
- ▶ 당분간의 세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5억덴마크크로네¹⁴⁹⁾의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5 독일

가. 자녀부양가족에 대한 조세혜택 법률 초안 발표

[조세동향 20-07호]

-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6월 30일 「가족에 대한 조세경감 및 조세규율 개정 제2차 법률」 초안을 발표함¹⁵⁰⁾
 - ▶ 자녀양육수당을 9,408유로¹⁵¹⁾에서 2021년에는 9,696유로,¹⁵²⁾ 2022년에는 9,984유로¹⁵³⁾로 인상함
 - ▶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을 2,586유로¹⁵⁴⁾에서 2021년 2,730유로¹⁵⁵⁾로 인상함

145)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2원임

146)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94원임

147)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1원임

148)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3원임

149)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15억 4,200만원임

150) News IBFD, "Germany Plans to Promote and Economically Strengthen Families with Children," Jul 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7-07_de_1.html(accessed Jul 14, 2020)

151)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17만원임

152)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7만원임

153)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98만원임

154)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1만원임

- ▶ 자녀의 교육, 보육, 양육비 소득공제액을 1,320유로¹⁵⁶⁾에서 2021년 1,464유로¹⁵⁷⁾로 인상함
- ▶ 자녀세액공제액을 2021년도에 첫째 및 둘째 자녀는 204유로¹⁵⁸⁾에서 219유로¹⁵⁹⁾, 셋째 자녀는 210유로¹⁶⁰⁾에서 225유로,¹⁶¹⁾ 넷째 이상의 자녀는 235유로¹⁶²⁾에서 250유로¹⁶³⁾로 인상함

나. 연례조세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0-08호]

-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7월 21일 연례조세법2020 초안을 발표하여 기존 조세법의 일정 부분을 수정함¹⁶⁴⁾
 -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패키지(EU VAT e-commerce package)를 실행함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패키지란, 용역 공급, 원거리 재화 공급 및 특정 국내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EU 2017/2455 및 2019/1995 지침임
 - ▶ 「판매세법」 제13b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적용 대상을 원격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재판매자(reseller)로 확대함
 - ▶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사업자산비용의 최대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산의 50% 이상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소득공제 적용 조건을 완화함
 - 적격 납세자의 정의를 소득활동의 유형에 관계없이 순이익이 12만 5천유로¹⁶⁵⁾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단순화함

155)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2만원임

156)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4만원임

157)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4만원임

158)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만원임

159)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만원임

160)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만원임

161)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만원임

162)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원임

163)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만원임

164) News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Bill for an Annual Tax Act 2020," Jul 2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7-24_de_1.html(accessed Aug 24, 2020)

165)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713만원임

- 기존 「소득세법」 제7g조는 사업 자산비용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자산의 90% 이상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 「소득세법」 제21조와 관련하여 임대소득 산정에 있어서 주거용 주택의 임대료가 시장가치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시장가치와 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는 관련 비용으로 소득공제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시장가격의 66%에서 50%로 인하함
- 임대료가 시장가격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에 시장가치와 임대료의 차액은 사용 수익권의 포기로 보아, 이를 무상제공 부문과 광고유인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비용으로 소득공제됨
-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다. 원천징수세액 감면 절차 현대화 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0-12호]

-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11월 20일 원천징수세액 감면 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안 초안을 발표함¹⁶⁶⁾
 - ▶ 원천징수세액 감면 절차를 단순화하고 연방 중앙 세무서(Federal Tax Office)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할당함
 - ▶ 환급 신청, 세금 증명서 및 기타 필수 정보를 다루는 중앙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함
 - ▶ 특정 로열티에 대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완화함¹⁶⁷⁾
 - 기존에는 해당 권리가 독일 특허청(Deutsches Patent-und Markenamt: DPMA)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권리가 이용되는 장소와 상관없이 비거주자의 라이선스 또는 권리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해당 권리가 독일 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함
 - 개정된 법안은 모든 조세연도에 소급하여 적용함

166)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Bill on Modernization of Withholding Tax Relief Procedures," Nov 2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26_de_1.html, 검색일자: 2020. 12. 18.; EY, "German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law concerning the modernization of withholding tax relief and extraterritorial taxation of IP," <https://taxnews.ey.com/news/2020-2750-german-ministry-of-finance-publishes-draft-law-concerning-the-modernization-of-withholding-tax-relief-and-extraterritorial-taxation-of-ip>, 검색일자: 2020. 12. 18.

167) Income Tax Act Section 49(1) No. 2(f) and No. 6.

- ▶ 외국법인(non-resident company)에 대한 새로운 반조약 쇼핑(anti-treaty shopping) 규정을 제안함¹⁶⁸⁾
 - 소득의 실소유자가 외국법인이 아니고 주주들이 조약상 혜택(treaty benefits)을 적용받지 않으며, 독일 내 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조약상 혜택을 거부함
 - 단 외국법인을 두는 이유가 세금 혜택(tax advantage)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조약상 혜택이 적용 가능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에는 해당 조항이 면제됨

6

룩셈부르크

가.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11호]

- ▣ 룩셈부르크 재무부는 2020년 10월 14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⁶⁹⁾
 - ▶ 이산화탄소세를 도입하여, 2021년에는 이산화탄소 1톤당 20유로,¹⁷⁰⁾ 2022년에는 25유로,¹⁷¹⁾ 2023년에는 30유로¹⁷²⁾를 부과함
 - ▶ 임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입하거나 건설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한 가속상각률이 6%에서 4%로 변경됨
 - ▶ 주택 보수 목적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함인 경우 보수 작업에 부과하는

168) Income Tax Act Section 50d(3).

169) Deloitte, "Luxembourg draft 2021 budget law," <https://www2.deloitte.com/lu/en/pages/tax/articles/luxembourg-draft-2021-budget-law.html>, 검색일자: 2020. 11. 18.; PWC, "Luxembourg 2021 Budget-tax rates pegged, some new targeted anti-avoidance measures announced," <https://www.pwc.lu/en/newsletter/2020/luxembourg-2021-budget.html>, 검색일자: 2020. 11. 18.

170)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 6,350원임

171)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2,938원임

172)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9,526원임

VAT 세율이 기존의 17%에서 3%로 낮아지고,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연령은 20년에서 10년으로 낮아짐

- ▶ 중소기업의 VAT 면제 한도가 기존의 3만유로¹⁷³⁾에서 3만 5천유로¹⁷⁴⁾로 인상됨
- ▶ 종업원을 위한 새로운 이익 참여 프리미엄(New Profit Participation Premium Scheme) 제도를 도입함
 - 이익 참여 프리미엄 제도는 우수 인력이 회사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회사에서 창출된 이익을 바탕으로 종업원에게 “참여형 프리미엄(participative premium)”을 제공하는 제도임
 -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총액은 전년도 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프리미엄은 연간 총보수(현금/현물 혜택 및 성과급 제외)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리미엄의 50%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본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스톡옵션 제도는 폐지함

7 벨기에

가. 코로나19 관련 급여세 원천징수액 한시적 감면 시행세칙 발표

[조세동향 20-08호]

- ☐ 벨기에 재무부는 2020년 8월 6일 급여세 원천징수액의 한시적인 감면에 대한 시행세칙인 Circular 2020/C/103을 발표함¹⁷⁵⁾
- ☐ 기업의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감면하여 이를 기업의 자본에 투입할 수 있게 함

17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53만원임

174)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11만원임

175)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Clarifications on Wage Tax Exemption,” Aug 2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0_be_1(accessed Aug 26, 2020)

- ▶ 2020년 6월에서 8월까지 원천징수된 급여세의 월별 총액에서 2020년 5월에 원천징수된 급여세액 차액의 50%를 감면함¹⁷⁶⁾
 - ▶ 여기에서 급여소득은 휴일 수당, 연말 상여금 및 체납 또는 고용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근로자의 과세 대상 보수를 의미함
 - ▶ 본 법안에 따라 예상되는 원천징수세 면제 총액은 2천만유로¹⁷⁷⁾를 초과할 수 없으며,¹⁷⁸⁾ R&D 관련 기업과 같이 이미 부분적으로 급여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혜택을 먼저 적용해야 함
-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상기 급여세 원천징수액 감면이 적용됨¹⁷⁹⁾
- ▶ 고용주는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5월 31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연속 기간 동안 임시 실업조치 수혜자여야 함
 - 이때 30일 연속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됨
 - ▶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금이 감소하거나 배당금을 배분하지 않아야 함
 - ▶ 고용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지불액이 없어야 함

나. 조세 시스템 현대화 추진안 발표

[조세동향 20-10호]

- ☐ 벨기에 정당 교섭자들은 2020년 9월 30일, 조세 시스템 현대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새 연방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함¹⁸⁰⁾

176) Deloitte, "COVID-19: Wage withholding tax incentive,"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be/Documents/tax/TaxAlerts/IndividualTaxAlerts/COVID-19%20Wage%20withholding%20tax%20incentive.pdf>, 검색일자: 2020. 9. 4.

177)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3억 3,660만원임

178) Projet de Loi: "Portant diverses mesures fiscales urgentes en raison de la pandémie du COVID-19 (CORONA III)," <https://www.dekamer.be/FLWB/PDF/55/1390/55K1390001.pdf>, 검색일자: 2020. 9. 4.

179) News IBFD, "Belgium-COVID-19 Pandemic: Bill on COVID-19-Related Wage and Income Tax Measures Submitted to Parliament," Jul 3, 2020(accessed Sep 1, 2020)

180) News IBFD, "Belgium-Belgium Plans to Adopt New Objectives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Taxation System," October 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06_be_1(accessed Oct 13, 2020)

- ▶ 벨기에는 헌법 제2조를 통해 네덜란드어(플란데런어), 프랑스어, 독일어 3개의 언어 공동체를 각각 인정하고, 각 언어권의 정당 간 합의하에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프랑스어권과 네덜란드어권 정당 간 대립으로 2019년 선거 이후 16개월간 임시 정부 체제를 이어오던 중, 2020년 9월 30일 최종적으로 연방 정부 구성에 합의함¹⁸¹⁾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의 지급 능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함
 - ▶ 기업의 2022~2024년 회계연도 수익의 일부를 재건 준비금으로 할당하는 것을 허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
 - ▶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25%의 투자 공제 혜택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함
- ▣ 일반 국내 과세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
 - ▶ 노동에 대한 세금 감면, 과세 기반 확대, 조세행정 단순화 등을 수반하는 조세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혁을 시도함
 - ▶ 기업이 정신을 존중하여 정직한 공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 ▶ 공증인의 해외 등기를 금지하여 등기 의무를 강화함
 - ▶ 벨기에 은행 계좌 잔액 정보를 벨기에 국립은행 내 담당 부서(Central Point of Contact)에 전달함
 - ▶ 환경 친화적인 이동 수단 및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방안을 모색함
 - ▶ 고용주에게 직원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
 - ▶ 모든 주거용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에 대해 6%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적용함
- ▣ OECD 및 EU의 합의안에 부합하는 국제 조세 관련 대응책을 마련함
 - ▶ 2023년부터 OECD 디지털세 Pillar 1 및 Pillar 2 제안에 기반한 국내 디지털 조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181) 『연합뉴스』, 「벨기에 새 정부 출범…유럽 첫 성전환자 부총리 임명」, 2020. 10. 2.,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2045400098>, 검색일자: 2020. 11. 3.

다. 고액 증권 보유에 대한 과세 결정

[조세동향 20-11호]

- ▣ 벨기에 정부는 2020년 11월 2일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고액의 증권에 대한 과세를 결정함¹⁸²⁾

 - ▶ 명목 증권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평균 가치가 100만유로¹⁸³⁾를 초과하는 경우 0.1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기준액과 100만유로 차액의 10%로 과세액이 제한됨
 - ▶ 벨기에 정부는 금번 실시되는 증권계좌세는 모든 금융상품과 법인 소유의 증권계좌까지 포함하므로, 합법적이고 공평한 세금이라고 설명함
 - 2017년 말 개인 증권계좌의 총평균가치가 5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0.15%의 세율로 부과하는 증권계좌세를 도입하였으나 2019년 10월 17일 위헌으로 폐지된 바 있음¹⁸⁴⁾
- ▣ 다음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조세 회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짐

 - ▶ 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명목 증권 혹은 펀드로 전환함
 - ▶ 100만유로 한도를 피하기 위해 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여러 증권계정에 분할함
 - ▶ 증권계좌를 외국법인에 양도한 후, 증권을 외국 증권계좌로 이전함
 - ▶ 본 납용 방지조항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소급 적용됨

8 스웨덴

가. 코로나19 관련 강제적 보고규정에 따른 보고기한 연장

[조세동향 20-07호]

182) News IBFD, "Belgium-Belgium Announces New Annual Securities Account Tax," Nov 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1-06_be_1(accessed Nov 10, 2020)

18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1,705만원임

184) News IBFD, "Belgium - Constitutional Court nullifies annual securities account tax," October 21, 20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19-10-21_be_1(accessed Nov 24, 2020)

- ▣ 스웨덴 과세관청은 2020년 6월 18일 강제적 보고규정과 역외조세약정 교환에 대한 EU지침(DAC6)을 실행하는 국내 법률에 대한 지침을 수정함^{185), 186)}

 - ▶ 스웨덴 의회는 2020년 6월 3일 DAC6 실행 국내 법률을 의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스웨덴 정부가 법률의 발효시기를 정하도록 함¹⁸⁷⁾
 - ▶ 스웨덴 정부는 2020년 6월 18일 DAC6 실행 국내 법률은 2020년 7월 1일 발효되며 각 보고의무 기한은 DAC6에 따른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함
 - ▶ 스웨덴 과세관청은 2020년 6월 18일 실행 법률의 목적, 보고 대상 약정, 보고의무자, 보고정보, 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형식에 대한 내용의 수정지침을 게재함

- ▣ 스웨덴 정부는 2020년 6월 30일 강제적 보고규정에 따른 보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을 발표함^{188), 189)}

 - ▶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역외조세약정에 대한 강제적 보고시기를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연장함
 - 역외조세약정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준비가 되었거나 실행을 위한 첫 단계가 실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강제적 보고시기 연장에 따른 보고 기한은 2021년 1월 31일임¹⁹⁰⁾
 - ▶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의 역외조세약정에 대한 보고 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1년 2월 28일로 연장함
 - EU 이사회가 2020년 6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보고기한 연장을 권고하여 이를 반영한 것임

185) 스웨덴 정부, "Rapporteringspliktiga arrangemang,"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0.8/382514.html>, 검색일자: 2020. 7. 28.

186) News IBFD, "Tax Administration Updates DAC6 Reporting Guidance," June 2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6-25_se_1.html(accessed Jul 14, 2020)

187) EY, "Sweden extends MDR reporting deadlines for six months," Jul 8 2020, <https://taxnews.ey.com/news/2020-1738-sweden-extends-mdr-reporting-deadlines-for-six-months?uAlertID=Sd%2FG8rua1oj6%2F158EZ2AiA%3D%3D>(accessed Aug 4, 2020)

188) 스웨덴 정부, "Beslut i EU möjliggör justering av tidsfrister i det nya regelverket om rapporteringsplikt för skatterådgivare,"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0/06/beslut-i-eu-mojliggor-justering-av-tidsfrister-i-det-nya-regelverket-om-rapporteringsplikt-for-skatteradgivare/>, 검색일자: 2020. 7. 28.

189) News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Postpones DAC6 Reporting Deadlines," Jul 1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7-10_se_1.html(accessed Jul 14, 2020)

190) EY, "Sweden extends MDR reporting deadlines for six months," Jul 8, 20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sweden-extends-mdr-reporting-deadlines-for-six-months(accessed Aug 4, 2020)

나. 2021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0-09회]

☞ 스웨덴 정부는 2020년 9월 2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함¹⁹¹⁾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세 혜택을 그 내용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및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도 포함함

☞ 기업과 관련하여 이자공제 제한 규정 수정, 금융영역의 조세 인상, 기계와 장비 투자비용에 대한 일시적 소득공제 허용, 사회보장분담금 인하를 그 내용으로 함¹⁹²⁾

▶ 이자공제 제한 규정을 그룹기여제도(group contribution regime)와 관련하여 수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2019년 이자공제 제한 규정과 그룹기여제도를 동시에 변경하여 기업이 특정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를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1월 1일 시행할 것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기계와 장비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투자비용의 3.9%를 소득공제하고, 이는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기업 및 개인에게 모두 적용됨

▶ R&D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9세에서 23세 사이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을 인하함

- 근로자가 월 근로시간의 75% 이상을 R&D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인하하는데, 이를 2021년 7월 1일부터 월 근로시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

- 19세에서 23세 사이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31.42%에서 19.76%

191) 스웨덴 정부, "Budgetpropositionen för 2021,"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0/09/prop.-2020211/>, 검색일자: 2020. 9. 22.; News IBFD, "Government Provides Targeted Stimulus in Budget for 2021," September 2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22_se_1.html(accessed Sep 23, 2020)

192) News IBFD, "Government Proposes Employment Incentives, Risk Tax on Banks, Changes to Interest Deduction Rules," September 1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18_se_1.html(accessed Sep 23, 2020)

로 인하하고, 이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근로자 1인당 월 2만 5천코로나¹⁹³⁾를 한도로 함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납세자의 기본 소득공제액 인상, 소득공제되는 특정 가사서비스(rutavdrag)의 범위 확대, 환경친화적 기술 설치 시 경감 혜택 및 적격 거주 기간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함

- ▶ 6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하여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사이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특정 소득 구간인 경우에는 기본 소득공제액을 인상함
- ▶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특정 가사서비스에 세탁 등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가구 및 인테리어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 ▶ 환경친화적인 기술(자가 태양에너지 설치 사용, 전기자동차 사용 등)을 설치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태양에너지설비 비용의 15%, 자가생산전기 및 전기자동차 비용의 50%를 소득공제하고, 이는 5만코로나¹⁹⁴⁾를 한도로 함
- ▶ 거주외국인조세제도의 적격 거주기간의 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2020년 5월 31일부터 스웨덴에 거주한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기간 한도가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음

▣ 기타 조세와 관련하여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도입, 자동차세 수정,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그 내용으로 함

- ▶ 2021년 4월 1일부터 휴대전화, 집적회로, 게임 콘솔, 태블릿 PC, 노트북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상품가격이 10만코로나¹⁹⁵⁾를 초과하는 경우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함
- ▶ 자동차 무료 사용(기업 소유 자동차 사용 등)에 대한 자동차세 혜택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수정할 예정임
- ▶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법안은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임

193)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5만원임

194)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48만원임

195)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03만원임

9 스위스

가. 블록체인 거래 관련 세법 개정 불필요 입장 발표

[조세동향 20-07호]

- ▣ 스위스 연방 이사회(Federal Council)는 2020년 6월 19일 블록체인 거래와 관련한 세법 개정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발표함¹⁹⁶⁾

 - ▶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 개발에 대응하여 스위스 세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2019년 8월 스위스 연방세무국(Federal Tax Administration)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함
 - 해당 보고서는 재산세, 소득세 및 원천징수세의 암호화폐와 국제무역기구 관련 논의들을 다루고 있음
- ▣ 소득 및 부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기존 법안은 그 가치가 입증되어 있고,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을 분산원장기술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방식까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입법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임

 - ▶ 양도 인지세(transfer stamp duty)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분산원장기술 거래 사용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개정을 반대함
- ▣ 또한 스위스가 사업 소재지로서 불리한 입지가 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세 확대를 지양할 것을 권고함

 - ▶ 코인이나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196) *Tax Notes International*, "No Tax Revisions Needed for Blockchain, Swiss Government Says," June 29, 2020, p. 1540(accessed Jul 28, 2020)

10 스페인

가. 자동차산업 기술혁신 관련 조세혜택 확대

[조세동향 20-07호]

- ▶ 스페인 정부는 2020년 6월 24일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정한 투자에 대하여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법령을 관보에 게재함¹⁹⁷⁾, ¹⁹⁸⁾
- ▶ 자동차산업의 2020/21과세연도 기술혁신 세액공제액을 연구·인력개발비의 12%에서 25%로 확대함

 - ▶ 새로운 생산공정을 개발하거나 기존 생산공정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끌어 낸 기술혁신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 ▶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관련 활동이 기술혁신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기술한 보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 ▶ 자동차산업 영역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한 임의상각을 50만유로¹⁹⁹⁾ 한도로 허용함

 - ▶ 투자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모니터링, 모듈 플랫폼에 기반하거나 환경 영향을 경감시키는 제조 시스템 실행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취득자산이 운용된 해당 과세연도의 시작일로부터 24개월 동안 2019년에 고용된 직원의 평균 인원수가 유지되어야 함
 - 2021년 말 이전에 취득자산이 운용되어야 함
 - 기업은 투자가 임의상각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산업통상부 발행보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음

197) 스페인 관보, “Real Decreto-ley 23/2020, de 23 de junio, por el que se aprueban medidas en materia de energía y en otros ámbitos para la reactivación económica,” <https://www.boe.es/boe/dias/2020/06/24/pdfs/BOE-A-2020-6621.pdf>, 검색일자: 2020. 7. 28.

198) News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Grants Incentives to Automotive Sector to Reactivate Economy,” June 2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6-29_es_2.html(accessed Jul 14, 2020)

199)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9,964만원임

- ▶ 중소기업은 새로운 특정 자산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가속상각과 임의상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나.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11회]

- ▼ 2020년 10월 27일 스페인 재무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⁰⁰⁾
 - ▶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 및 자본소득세의 완전(100%) 면제가 95%로 제한됨
 - 최소 1년 동안 중단기간 없이 자회사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배당 및 자본소득
 - 취득가액이 2천만유로²⁰¹⁾ 이상인 자회사를 소유한 기업의 배당 및 자본소득(단 해당 자회사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그룹 내에서 발생한 배당 및 자본소득
 - 모회사가 특정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 ▶ 배당 및 자본소득세에 대한 100% 면제는 전년도 매출액이 4천만유로²⁰²⁾를 초과하지 않는 국내 거주 기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됨
 - 해당 면제조항은 자회사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적용됨
 - ▶ 연 30만유로²⁰³⁾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표 II-2>와 같이 47%의 소득세율을 적용함
 - ▶ 20만유로²⁰⁴⁾를 초과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26%의 세율을 적용함

200) *Bloomberg Tax*, "Spain MOF Presents 2021 General State Budget,"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8JKUK1C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search=BNA%25200000017575a7d8ccab7575af64fb0004#cite-, 검색일자: 2020. 11. 18.; IBFD, "Government Reduces Full Exemption for Certain Dividends and Capital Gains to 95% Exemption in the Budget Bill for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05_es_1.html(accessed Nov 18, 2020); EY, "Spain releases 2021 State Budget Bill," https://www.ey.com/en_gl/tax-alerts/spain-releases-2021-state-budget-bill, 검색일자: 2020. 11. 18.

201)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3억 5천만원임

202)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27억 150만원임

20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9,500만원임

204)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6,350만원임

- 기존에는 5만유로²⁰⁵⁾를 초과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23%의 세율을 적용하였음²⁰⁶⁾
- ▶ 복지제도에 대한 연간 기여금(예: 연금제도, 보장성 저축제도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8천유로²⁰⁷⁾에서 2천유로²⁰⁸⁾로 축소함
- ▶ 설탕 및 가당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의 10%에서 21%로 인상함
- ▶ 디젤연료에 적용되는 세금을 기존의 1천리터당 379유로에서 417유로로 인상함
 - 난방 또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젤연료는 제외
- ▶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보험료 수입세(Insurance Premium Tax: IPT)를 기존의 6%에서 8%로 인상함

〈표 11-2〉 스페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단위: %, 유로)

소득세율	과세표준	
	현행(2020년)	변경 후(2021년)
19	0 ~ 12,450	0 ~ 12,450
24	12,450 ~ 20,200	12,450 ~ 20,200
30	20,200 ~ 35,200	20,200 ~ 35,200
37	35,200 ~ 60,000	35,200 ~ 60,000
45	> 60,000	60,000 ~ 300,000
47	해당 없음	> 300,000

자료: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spai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0. 12. 1.;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20/11/flash-alert-2020-453.html>, 검색일자: 2020. 12. 1.

다. 디지털서비스세 및 금융거래세법 의회 승인

[조세동향 20-11호]

- ▣ 2020년 10월 16일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금융거래세(FTT)에 관한 법률이 스페인 의회 승인 후 스페인 관보에 게재됨²⁰⁹⁾

205) 2020. 12. 0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50만원임

206) KPMG, "Tax rates,"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spain-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0. 12. 2.

207)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54만원임

208)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3만원임

▣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²¹⁰⁾

- ▶ 디지털서비스(예: 온라인 광고, 중개 및 데이터 전송)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3%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됨
- ▶ 과세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²¹¹⁾를 초과하면서 국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이 300만유로²¹²⁾를 초과하는 기업임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세가 면제됨
 - 중개 역할을 하지 않는 공급자의 웹페이지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 온라인 중개 서비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사용자 간에 직접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
 - 주된 목적이 디지털 콘텐츠, 통신서비스 또는 결제서비스의 공급인 온라인 중개서비스
 -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서비스
 -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서비스
 - 100% 직·간접적 지분 참여를 통하여 그룹의 일부를 구성하는 회사 간의 디지털서비스
- ▶ 동 법률은 2021년 1월 16부터 시행됨

▣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²¹³⁾

- ▶ 주식 매입 이전 연도 12월 1일 기준 시가 총액이 10억유로²¹⁴⁾를 초과하며, 스페인 증권거래소나 EU 회원국 또는 제3국의 적격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페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0.2%가 금융거래세로 부과됨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세가 면제됨
 - 주식 또는 예탁증서의 발행을 통한 주식 취득
 - 기업공개(IPO)로 발행된 주식의 취득
 - 상기 두 항목과 관련하여 최종 투자자들에게 주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플레이스먼트

209) *Bloomberg Tax*, "Spain Gazettes Laws Implementing Digital Services Tax, Financial Transactions Tax," 검색일자: 2020. 11. 23.

210) IBFD, "Parliament Approves Digital Servic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19_es_1.html, 검색일자: 2020. 11. 23.

211)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82억원임

212)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억 5,260만원임

213) IBFD, "Parliament Approves Financial Transactions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19_es_2.html, 검색일자: 2020. 11. 23.

214)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1조 3,175억원임

에이전트(Placement Agents)의 수단적 주식 취득

- 공식적인 주식 상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가격 안정을 담당하는 금융중개인에 의한 주식 취득²¹⁵⁾
 - 중앙청산기구나 중앙예탁결제기관의 청산 또는 결제로 인한 주식 취득
 -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용하는 시장 관행 내에서 유동성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식 발행자를 대신하여 금융 중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식 취득
 - 시장 창출활동에 따라 발생한 주식 취득
 - 그룹 내 회사 간에 실현된 주식 취득
 - 인수합병 조세제도하의 주식 취득
 - 증권 파이낸싱 거래 및 특정 소유권 이전 담보 약정²¹⁶⁾
 - 단일청산이사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 또는 국가청산기구의 결의에 따른 주식 취득²¹⁷⁾
 - 특정 환매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한 그룹 내 회사의 자사주 또는 모회사의 주식 취득
- ▶ 동 법률은 2021년 1월 16부터 시행됨

11 아일랜드

가. 인지세 회피 규정 관련 지침 발행

[조세동향 20-07호]

-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0년 7월 6일 인지세 회피 관련 조항인 Section 31C와 Section 31D에 관한 지침을 발행함²¹⁸⁾

215) EU, "REGULATION(EU) No 59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596&from=es>, 검색일자: 2020. 11. 23.

216) EU, "REGULATION(EU) 2015/23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5R2365&from=ES>, 검색일자: 2020. 11. 23.

217) EU, "REGULATION(EU) No 80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uly 20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806&from=ES>, 검색일자: 2020. 11. 23.

- ▾ Section 31C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간접 양도나 매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관련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항임

 - ▶ 인지세의 세율이 비주거용 부동산은 7.5%, 주식은 1%이므로, 회사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함²¹⁹⁾
 - ▶ 본 지침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목적상 정의를 비롯하여 지침의 적용 대상자, 양도 및 이전에 관련한 개념이 포함됨²²⁰⁾
 - 인지세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지로 사용하였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혹은 개조된 후 다른 용도로 개조되지 않은 부동산을 의미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모든 부동산을 지칭함
 - 주식 또는 시장성 유가증권의 판매 또는 양도, 혹은 대상 기업의 지분 매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수단이 작용하였거나,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변경될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됨
 - 이때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총가치를 고려하여 양도에 대한 인지세를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과 같은 항목은 무시됨

- ▾ Section 31D와 관련하여 협약을 통한 법정 승인방식으로 기업이 인수될 경우, 취소된 주식에 대해 주주들에게 지불한 대가의 1%를 인지세로 부과함²²¹⁾

 - ▶ 법정 승인방식으로 상대 기업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소유권이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는 수반되지 않아 과거에는 인지세 대상이 되지 않았음
 -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 취소 후 신규 주식을 발행하므로 실제 주식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음
 - ▶ 고등법원은 제안된 협약을 승인한 후 계획 명령을 작성하여 이를 기업 등록 사무소

218) News IBFD, “Ireland-Revenue Updates Guidance on Stamp Duty Anti-Avoidance Measures,” Jul 13,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13_ie_1(accessed Jul 14, 2020)

219)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135/20,”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0/no-1352020.aspx>, 검색일자: 2020. 7. 21.

220) 아일랜드 국세청, “Section 31C: shares deriving value from immovable property,”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stamp-duty/stamp-duty-manual-replacement/part-05-provisions-applicable-to-particular-instruments/section-31C-shares-deriving-value-from-immovable-property-situated-in-State.pdf>, 검색일자: 2020. 8. 4.

221) 아일랜드 국세청, “Section 31D: Cancellation schemes of arrangement,”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stamp-duty/stamp-duty-manual-replacement/part-05-provisions-applicable-to-particular-instruments/section-31D-cancellation-schemes-of-arrangement.pdf>, 검색일자: 2020. 7. 29.

(Company Registration Office)에 전달하며, 과세 대상자는 계획 명령 전달 후 44일 이내에 전자 인지세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나. 코로나19 극복 지원 관련 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0-08호]

-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20년 7월 24일 개인 및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²²²⁾
- ▣ 법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 이월 및 납세 이자 면제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함
 -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거래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에 대해 손실 이월을 허용함
 - 단독 또는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손실²²³⁾이 발생하였고, 아일랜드 「조세 통합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전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²²⁴⁾
 - 예상 손실의 최대 50%를 이전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규칙보다 일찍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며, 나머지 50%의 손실은 정상 규칙에 따라 재처리함
 - ▶ 2019년에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역시 2019년 과세연도 수익에서 최대 2만 5천유로²²⁵⁾까지 손실액을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 코로나19 봉쇄기간 또는 그 이후 12개월 동안 모든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 부담금과 관련한 납세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음
- ▣ 2020년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첫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 감면액을 확대함

222) News IBFD, "Ireland-COVID-19 Pandemic: Revenue Provides Guidance on the Accelerated Loss Relief for Companies," August 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07_ie_2(accessed Aug 20, 2020)

223) 이때 손실은 「소득세법」상의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됨(Taxes Consolidation Act, 1997, Section 382)

224)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Section 382

225)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42만원임

- ▶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액을 ① 3만유로²²⁶⁾(기존 2만유로²²⁷⁾) ② 주택의 매입가 혹은 준공가의 10%(기존 5%) ③ 제도 도입 4년 전에 납부한 개인소득세와 예금이자소득세의 합계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확대함
- ▣ 개인의 소득세 세액에서 숙박,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관련 지출의 20%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²²⁸⁾
 - ▶ 거래당 최소 지출은 25유로²²⁹⁾이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지출이 대상이 됨
 - ▶ 공제 가능한 최대 비용은 625유로²³⁰⁾(부부는 1,250유로²³¹⁾)로, 이에 따른 최대 공제액은 125유로²³²⁾(부부는 250유로²³³⁾)임
- ▣ 표준 부가가치세 세율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23%에서 21%로 한시적으로 인하함

다. 2021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0-10호]

- ▣ 아일랜드 정부는 2020년 10월 13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함²³⁴⁾
- ▣ 법인세율 12.5%를 유지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공제 혜택의 기한을 연장함²³⁵⁾

226)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50만원임

227)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33만원임

228) Citizens Information, "Stay and Spend Tax Credit,"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money_and_tax/tax/income_tax_credits_and_reliefs/stay_and_spend_tax_credit.html. 검색일자: 2020. 9. 7.

229)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5천원임

230)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만 8천원임

231)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5만 7천원임

232)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만 6천원임

233)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만 1천원임

234) Budget.gov.ie, "Summary of 2021 budget measures policy changes," http://budget.gov.ie/Budgets/2021/Documents/Budget/Budget%202021_Summary%20of%20Taxation%20Measures.pdf(accessed Oct 26, 2020)

235) News IBFD, "Ireland-Direct Tax Measures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Confirms 12.5% Corporate

- ▶ 법인세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2.5%를 유지함을 명시함
- ▶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율을 50% 감면하는 지식개발박스(Knowledge Development Box) 제도²³⁶⁾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 TV,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의 32%를 공제하는 영상제작 세제 혜택(Film Tax Credit)과 관련하여,²³⁷⁾ 특정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제작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5%의 추가 공제 혜택을 2021년까지 1년 연장하고 2022년 3%, 2023년 2%로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함
- ▶ 에너지 효율 장비 취득비용에 적용되는 법인세 100% 공제 혜택(Accelerated Capital Allowances)²³⁸⁾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거래 제한 정책으로 무역활동에 영향을 받은 사업체에 제공되는 코로나19 제한 지원제도(CRSS)를 발표함²³⁹⁾
 - 공제 가능한 기업의 거래비용을 선불 공제하는 형태로 최대 5천유로²⁴⁰⁾까지 지급하는 제도임

㉓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인상 및 연장하고 일부 조건을 변경함²⁴¹⁾

-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Credit) 환급 한도를 1,500유로²⁴²⁾에서 1,650유로²⁴³⁾로,

Income Tax Rate and Extends the Knowledge Development Box by 2 Years,” October 1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9_ie_2(accessed Oct 26, 2020)

23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아일랜드 의회, 지식개발박스 제도에 따른 발명인증 관련 법률 제정」,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686, 검색일자: 2020. 10. 27.

237) 아일랜드 국세청, “Section 481 Film Corporation Tax Credit,”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15/15-02-04.pdf>, 검색일자: 2020. 10. 27.

238)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 「아일랜드 경제소식 - 아일랜드 전기자동차 정책 및 시장」,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99/view.do?seq=121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자: 2020. 10. 28.

239) News IBFD, “Ireland - Indirect Taxes and Other Measures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to Temporarily Reduce the VAT Rate for Hospitality and Tourism Sectors and Extend Certain Stamp Duty Reliefs,” October 1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9_ie_3(accessed Oct 26, 2020)

240)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6만 8천원임

241) News IBFD, “Ireland - Direct Tax Measures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Confirms 12.5%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Extends the Knowledge Development Box by 2 Years,” October 1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9_ie_2(accessed Oct 26, 2020)

242)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0만원임

243)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0만원임

부양자 세액공제액을 70유로²⁴⁴⁾에서 245유로²⁴⁵⁾로 인상함

- ▶ 해상군세금공제(Sea-going Naval Personnel Tax Credit)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0년 1,270유로²⁴⁶⁾였던 공제액을 2021년에는 1,500유로²⁴⁷⁾로 인상함
- ▶ 첫 부동산 취득 시 이전 4년간 납부한 소득세 및 예금이자보유세(DIRT)를 환급하는 Help to Buy 세제 혜택²⁴⁸⁾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했던 공제 수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 부동산 금액의 5% 혹은 2만유로²⁴⁹⁾였던 공제 수준을 2020년 7월 부동산 금액의 10% 혹은 3만유로²⁵⁰⁾로 확대함²⁵¹⁾
- ▶ 소득 및 건강세(Universal Social Charge)의 과세표준 구간 중 2차 구간의 임계값을 2만 484유로²⁵²⁾에서 2만 687유로²⁵³⁾로 인상하며, 의료카드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감면세율을 2021년까지 유지함
- ▶ 적절한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개인에게 10%의 자본소득세 세율 인하를 적용하던 기업가 세제 혜택(Entrepreneur Relief)²⁵⁴⁾의 자격 보유기간 기준이 처분 직전 5년의 기간 중 3년에서, 3년 연속 기간으로 개정됨

▣ 특정 업종에 감면세율을 도입하는 등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확대함²⁵⁵⁾

244)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만 3천원임

245)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 7천원임

246)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9만 4천원임

247)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0만원임

248) 아일랜드 국세청, "Help to Buy(HTB) incentive," <https://www.revenue.ie/en/property/help-to-buy-incentive/index.aspx>, 검색일자: 2020. 10. 27.

249)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67만원임

250)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천만원임

251) Reuter, "Ireland plans to extend expanded help-to-buy home scheme beyond 2020," Jul 25, 2020, <https://uk.reuters.com/article/ireland-economy-housing/ireland-plans-to-extend-expanded-help-to-buy-home-scheme-beyond-2020-idUSL5N2EV634>, 검색일자: 2020. 10. 28.

252)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67만원임

253)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59만원임

254) 아일랜드 국세청, "Revised Entrepreneur Relief," <https://www.revenue.ie/en/gains-gifts-and-inheritance/cgt-reliefs/revised-entrepreneur-relief.aspx>, 검색일자: 2020. 10. 27.

255) News IBFD, "Ireland - Indirect Taxes and Other Measures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to Temporarily Reduce the VAT Rate for Hospitality and Tourism Sectors and Extend Certain Stamp Duty Reliefs," 19 Octo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9_ie_3(accessed Oct 26, 2020)

- ▶接客업 및 관광 부문의 특정 활동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9%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일시적으로 도입함
 - ▶ 부가가치세 미등록 농업 종사자의 환급 불가능한 영농비 부가가치세를 보상하는 정률 보상비의 적용 비율을 5.4%에서 5.6%로 인상함
- ▣ 일부 인지세에 대해 적용 조건 변경 및 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짐²⁵⁶⁾
- ▶ ‘농지구조조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의 거래(Farm Consolidation Relief)²⁵⁷⁾ 및 친인척 간 양도(Consanguinity Relief)²⁵⁸⁾에 적용되던 1%의 감면 인지세율(일반 6%)의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각각 2022년 12월 31일과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 주택개발인지세 환급제도 대상 기준이 되는 건설 작업 착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 환급 자격 취득 기준이 되는 작업기간도 24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함
- ▣ 탄소세율을 인상하는 등 환경 관련 세제를 강화함²⁵⁹⁾
- ▶ 탄소세를 CO2 1톤당 26유로²⁶⁰⁾에서 33.50유로²⁶¹⁾로 인상함
 - 2020년 10월 13일부터 자동차 연료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모든 연료에 적용함
 - ▶ 2021년 1월부터 기존의 차량 등록세(Vehicle Registration Tax) 및 자동차세 제도를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배출 시스템으로 대체함

256) 상동

257) 아일랜드 농업부, “Farm Restructuring Guidelines,” <https://www.agriculture.gov.ie/media/migration/foodindustrydevelopmenttrademarkets/agri-foodandtheeconomy/CapitalGainsTaxStampDutyReliefGuidelines270718.pdf>, 검색일자: 2020. 10. 27.

258) 아일랜드 국세청, “Part 7: section 81AA-Transfers of land to young trained farmers,”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stamp-duty/stamp-duty-manual-replacement/part-07-exemptions-and-reliefs-from-stamp-duty/section-81aa-transfers-of-land-to-young-trained-farmers.pdf>, 검색일자: 2020. 10. 27.

259) News IBFD, “Ireland - Indirect Taxes and Other Measures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to Temporarily Reduce the VAT Rate for Hospitality and Tourism Sectors and Extend Certain Stamp Duty Reliefs,” October 1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9_ie_3\(accessed Oct 26, 2020\)](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9_ie_3(accessed Oct 26, 2020))

260)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5천원임

261)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5천원임

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자 관련 과세안 확정

[조세동향 20-11호]

-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0년 10월 22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과세안을 확정함²⁶²⁾

 - ▶ 원격근무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 목적으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하루 최대 3.2유로²⁶³⁾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업무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사무기기를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현물 혜택에 따른 과세 대상 명목 급여(benefit-in-kind)에 포함되지 않음
 - 비용이 제공되는 출장이 발생한 일자에 원격근무자가 지급받은 원격근무 비용은 과세 대상임
 - ▶ 상기한 원격근무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원격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원격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난방 및 전기 요금의 10%와 인터넷 요금의 30%에 대해 소득공제함
 - ▶ 자택을 원격근무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주거용 부동산 공제는 유지되며, 지방재산세 감액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

12 영국

가.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율 일시적 인하

[조세동향 20-07호]

- ▣ HMRC는 2020년 7월 8일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할 것을 발표함²⁶⁴⁾

262)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193/20,"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0/no-1932020.aspx>, 검색일자: 2020. 11. 17.

26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20원임

264) News IBFD, "United Kingdom-COVID-19 Pandemic: Reduction of SDLT Rates for Residential Properties

- ▶ 대상 부동산은 2020년 7월 8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거래된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 지방 소재 주거용 부동산임²⁶⁵⁾
- ▶ 본 조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2021년 4월 1일부터 다시 2020년 7월 8일 이전의 인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 인하된 인지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11-3〉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 확장표

(단위: GBP, %)

생애최초 주택 마련		2주택 이상 보유		신규 장기임대(leasehold)	
양도가액 / 리스프리미엄	세율	양도가액 / 리스프리미엄	세율	순현재가치	세율
~ 500,000 ¹⁾	0	~ 500,000	3	500,000 이하	0
500,001 ~ 925,000 ²⁾	5	500,001 ~ 925,000	8	500,000 초과	1
925,001 ~ 1,500,000 ³⁾	10	925,001 ~ 1,500,000	13		
1,500,000 ~	12	1,500,000 ~	15		

주: 1)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7,149만원임
 2)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2,726만원임
 3)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억 1,448만원임

자료: News IBFD, "United Kingdom-COVID-19 Pandemic: Reduction of SDLT Rates for Residential Properties Purchased Between 8 July 2020 and 31 March 2021 Inclusive," Jul 13,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13_uk_3(accessed Jul 29, 2020)

- ▣ 웨일즈는 본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토지거래세(Land Transaction Tax) 부과기준 최소 거래액을 인상함²⁶⁶⁾
- ▶ 웨일즈의 경우 인지세에 대응하는 세목으로 토지거래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 웨일즈 지방정부는 2020년 7월 27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거래된 주거용 부동

Purchased Between 8 July 2020 and 31 March 2021 Inclusive," Jul 13,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13_uk_3(accessed July 29, 2020); HMRC, "Stamp Duty Land Tax: temporary reduced rates," <https://www.gov.uk/guidance/stamp-duty-land-tax-temporary-reduced-rates>(accessed Jul 29, 2020)

265) HMRC, "Temporary increase to Stamp Duty Land Tax nil rate band for residential properties," Jul 10,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emporary-increase-to-stamp-duty-land-tax-nil-rate-band-for-residential-properties/temporary-increase-to-stamp-duty-land-tax-nil-rate-band-for-residential-properties> (accessed Jul 29, 2020)

266) Welsh Government, <https://gov.wales/written-statement-temporary-changes-land-transaction-tax-rates-and-thresholds> (accessed Jul 29, 2020)

산을 대상으로, 토지거래세가 부과되는 최소 거래액을 기존 18만파운드²⁶⁷⁾에서 25만 파운드²⁶⁸⁾로 인상함

나. 2020 「Finance Act」 제정

[조세동향 20-08호]

▣ 영국 의회는 2020년 7월 22일 2020년도 「재정법(Finance Act)」을 제정함²⁶⁹⁾, 270)

▶ 법인세율은 인하 없이 기존 19%의 세율을 유지함²⁷¹⁾

- 영국은 2015년 예산안 발표에서 2020년 4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8%로, 2016년 예산안 발표에서는 2020년 4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7%로 인하할 것이라 발표하였음²⁷²⁾
-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11일 인화된 17% 세율이 아닌 기존 19%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19%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함²⁷³⁾
- 본 「재정법」에는 상기 2020년 3월의 논의가 법률로 반영된 것임

▣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파견 근로자의 세법상 지위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Loan Charge 과세방안을 개정함²⁷⁴⁾

▶ 파견 근로자의 세법상 지위를 변경함

267)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776만원임

268)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8,579만원임

269) News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Enacts Finance Act 2020," Aug 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06_uk_1(accessed Sep 1, 2020)

270) 영국 의회, "Finance Act 202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0/14/contents/enacted>, 검색일자: 2020. 9. 1.

271) News IBFD, "United Kingdom - Finance Act 2020: United Kingdom Introduces a New Digital Services Tax and Maintains the Corporation Tax Rate at 19% for 2020-2021," Aug 2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1_uk_1(accessed Sep 1, 2020)

272) HMRC, "Corporation Tax to 17% in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to-17-in-2020>, 검색일자: 2020. 9. 4.

273) HMRC, "Changes to Corporation Tax rates from 1 April 20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nges-to-corporation-tax-rates-from-1-april-2020>, 검색일자: 2020. 9. 4.

274) News IBFD, "United Kingdom-United Kingdom Introduces Income Tax Changes as Part of Finance Act 2020," Aug 1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14_uk_1(accessed Sep 1, 2020)

- 모든 공공부문과 대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민간부문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관련 지위를 정할 의무가 있음
- 상기 의무 이행의 결과로서 공공부문 또는 대규모·중간 규모 민간부문에 용역을 공급하는 파견직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용 지위를 확정받게 됨
- 이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결정한 고용 지위를 거부할 권리도 함께 부여됨
- ▶ Disguised remuneration²⁷⁵⁾ 형식의 위장 거래 관련 과세 방침(Loan Charge)²⁷⁶⁾을 개정함
 - 2010년 1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거래에는 Loan Charge를 적용하지 않음
 - 2016년 4월 6일 이전에 이루어진 고액 대출거래가 HMRC에 신고되었고, HMRC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Loan Charge를 적용하지 않음
 - HMRC는 상기 개정으로 인하여 Loan Charge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대출거래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납부액을 환급할 예정임

📌 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함^{277), 278)}

- ▶ 2020년 4월 1일부터 영국 유저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의 2%를 과세함
- ▶ 디지털서비스 관련 활동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검색엔진, 온라인 마켓 플랫폼 등이 있음
- ▶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룹 내 총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5억파운드²⁷⁹⁾ 이상 이고, 동시에 영국 관련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500만파운드²⁸⁰⁾ 이상인 다국적기업임

275) Disguised remuneration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세회피전략임. 일반적으로는 제3자(주로 신탁)로부터의 대출이나 금전차입 등의 거래를 중간에 개입시키고, 채권자가 그 대출금 또는 차입금을 다시 회수하지 않는 일종의 영구 대여의 형태로 이루어짐. 주로 근로자나 개인 간 소득 지급 시 월급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됨. HMRC, "Disguised remuneration tax avoidance schemes,"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tax-avoidance-disguised-remuneration>, 검색일자: 2020. 9. 1.

276) Loan Charge는 상기 Disguised remuneration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과세방침으로서 ①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기간 이상 상기 조세회피전략으로 추정되는 대출계약이 존속하고 ② 총 상환금이 잔여대출금 미만인 경우 이를 'outstanding' 거래로 분류하여, 잔여 대출금만큼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부과함. HMRC, "The loan charge," <https://www.gov.uk/guidance/report-and-account-for-your-disguised-remuneration-loan-charge#the-loan-charge>, 검색일자: 2020. 9. 4.

277) News IBFD, "United Kingdom-Finance Act 2020: United Kingdom Introduces a New Digital Services Tax and Maintains the Corporation Tax Rate at 19% for 2020-2021," Aug 2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1_uk_1(accessed Sep 1, 2020)

278) HMRC, "Digital Services Ta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the-digital-services-tax/digital-services-tax>, 검색일자: 2020. 9. 1.

279)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36억원임

- 영국 관련 디지털 서비스 매출 계산 시 최초 2,500만파운드는 계산에서 제외함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하 'GAAR')의 절차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²⁸¹⁾

- ▶ 본 개정은 고의로 HMRC의 GAAR 관련 정보제공 요청 또는 질의를 회피하는 일부 납세자들에 대응하기 위함임
- ▶ HMRC가 통상적인 조사기간(12개월)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마련함
- ▶ 납세자들은 GAAR 적용에 따른 조정 내용에 불복할 수 있고 독립된 자문위원회(advisory panel)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시설퇴소아동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의 소득세 면제 도입

[조세동향 20-09호]

▣ 영국 정부는 2020년 9월 4일 시설퇴소아동(Care-leaver)²⁸²⁾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도입함²⁸³⁾

- ▶ 관련 법안은 「소득세법」 제254A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 면제 대상 장학금을 수령하는 시설퇴소아동은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장학금에 대한 소득 신고의무가 없음

▣ 「소득세법」 제254A조 따른 면제 대상 장학금은 다음과 같음²⁸⁴⁾

- ▶ 법령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고 장학금을 수여한 자가 25세 미만일 것
- ▶ 「아동법(Children Act 1989)」에 따라 시설퇴소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일 것

280)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6억원임

281) News IBFD, "United Kingdom-Finance Act 2020: United Kingdom Introduces Changes to HMRC's Priority on Insolvency,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Directors, Taxation of Coronavirus Support Payments and GAAR," Aug 2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6_uk_2(accessed Sep 1, 2020)

282) 시설퇴소아동이란 시설을 퇴소한 만 18세 이상 아동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13주 이상 또는 만 16세까지의 기간 동안 돌봄을 받은 아동을 의미하며, 「시설퇴소아동법(Children(Leaving Care) Act 2000)」에 의해 정부는 퇴소한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과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야 함

283) 영국 정부, "Expenses and benefits for apprenticeship bursaries for care leavers," <https://www.gov.uk/guidance/expenses-and-benefits-for-apprenticeship-bursaries-for-care-leavers>, 검색일자: 2020. 9. 23.

284) 영국 법령정보센터, "The Income Tax(Care Leaver's Apprenticeship Bursary Payment) Regulations 2020," <https://www.legislation.gov.uk/ukxi/2020/922/regulation/4/made>, 검색일자: 2020. 9. 23.

- ▶ 장학금의 지급이 2020년 9월 29일 이후에 이루어질 것
- ▶ 장학금 지급금액이 1회당 1천파운드²⁸⁵⁾를 넘지 않을 것
-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교육을 시작한 시설퇴소아동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을 것
- ▶ 교육기술지원금단체(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에서 지급된 장학금일 것

라. 영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해외 제품의 VAT 정책 개정

[조세동향 20-10호]

- ▼ 영국 국세청은 2020년 10월 5일 영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해외 제품의 VAT 정책을 개정함²⁸⁶⁾

 - ▶ 해당 정책은 2021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되며, 영국 외부에 설립한 판매자의 직접 판매 또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거래에 적용됨
- ▼ 온라인마켓 또는 국외 판매자가 B2C 판매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VAT 정책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²⁸⁷⁾

 - ▶ 135파운드²⁸⁸⁾를 넘지 않는 해외 탁송거래에 대하여 수입시점에 과세하는 수입 VAT가 아닌 판매시점에 매출 VAT를 과세함
 - ▶ 더불어 15파운드²⁸⁹⁾ 이하의 저가물품에 대한 수입물품 VAT 면제 규정(Low Value Consignment Relief)을 폐지함
- ▼ 온라인마켓 또는 국외 판매자가 B2B 판매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VAT 정책은 다음과 같음

285) 2020. 9. 23.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9만원임

286) News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Updates Policy on VAT Treatment of Overseas Goods Sold to UK Customers," Oct 7,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07_uk_1 (accessed Oct 21, 2020)

287) 영국 국세청, "Changes to VAT treatment of overseas goods sold to customers from 1 January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nges-to-vat-treatment-of-overseas-goods-sold-to-customers-from-1-january-2021/changes-to-vat-treatment-of-overseas-goods-sold-to-customers-from-1-january-2021#goods-located-outside-the-uk-at-the-point-of-sale>, 검색일자: 2020. 10. 21.

288) 2020. 10. 28. 원화 환산 시 약 20만원임

289) 2020. 10. 28. 원화 환산 시 약 2만 2천원임

- ▶ 온라인마켓 또는 국외 판매자가 영국 내 VAT 등록 사업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VAT 등록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통지서를 제공해야 함
- ▶ 구매자는 대리납부를 통해 VAT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VAT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마. 플라스틱포장세 도입

[조세동향 20-12호]

- ▣ 영국 정부는 2020년 11월 12일 영국에서 생산하거나 국외에서 수입한 플라스틱포장재에 과세하는 플라스틱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PPT)를 도입함²⁹⁰⁾
 - ▶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포장세를 도입하는 정책 보고서와 기술적인 부분의 논의를 위한 플라스틱포장세 법안 초안을 발간하였으며, 법안은 2022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임
 - 단일의 플라스틱포장재에 대하여 1톤당 200파운드²⁹¹⁾의 세율로 과세됨
 - 12개월 동안 10톤 미만의 플라스틱포장재를 생산 및 수입한 기업은 면세됨
 - ▶ 다음과 같은 경우 플라스틱포장재는 과세되지 않음
 - 재활용 플라스틱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다양한 소재로 구성되어 제품의 무게에서 플라스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 허가받은 약품의 포장재로 즉시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수입한 경우
 - 영국으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운송 포장재로 사용된 경우
 - 영국 국외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운송 포장재로 사용되지 않고 플라스틱포장재 자체가 수출되는 경우

바. 혼성불일치 제도 수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0-12호]

- ▣ 영국 정부는 2020년 11월 12일 혼성불일치제도를 일부 수정한 법안 초안과 공청회

290) HMRC, "Introduction of a new plastic packaging ta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a-new-plastic-packaging-tax/introduction-of-a-new-plastic-packaging-tax>(accessed Dec 17, 2020); EY, "UK Government issues details of new Plastics Packaging Tax effective 1 April 2022," November 16, 20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uk-government-issues-details-of-new-plastics-packaging-tax-effective-1-april-2022, 검색일자: 2020. 12. 17.

291) 2020. 12.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9만원임

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함²⁹²⁾

- ▶ 영국 과세관청은 기존의 혼성불일치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불공평한 결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조항을 소급 적용하고, 일부 수정조항은 2021년도 예산안(Finance Act 2021)의 발효일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 ▶ 기존의 영국 혼성불일치 법안은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음

▣ 이중공제(double deduction)와 관련하여 ‘산입/공제불가소득(inclusion/no deduction incom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특정 제3자의 부채와 관련하여 ‘함께 행동 규칙(acting together rule)’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이러한 규정들을 2017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함

- ▶ 이중공제와 관련하여 ‘산입/공제불가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중과세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제2591D조의 소득경감 혜택을 폐지함
 - 실무상 일부 미국 그룹은 영국 기업을 미국 기업의 불인정 자회사로 신고함에 따라 영국 기업의 비용은 미국에서 공제되는 액수만큼 이중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이중공제액은 이중산입소득 또는 제2591D조 소득(특수관계자 이외의 제3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의해서만 공제 가능하였음
-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지분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 ‘함께 행동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지분 비율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함께 행동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 제3자의 부채를 특수 관계인의 부채 또는 지배 그룹 내의 부채로 봄
 - 기존에는 제3자인 채권자가 지분권자와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권자의 모든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혼성불일치제도가 적용되어 채권자의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음

▣ 이중공제와 관련하여 이중산입소득(dual inclusion income)의 그룹 내 배분을 도입하고 면세 투자자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예산안 발효 시부터 적용될 예정임

292) HMRC, “Amendments to the hybrid and other mismatches regime for Corporation Tax,”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mendments-to-the-hybrid-and-other-mismatches-regime-for-corporation-tax/amendments-to-the-hybrid-and-other-mismatches-regime-for-corporation-tax>, 검색일자: 2020. 12. 17.; EY, “UK proposes to amend hybrid and other mismatches regime - implications for US multinationals,” November 17, 20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uk-proposes-to-amend-hybrid-and-other-mismatches-regime-implications-for-us-multinationals, 검색일자: 2020. 12. 17.

- ▶ 기존의 혼성불일치제도는 이중산입소득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이중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를 수정하여 영국 그룹 내의 기업이 관련 신청을 한 경우 그룹 내에서 이중산입소득과 이중공제 액수가 일치하는 한도까지만 그에 따른 대응 규정이 적용됨
- ▶ 혼성체의 투자자가 특정 유형의 면세단체(연금기금, 국부펀드, 자선단체 등)인 경우에 면세단체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공제/불산입(deduction non-inclusion)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을 혼성체로 간주하지 않음
 - 개정사항이 적용되는 면세단체의 세부 목록이 있음
 - 개정사항은 EU 조세회피방지침(ATAD 2)과 BEPS Action 2 보고서에 따른 것임

13 오스트리아

가. 강제적 보고규정 관련 실행지침 초안 발간

[조세동향 20-07호]

-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2020년 7월 7일 강제적 보고규정과 역외조세약정 교환에 대한 EU지침(DAC6)의 국내법 실행지침 초안을 발간함^{293), 294)}
 - ▶ 실행지침 초안은 국내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위하여 선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
 - 등록 당시의 일반적인 정보, 적용 영역 및 범위, 용어의 정의, 일반 보고 및 조건부 보고, 보고기한, 보고의무의 면제, 보고정보를 그 내용으로 함
 - 적용영역과 관련하여 판매세(sales tax), 관세, 소비세, 사회보장분담금, 증명서, 서류 작성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에는 보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293) 오스트리아 재무부, "Informationsschreiben zur Anwendung des EU-Meldepflichtgesetzes(EU-MPFG)," <https://www.bmf.gv.at/rechtsnews/steuern-rechtsnews/in-begutachtung.html>, 검색일자: 2020. 7. 28.

294) News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Guidance for Stakeholder Consultation on Application of DAC6 Implementation Law," Jul 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7-09_at_1.html(accessed Jul 14, 2020)

- ▶ 실행지침 초안은 EU 이사회가 2020년 6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고 및 정보교환의 실행기한 연장을 권고한 것과 달리 기한연장을 선택하지 않음
 - 다만 EU의 기술적인 문제로 DAC6 중앙 등록 시스템 설치가 지연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10월 31일까지 첫 번째 보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나. 코로나19 관련 추가 조세정책 승인

[조세동향 20-07호]

-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0년 6월 30일 코로나19 경제활성화정책패키지를 승인하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결손금소급공제를 도입함^{295), 296)}
 - ▶ 2020년 6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경제활성화정책패키지를 승인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소득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100만유로²⁹⁷⁾ 이상)에 적용되는 55%의 최고세율의 적용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
 - 기존의 55% 최고세율 적용기간은 5년으로, 2020년까지였음
 -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2020년 발생한 결손금을 2018년 및 2019년 이익에 소급하여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²⁹⁸⁾
 - 상기 결손금 소급공제는 500만유로²⁹⁹⁾를 한도로 함
 - 기존에는 법인에 대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만 허용하였음

295) 오스트리아 재무부, "Ministerrat bringt Konjunkturstärkungsgesetz auf den Weg,"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0/juni/ministerrat-konjunkturstarck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0. 7. 29.

296) News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Approves Economic Stimulus Package," Jul 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7-02_at_1.html(accessed Jul 14, 2020)

297) 2020. 7. 2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9,917만원임

298) KPMG, "Austria: Proposed tax measures intended to facilitate investments(COVID-19)," June 25, 2020,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6/tnf-austria-proposed-tax-measures-intended-to-facilitate-investments-covid-19.html>(accessed Aug 4, 2020)

299)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0억 1,065만원임

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초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12호]

- ▣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의 납세자 지원을 위한 법안 초안이 2020년 11월 20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⁰⁰⁾

 - ▶ 요식업, 문화 및 출판 부문에 5% 할인된 VAT 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에 대한 VAT를 면제함
 - ▶ 2021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신발, 가죽제품 및 의류 관련 수리 서비스에 10% 할인된 VAT 세율을 적용함
 - ▶ 이미 승인된 세금 유예 및 연체 벌금의 면제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 ▶ 코로나19로 인한 통근비용에 대한 공제 조치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 ▶ 코로나19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됨

- ▣ 또한 해당 법안에는 EU의 조세회피 방지 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 2016/1164 제4조의 시행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구체적으로, 300만유로³⁰¹⁾를 초과하는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EBITDA³⁰²⁾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며,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기존에는 EBITDA와 관련하여 이자비용의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³⁰³⁾

300) IBFD, Austrian Parliament Considers Draft Bill on COVID-19 Tax Measures, Nov 2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25_at_1.html(accessed Dec 28, 2020)

301) 2021년 1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억 7,751만원임

302)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순이익을 의미함

303) EY, "Austria to enact new interest limitation rule in accordance with EU ATAD as of 2021," https://www.ey.com/en_gl/tax-alerts/austria-to-enact-new-interest-limitation-rule-in-accordance-with-eu-atad-as-of-2021#:~:text=According%20to%20the%20interest%20limitation,including%20those%20with%20non%2Daffiliates, 검색일자: 2020. 12. 28.

14 이탈리아

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령 개정

[조세동향 20-08호]

- ▶ 이탈리아는 2020년 8월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조치 법령을 개정함^{304), 305)}
 - ▶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분까지 상업용지 임대료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함
 - ▶ 2020년 3~5월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유예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유예분을 다시 납부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세액의 50%는 2020년 9월 16일부터 4개월 동안 분납이 가능하고, 나머지 50%는 2021년 1월 16일부터 24개월간 분납이 가능함
 - 일부 코로나19 타격이 심한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2020년 10~12월분 사회보장분담금을 30% 감면함
 - ▶ 적격 기업에 대하여 사업장 개조비용 또는 코로나19 관련 호텔 등 숙박업체 이용비용의 65%에 대응하는 비용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함
 - ▶ 적격 기업은 10%의 대체세³⁰⁶⁾를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제외한 특정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상향하여 계상할 수 있음
 - ▶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33% 이상 감소한 기업은 2020년도 소득세 및 지방세(IRAP) 선납 기한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특정 사회보장기

304)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Further Emergency Measures," Aug 10, 2020,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0-08-10_it_1.html(accessed Sep 1, 2020)

305) News IBFD, "Italy - Italy -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Law Decree Introducing Further Emergency Measures," Aug 1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18_it_1(accessed Sep 1, 2020)

306) 대체세는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하여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별도의 세목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목에서 일정한 정책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음(<https://www.soldioggi.it/imposta-sostitutiva-14431.html>, 검색일자: 2020. 9. 4.)

여금을 최장 6개월, 연 8,060유로³⁰⁷⁾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음

- ▶ 이탈리아 국세청은 상기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³⁰⁸⁾

나.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승인

[조세동향 20-10호]

- ▣ 이탈리아 의회는 2020년 10월 18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담긴 2021년도 예산안을 승인함³⁰⁹⁾
 - ▶ 세법상 주요 개정사항은 남부 이탈리아 투자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Credit) 개정사항 등이 포함됨
 - ▶ 추가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 보고될 예정임

-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함
 - ▶ 2020년도 예산안에 따라 R&D 세액공제율을 12%에서 소기업은 45%, 중견기업은 35%, 대기업은 25%로 확대하는 규정을 2021년도까지 연장하여 적용함³¹⁰⁾
 - 남부 이탈리아 지역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R&D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함

- ▣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함³¹¹⁾
 - ▶ 2020년 7월 1일부터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어 연간 근로소득이 2만 8천유로³¹²⁾를 넘는 개인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307)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43만원임

308)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Tax Authorities Provide Further Clarifications on Measures to Relaunch Economy," Aug 2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21_it_1(accessed Sep 1, 2020)

309) News IBFD, "Italy -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Further Measures to Relaunch Economy In Draft Budget Law For 2021," Oct 1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19_it_1.html (accessed Oct 21, 2020)

310) News IBFD, "Italy-COVID-19 Pandemic: Law Decree to Relaunch the Economy-Direct Tax Measures," June 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6-02_it_2(accessed Oct 28, 2020)

311) News IBFD, "Italy-Earned income credits-amendments enacted," Apr 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4-06_it_1(accessed Oct 28, 2020)

312) 2020. 10. 28. 원화 환산 시 약 3,733만원임

- 연간 근로소득이 4만유로³¹³⁾ 이하인 근로자는 다음 공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표 II-4〉 연간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단위: 유로)

연간 소득	세액공제금액
28,000 이하	1,200(2021년도 기준)
28,000 초과 35,000 이하	$480 + 120 \times (35,000 - \text{연간소득}) / 7,000$
35,000 초과 40,000 이하	$480 \times (40,000 - \text{연간소득}) / 5,000$

자료: New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4-06_it_1(Apr 6, 2020), 검색일자: 2020. 10. 28.

- ▶ 35세 이하의 적격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3년간 사회보장부담금이 면제됨

다.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발표

[조세동향 20-11호]

- ▣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10월 20일 법령(129/2020)을 관보에 게재하여 조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지함³¹⁴⁾
 - ▶ 8월 시행령(August Decree, 104/2020)에 따르면 모든 조세의 납부기한 및 조세부과 처분 시 발생한 가산세 등의 납부기한이 2020년 3월 8일에서 2020년 10월 15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였으나,³¹⁵⁾ 납부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조세의 기한도 연장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
 - ▶ 과세관청의 납부통지 등 기타 처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지하고, 통지기한을 12개월 연장함

313) 2020. 10. 28. 원화 환산 시 약 5,333만원임

314) IBFD,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Law Decree Suspending Certain Tax Payments and Collection Activities Until 31 December 2020," October 2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22_it_1.html(accessed Nov 17, 2020)

315) 이탈리아 재무부, "Decreto Agosto-DL n. 104/2020," <https://www.agenziaentrateriscossione.gov.it/it/Per-saperne-di-piu/covid-19/il-decreto-agosto-dl-104-2020/>(accessed Nov 24, 2020)

- 기존 통지기한이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 통지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법령(137/2020)을 관보에 게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세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³¹⁶⁾

▶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입된 제재 조치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축소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림

- 2020년 10~12월 상업용 자산을 임대한 경우 월 임대료의 60%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2020년 11월이 납부기한인 사회보장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2021년 3월 16일에 전액 납부하거나 2021년 3월 16일부터 시작하여 4회로 나누어 월별 분할납부할 수 있음
-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imposta municipale propria)의 두 번째 중간 예납 의무를 면제함

▶ 2019년도 원천징수세의 신고기한을 2020년 10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10일로 연장함

▣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11월 7일 제2차 락다운(lock down) 조치에 따라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고,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함³¹⁷⁾

▶ 적색 및 주황색 지역에서 영업을 폐쇄한 기업에 대하여 2020년 11월과 12월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고, 황색지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1월의 사회보장세를 면제함

- 2020년 11월 3일 제2차 락다운 조치는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따라 적색, 주황색, 황색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조치하며, 2020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시행함³¹⁸⁾

316) IBFD,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Law Decree Introducing New Urgent Measures," October 2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0-29_it_2#tns_2020-10-29_it_2(accessed Nov 20, 2020)

317) 이탈리아 정부, "Coronavirus, le misure adottate dal Governo," <http://www.governo.it/it/coronavirus-misure-del-governo>(accessed Nov 25, 2020); Bloomberg Law, "Italy Approves More Tax Relief for Virus-Hit Businesses," Nov 8, 2020,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italy-approves-more-tax-relief-for-virus-hit-businesses>(accessed Nov 17, 2020)

318) 적색 지역(코로나19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비본질적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하고, 주황색 지역은 음식점 및 술집을 폐쇄하고, 황색 지역은 음식점 및 술집을 저녁 6시 이후에 운영할 수 없음

- ▶ 일반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1년 4월 30일로 연장함

15 포르투갈

가. 부가가치세 신속시정조치 도입

[조세동향 20-09회]

- ▼ 포르투갈 의회는 2020년 8월 24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49/2020을 승인함³¹⁹⁾
 - ▶ 본 법률을 통해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업계 및 회원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한 지침 2018/1910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신속시정조치(quick fixes)를 도입함
- ▼ 본 법률에 반영된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신속시정조치(quick fixes)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³²⁰⁾
 - ▶ EU 내 타 국가에 판매 물품을 보관하고 해당 국가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콜오프 재고(call-off stock)에 대해서는 물품이 도착한 때가 아닌 판매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 중간거래자가 존재하나 판매 물품은 공급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연쇄거래(chain transaction)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단순화함
 - ▶ EU 역내 물품배송 여부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단일 규정을 마련함
 -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EU 부가가치세 정보교환 시스템(VIES)에 등록된 거래 대상의 사업자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함
- ▼ 법률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함

319) News IBFD, "Portugal-Portugal Implements VAT Quick Fixes Provisions," August 2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6_pt_2(accessed Sep 14, 2020)

320) Council Directive(EU) 2018/1910(December 4, 2018) (5), (6), (7), (8)

나. 2021년 예산 법안 초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10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0년 10월 12일, 2021년도 예산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³²¹⁾
- ▶ 본 법안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 기준 확장, 세금 감면과 관련한 제도 변경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³²²⁾

 - ▶ 고정사업장 기준을 회계연도가 시작 및 종료되는 12개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행된 서비스 활동뿐만 아니라 사용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자원 탐사 및 채취에 이용되는 설비·플랫폼·선박까지 확대함
 - ▶ 초소형 및 중소기업의 자격을 갖춘 법인의 경우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전문 컨설팅 서비스 이용, 국제화 촉진과 관련하여 2021~2022년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110%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 ▶ R&D 투자 관련 세금공제제도(SIFIDE II)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 자본 또는 주식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 펀드에 투자한 금액
 - 투자는 법령 195/2018에 따라 기술부문 중사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이루어져야 함
 -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내륙지역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20%를 공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 내에 관련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함
 - ▶ 법령 150/2004에서 제공하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지역에 법적 소재지가 위치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유효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법인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특별조세제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함
 -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로 발행된 국채 이자에 대하여는 포르투갈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기업의 법인세 면제를 연장함^{323), 324)}

321) *Bloomberg Tax*, "Portugal Parliament Considers Bill on 2021 State Budget," October 12, 2020,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portugal-parliament-considers-bill-on-2021-state-budget>, 검색 일자: 2020. 10. 19.

322) News IBFD, "Portugal-Corporate Tax Measures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Updates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October 1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5_pt_2\(accessed Oct 19, 2020\)](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5_pt_2(accessed Oct 19, 2020))

323) Proposta de Lei n.º 61/XIV Artigo 260.º (1)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면세 내용이 규정됨³²⁵⁾

- ▶ 부동산을 과세 대상자의 개인 용도에서 사업 및 전문 용역 목적으로 이전한 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개인 용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에만 과세됨
 - 재이전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 및 전문용역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함
 - 포르투갈의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는 과세 근거로 ‘조직화된 회계(organized accounting)’와 ‘단순 회계(simplified accounting)’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³²⁶⁾ 재이전 시 재이전을 실행한 연도와 이후 3년간은 ‘조직화된 회계’에 근거할 경우 부동산이 사업 및 전문 용역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세금공제 비용을, ‘단순 회계’에 근거할 경우 용도 이전일자 재산세 가치의 1.5%를 과세 대상자의 소득에 가산함
- ▶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
 - 체육 교육 또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클럽 및 피트니스 활동 등과 관련한 비용의 15%에 대해 가구당 최대 250유로³²⁷⁾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함
 - VAT-Voucher 혜택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일반 기부의 경우 현금 혹은 현물로 기부한 금액의 3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World Youth Day Foundation에 기부할 경우 140%의 공제율이 적용됨
 - 과세연도 내에 5만유로³²⁸⁾ 이상의 기부내역이 있으나 기부금 공제액이 과세 대상자의 적용 가능한 최대 공제 한도(과세 대상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각 과세연도 납부 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함
- ▶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로 발행된 국채의 이자에 대한 비거주자의 개인소득세 면세를 연장함

324) *O Journal Economico*, “OE2019: Interest on panda bonds will be exempt from paying IRS,” <https://jornaleconomico.sapo.pt/en/news/oe2019-panda-bond-interest-will-be-exempt-from-paying-irs-366336>, 검색일자: 2020. 11. 3.

325) News IBFD, “Portugal-Personal Income Tax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No Longer Taxes Business-Related Immovable Property When Allocated to Individuals,” October 1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5_pt_3(accessed Oct 19, 2020)

326) Lisbob, “How to choose between simplified and organized accounting as freelancer in Portugal,” <https://www.lisbob.net/en/blog/how-to-choose-between-simplified-organized-accounting-freelancer-portugal>, 검색일자: 2020. 10. 27.

327)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만 3,400원임

328)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68만원임

- ▾ 세금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조치들이 포함됨³²⁹⁾
 - ▶ 코로나19 예방 및 퇴치에 사용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세율 및 세금 면제 혜택을 확대함
 - 호흡기, 보호용 마스크, 피부소독용 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였던 6%의 감면세율을 상시 적용함
 - 지정된 기관에 공급되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장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 기관을 과학기관 및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함
 -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식당, 숙박, 문화 분야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3개월간 지불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다음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VAT 바우처 서비스를 실시함
 - ▶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자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신규 규정 도입일이 2021년 7월 1일로 연기되며, 해당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포르투갈 세무당국에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관련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음

16 프랑스

가. 2020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0-08호]

-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7월 31일 DAC6 실행과 관련한 보고의무 기한 연장, 결손금 공제에 의한 세액 즉시 환급, 사업재산세(contribu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세액공제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을 관보에 게재함^{330), 331)}

329) News IBFD, "Portugal - VAT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Continues to Apply the VAT Exemption and Reduced 6% VAT Rate to Health-Related Goods," October 1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5_pt_4(accessed Oct 19, 2020)

330) 프랑스 법률정보시스템, "LOI n° 2020-935 du 30 juillet 2020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0 (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0026D809FE97850366EE547659BF5191.tplgfr31s_1?cidTexte=JORFTEXT000042176557&dateTexte=&oldAction=rechJO&categorieLien=id&idJO=JORFCONT000042176554, 검색일자: 2020. 8. 24.

- ▶ 강제적 보고규정과 역외조세약정 교환에 대한 EU지침(DAC6) 실행과 관련하여 EU이 사회의 보고기한 연장 권고에 따라 보고의무 기한을 연장함
 -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의 역외조세약정에 대한 보고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1년 2월 28일로 연장함
 - 역외조세약정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준비가 되었거나 실행을 위한 첫 단계가 실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의무가 있는 2020년 7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역외조세약정에 대한 보고시기를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연장함
-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여 소급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에 의한 법인세 환급액은 납세자가 특별 신청을 하는 경우 즉시 환급 가능함
- ▶ 「조세일반법」 제1639A조를 수정하여 주된 영업활동이 여행업, 호텔업, 요식업, 스포츠, 문화, 항공운송, 행사 개최 등인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공공단체의 협조하에 2020년도 사업재산세액의 3분의 2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

나.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법인세 등 분할납부 허용

[조세동향 20-08호]

- ▣ 프랑스 재무부는 2020년 8월 17일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코로나19 위기 기간의 납부세액을 3년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Decree 2020-987)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함^{332), 333)}
 - ▶ 2019년 이전에 영업활동을 시작한 영세기업(micro entreprises) 및 중소기업(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음
 - 이는 특히 상인, 공예가, 자유직업인³³⁴⁾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를

331) News IBFD, "COVID-19 Pandemic: Amending Finance Law Postpones DAC6 Obligations and Provides For Immediate Refund of Loss Carry-Back," August 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04_fr_1.html(accessed Aug 24, 2020)

332)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Mesure de soutien aux TPE et PME : des plans de règlement pour les dettes fiscales,"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soutien-tpe-pme-plans-de-reglement-dettes-fiscales#>(accessed Aug 24, 2020)

333) News IBFD, "COVID-19 Pandemic: France Implements Tax Payment Plans for SMEs," August 2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20_fr_1.html(accessed Aug 24, 2020)

334) 자유직업인이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가 등 자격증이 요구되는 규율 전문직과 컴퓨터 그래픽

그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과세제도, 정상 과세제도 등 적용되는 모든 과세제도에 적용됨

- ▶ 코로나19로 기한이 연장되기 전의 기존 납부기한이 2020년 2월에서 4월이었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 2020년 3월에서 5월이었던 법인세와 사업재산세에 적용됨
- ▶ 기업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과세관청은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12, 24, 36개월 중 하나의 분할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분할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면제함

다.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9월 3일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France Relance)을 발표하여 조세정책을 수정함³³⁵⁾
 - ▶ 약 3,200개 기업이 보유하는 약 8만 6천개의 산업시설에 대하여 사업자산세(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의 과세표준을 50% 감면하고,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의 세율을 1.5%에서 0.75%로 인하함
 - ▶ 지역경제분담세(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 CET)액의 한도를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3%에서 2%로 인하하여 기업부가가치분담세 및 사업자산세가 기업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고자 함
 - 지역경제분담세액(사업자산세액과 기업부가가치분담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과세관청에 경감을 신청할 수 있음³³⁶⁾
 - 조세경감으로 인한 지방정부 및 특정 징수단체의 손실은 부가가치세의 일부 및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이러한 정책은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시행될 것임

디자이너, 번역가 등 비규율 전문직을 의미함, 프랑스 공공서비스,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3458>, 검색일자: 2020. 9. 4.

335) 프랑스 재무부, "Plan de relance," <https://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fiscalite-entreprises>, 검색일자: 2020. 9. 16.; KPMG, "France: Tax measures in stimulus plan; reduction to 'local production' taxes proposed," September 9, 2020,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9/tnf-france-tax-measures-stimulus-plan-reduction-local-production-taxes-proposed.html>, 검색일자: 2020. 9. 16.

336) 프랑스 재무부, "Entrepreneurs, vous pouvez peut être bénéficier du plafonnement de la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CET),"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plafonnement-contribution-economique-territoriale-cet-cvae-degrevement>, 검색일자: 2020. 10. 5.

- ▾ 프랑스 내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지역경제분담세를 부담하고, 이는 사업자산세와 기업부가가치분담세로 구성됨³³⁷⁾
 - ▶ 사업자산세는 사업체가 보유·이용하는 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영업활동에 사용한 부동산의 임대가치임³³⁸⁾
 - ▶ 기업부가가치분담세는 사업자산세를 부담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매출액(상품판매 및 용역제공)과 추가소득(고정자산 양도소득 등)에서 생산비용 등 기타비용을 공제한 것임³³⁹⁾
 -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5만 2,500유로³⁴⁰⁾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영업활동을 하고 매출이 50만유로³⁴¹⁾ 이상인 경우에 부과됨³⁴²⁾

라.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10호]

-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9월 29일 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³⁴³⁾
 - ▶ 프랑스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조세정책을 실행함
 - ▶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정책을 제안함
- ▾ 기업에 대하여 유형자산 및 금융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지역경제분담세(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 CET)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포함함

337) Service-public,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CET),"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N13443>, 검색일자: 2020. 9. 28.

338) Service-public,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CFE),"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3547>, 검색일자: 2020. 9. 28.

339) Service-public, "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CVAE),"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3546>, 검색일자: 2020. 9. 28.

340) 2020. 10.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829만원임

341) 2020. 10. 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8,292만원임

342) DGFIP, "La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CFE)," <https://www.impots.gouv.fr/portail/professionnel/cet-cfe-et-cvae>, 검색일자: 2020. 9. 28.

343)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Projet loi de finances 2021,"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1>(accessed Oct 14, 2020); News IBFD, "Government Launches France Recovery Plan in 2021," September 29,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29_fr_1.html(accessed Oct 14, 2020)

- ▶ 기업의 유형자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일시적으로 허용함
- ▶ 지역경제분담세를 구성하는 사업자산세(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의 과세표준을 50% 경감하는 등 프랑스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의 실행정책을 포함함³⁴⁴⁾
- ▣ 개인납세자에 대하여 에너지 전환 세액공제제도(Crédit d'Impôt po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CITE)를 폐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
 - ▶ 에너지 전환 세액공제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취득 및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함
 - 에너지 전환 세액공제제도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통근한 경우 소득세액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임³⁴⁵⁾
 - 이 제도는 2020년도부터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저소득가구의 혜택을 위한 제도(MaPrimeRenov)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음
-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EU지침의 실행시기를 연기하고 부가가치세 그룹제도를 도입함
 - ▶ 전자상거래와 원거리 판매에 적용되는 EU지침(2017/2455 및 2019/1955)의 실행시기를 2021년 7월 1일로 연기함
 - ▶ 부가가치세 그룹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으나 재정적·경제적·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자들을 부가가치세 목적상 단일 납세자로 간주함³⁴⁶⁾
 - 부가가치세 그룹은 그룹 내 각 구성원이 제3자와 거래(매도 및 매수 모두 포함)한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 간의 내부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 그룹 제도 편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룹 제도 선택 후 첫 3년 동안 적용되고,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금융 및 보험기업에 대하여 비용분담면제제(cost-sharing exemption regime)³⁴⁷⁾를 적용하지 않음
 - 이는 EU 부가가치세 지침(2006/112/EC) 제11조를 프랑스 국내법으로 제정한 것임

3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09호, 2020, pp. 9~10.

345)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Le crédit d'impôt transition énergétique(CITE) en 2020,"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credit-impot-transition-energetique-cite>(accessed Oct 23, 2020)

346) KPMG, "France: Introduction of VAT group regime," October 13, 2020,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10/tmf-france-introduction-vat-group-regime.html>(accessed Nov 3, 2020)

347) 부가가치세 면제 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형성된 그룹이 그룹 내 구성원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구성원의 분담비용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EU부가가치세지침」 및 「프랑스 세법」 제261B조)

- ▣ 기타 조세정책으로 지연가산세율을 유지하고 공인관리협회(Organisme de Gestion Agréé)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소득 가산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 ▶ 2018년 1월 1일 이후의 납부와 관련된 지연가산세율은 월 0.2%로 유지함
 - ▶ 공인관리협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상인, 공예인, 농업인, 자유직업인(의사, 변호사 등)의 영업 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의 25%를 가산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공인관리협회로부터 경영, 회계 및 세무 신고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나,³⁴⁸⁾ 소규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지함

마. 디지털서비스세 징수 예정 발표

[조세동향 20-11호]

- ▣ 프랑스 재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15일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를 2020년 12월에 징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³⁴⁹⁾
 - ▶ OECD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세 관련 국제적 해결책 도출기한을 2021년 중순으로 연장함에 따라,³⁵⁰⁾ 프랑스 정부는 예정대로 2020년 12월에 디지털서비스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함
 -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신고 및 납부를 유예하였음³⁵¹⁾
 - 디지털서비스세 지침에 따르면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유예란 2020년도 4월, 10월의 중간예납을 유예한 것으로, 2020년 12월에 이를 일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음
- ▣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정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미국과 갈등을 겪어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음

348)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organisme-gestion-agree>(accessed Oct 28, 2020)

349) Bloomberg Law, "France to Go Ahead With Digital Tax, Risking U.S. Tariffs," October 15,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10-14/france-to-go-ahead-with-digital-tax-risking-u-s-tariffs>(accessed Nov 17, 2020)

350) EY,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communiqué extends mandate of Inclusive Framework to continue negotiations on BEPS 2.0 project until mid-2021," October 14, 2020, <https://globaltaxnews.ey.com/news/2020-6332-g20-finance-ministers-and-central-bank-governors-meeting-communique-extends-mandate-of-inclusive-framework-to-continue-negotiations-on-beps-20-project-until-mid-2021>(accessed Nov 24, 2020)

35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4호, 2020, p. 14.

-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25일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발효함
- ▶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반발하여 프랑스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의 징수를 연기함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9년 12월 2일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후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음³⁵²⁾
 - 미국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화장품, 비누, 가방 등의 프랑스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나 2021년 1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³⁵³⁾

바. 2021년도 사회재정법안 발표

[조세동향 20-12호]

-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2021년도 사회재정법안을 공식 관보에 게재하여 사회보장분담세의 일부를 수정함³⁵⁴⁾
 - ▶ 법안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도입함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제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세를 최대 3개월간 조건부 면제함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제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액수의 사회보장분담세 부담금을 조건부 지급함
 -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2020년도에 미납한 사회보장분담세와 이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와 과태료를 특별 면제할 예정이며, 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과세관청의 제안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함

352)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Conclusion of USTR's Investigation Under Section 301 into France's Digital Services Tax,"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december/conclusion-ustr%E2%80%99s-investigation>(accessed Nov 24, 2020)

353) *The New York Times*, "U.S. Will Impose Tariffs on French Goods in Response to Tech Tax," Jul 10, 2020, <https://www.nytimes.com/2020/07/10/business/us-will-impose-tariffs-on-french-goods-in-response-to-tech-tax.html>(accessed Nov 24, 2020)

354) Légifrance, "LOI n° 2020-1576 du 14 décembre 202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1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665307>, 검색일자: 2020. 12. 17.; News IBFD, "France Enacts Social Security Finance Law for 2021," December 1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16_fr_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17 핀란드

가.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마스크 비용 소득공제 허용

[조세동향 20-09호]

- ▣ 핀란드 과세관청은 2020년 8월 19일 근로자에 대하여 마스크 비용 소득공제를 허용하였고, 이는 핀란드 보건복지부가 2020년 8월 13일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 것에 따른 것임³⁵⁵⁾

 - ▶ 모든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1년에 750유로³⁵⁶⁾의 근로 관련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직접 구매한 마스크 비용도 근로 관련 비용에 포함됨
 - 마스크 비용을 포함한 근로 관련 비용이 75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별도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마스크 비용은 근로자가 마스크를 근로시간 및 통근 시에 착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면세됨
 - ▶ 근로자가 직접 구매한 마스크를 대중교통 통근 시 사용한 경우에는 2020년 8월 13일 부터 근로자는 통근비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매일 2유로³⁵⁷⁾씩 공제 가능함
 - 통근비용은 1년에 750유로를 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 과세관청은 2020년 8월 11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마스크와 보호장비 비용은 근로자가 마스크를 통근 시(근로시간 외에 해당)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음³⁵⁸⁾

355) 핀란드 국세청, “Työntekijä voi vähentää kasvomaskeista aiheutuneita kuluja verotuksessa,” <https://www.vero.fi/tietoa-verohallinnosta/uutishuone/uutiset/uutiset/2020/ty%C3%B6ntekij%C3%A4-voi-v%C3%A4hent%C3%A4%C3%A4-kasvomaskeista-aiheutuneita-kuluja-verotuksessa/>, 검색일자: 2020. 9. 14; News IBFD, “COVID-19 Pandemic: Facemask Expenses Tax Deductible for Employees,” August 2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21_fi_1.html(accessed Sep 11, 2020)

356) 2020. 9. 2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2만원임

357) 2020. 9. 22.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천원임

358) News IBFD, “COVID-19 Pandemic: Tax Authorities Opine On Facemasks Provided by Employers,” August 13,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8-13_fi_2#tns_2020-08-13_fi_2(accessed Sep 11, 2020)

나.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10호]

- ▶ 핀란드 정부는 2020년 10월 5일 202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³⁵⁹⁾
 - ▶ 핀란드 정부는 같은 날 2021년도 예산안의 조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⁶⁰⁾
- ▶ 개인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 소득구간 기준액 인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자전거 비용 면세, 근로소득 소득공제액 최대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음
 - ▶ 소득세와 관련하여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기준액을 2.5% 인상함
 - 소득구간별로 기본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에 더하여 소득구간에 따른 최저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각각 적용됨

〈표 11-5〉 핀란드 2021년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기본 소득세	최저소득기준 초과액에 대한 세율
18,600 초과 ~ 27,900 이하	8	6
27,900 초과 ~ 45,900 이하	566	17.25
45,900 초과 ~ 80,500 이하	3,671	21.25
80,500 초과	11,023.50	31.25

자료: News IBFD, "Government Presents Budget Bill for 2021 to Parliament," October 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06_fi_1.html (accessed Oct 14, 2020)

- ▶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자전거 비용은 연 1,200유로³⁶¹⁾를 한도로 면세되고, 자전거 면세 한도와 대중교통 비용 면세 한도를 합하면 연 3,400유로³⁶²⁾임

359) Eduskunta Riksdagen, "Hallituksen Esitys eduskunnalle Valtion Talousarviokso Vuodelle 2021," https://www.eduskunta.fi/FI/vaski/HallituksenEsitys/Documents/HE_146+2020.pdf (accessed Oct 14, 2020); News IBFD, "Government Presents Budget Bill for 2021 to Parliament," Oct 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06_fi_1.html (accessed Oct 14, 2020)

360) Bloomberg Law, "Finland Parliament Considers Four Bills to Implement 2021 Budget Measures," Oct 8, 202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2MRK7R0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search=BNA%2520000001750457d959ab75175fec870000#jcite (accessed Oct 28, 2020)

361)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59만원임

362)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50만원임

-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의 최대 한도를 1,770유로³⁶³)에서 1,840유로³⁶⁴)로 확대함
- ▣ 기타 조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최소 사업자매출액 확대, 맥주 등에 대한 소비세 인상, 파라핀 디젤 등에 대한 유류세 경감 폐지,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에 대한 면세 등의 내용을 담음³⁶⁵)
- ▶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최소 사업자매출액을 2021년 1월 1일부터 1만유로³⁶⁶)에서 1만 5천유로³⁶⁷)로 확대함
- ▶ 맥주는 4.2%, 사이다와 같은 음료는 3.7%, 와인은 6% 등으로 세율을 인상함
- ▶ 유류세와 관련하여 파라핀 디젤 및 에탄올 디젤에 대한 경감을 폐지함
-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비용에 대하여 면세함

다. R&D 세액공제 및 자산 즉시상각 한도 증액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0-11회]

- ▣ 핀란드 정부는 2020년 10월 29일 R&D 세액공제 관련 법안(HE 196/2020)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⁶⁸)
- ▶ 2021~2025 과세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적격 R&D 비용에 대하여 5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공인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과세 대상자에게 청구한 금액(즉 송장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연간 추가 공제 한도는 최소 5천유로³⁶⁹)부터 최대 50만유로³⁷⁰)까지임

363)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35만원임

364)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45만원임

365) Eduskunta riksdagen, "Hallituksen esitys HE 143/2020 vp," https://www.eduskunta.fi/FI/vaski/HallituksenEsitys/Sivut/HE_143+2020.aspx(accessed Oct 28, 2020)

366)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332만원임

367) 2020. 10. 28.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999만원임

368) IBFD, "Government Presents Proposal for New R&D Incentive for 2021-2025," Oct 3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30_fi_1.html(accessed Nov 25, 2020)

369)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9만원임

370)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5,876만원임

- ▣ 핀란드 정부는 2020년 10월 29일 자산의 즉시상각 관련 법안(HE 195/2020)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⁷¹⁾
 - ▶ 기계장치 및 장비의 즉시상각 한도를 기존의 850유로³⁷²⁾에서 1,200유로³⁷³⁾로 증액함
 - 즉 구매가액이 1,200유로 미만인 기계장치 및 장비는 즉시 상각됨
 - ▶ 과세연도당 기계장치 및 장비의 즉시상각 한도는 기존의 2,500유로³⁷⁴⁾에서 3,600유로³⁷⁵⁾로 증액함

371) IBFD, "Government Proposes Increasing Limits on Assets Written Off Immediately," Oct 3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30_fi_2.html(accessed Nov 25, 2020)

372)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2만원임

37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8만원임

374)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0만원임

375)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4만원임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중국

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 법인 및 개인소득세 특례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7호]

- ▣ 중국 재무부 및 국세청은 2020년 6월 23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의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면제 및 감면하는 특례규정을 발표함³⁷⁶⁾

 - ▶ 본 특례규정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 이후 2035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화되지 않음³⁷⁷⁾

- ▣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소재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특정 자산에 대해 즉시상각 또는 가속상각하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사업을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본사 및 지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중국 법정세율³⁷⁸⁾이 아닌 15%의 특례 법인세율이 적용됨
 - 단 해당 기업의 본사 및 지사 총매출액의 60%가 권장 산업³⁷⁹⁾에서 발생하여야 함

376) News IBFD, "China(People's Rep.)-China Grants Corporate and Individual Tax Incentives in Hainan Free Trade Port," Jul 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02_cn_1(accessed Jul 29, 2020).

377) KPMG, "Hainan Free Trade Port-Innovative income tax policies," <https://home.kpmg/cn/en/home/insights/2020/06/china-tax-alert-25.html>, 검색일자: 2020. 7. 29.

378) 중국의 법정세율은 25%로 단일 세율임

379) 권장 산업은 the Guiding Catalogue for Industrial Structure Adjustment(2019 Edition), the Catalogue of Encouraged Industries for Foreign Investment(2019 Edition)에 언급된 산업으로, 관광업, 최신서비스산업, 첨단기술산업 등 광범위한 사업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 ▶ 관광업, 최신서비스산업, 첨단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직접투자자로 얻는 소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소득세가 면제됨
 - 해외에 신규로 설립한 지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 투자한 외국 법인세율이 5% 이상이어야 함
- ▶ 건물 및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500만위안³⁸⁰⁾까지 즉시 상각 가능함
 - 500만위안을 초과하는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은 가속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음
- ▣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소재하는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거주하는 적격 개인³⁸¹⁾이 벌어들이는 다음 소득의 유효세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종합소득(고용소득, 개인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소득, 로열티소득, 저작자소득 등)
 - 사업소득
 - 하이난성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 ▶ 15%를 초과하는 소득은 과세를 면제함

나.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동향 20-08호]

- ▣ 중국 재무부, 관세청 및 국세청은 2020년 8월 14일 2020년 제36호 공고를 통해 세금 감면이 금지되었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관련 법에 따라 감면하기로 결정함³⁸²⁾
 - ▶ 해당 공고는 2020년 8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규정인 1994년 제64호 시의회

380)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억 5,400만원임

381) 첨단기술 및 주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 적용 대상에 해당됨

382) 중국 재무부,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8/t20200813_3566883.htm, 검색일자: 2020. 9. 4.

공고는 폐지됨

- 과거 1994년 규정은 중국의 국내 제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으로, 일정 수입 상품의 수입방식이나 수입하는 국가 또는 기업 등의 조건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세금 감면이 금지되었음

▣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수입 상품은 다음과 같음

- ▶ 대상 상품은 20개이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 또는 생활필수품에 해당함
 - 텔레비전,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게임기, 음향기기,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 교환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제어, 초소형 컴퓨터와 주변기기, 전화기, 무선 호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가구, 램프, 조명기구, 식료품

다. 2021년도 세법규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0-12호]

- ▣ 2021년도 세법규정 개정안에는 광고 및 홍보비용 소득공제와 저소득 근로자 원천징수 규정이 포함됨
- ▣ 중국 재무부는 2020년 11월 27일 [2020] 제43호 회람에 광고 및 홍보 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함³⁸³⁾
 - ▶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장품, 약품, 무알코올 음료 제조와 판매 관련 기업들은 과세연도 수입 총액에서 광고 및 홍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함³⁸⁴⁾
 -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의 30%로 제한되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차후 과세연도로 이월 가능함
 - ▶ 분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연도에 발생한 광고 및 홍보 비용은 연간 매출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전부를 소득공제 받거나 분담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일부 비용을 귀속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383) 중국재무부, 「关于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税前扣除有关事项的公告」,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012/t20201207_3633090.htm, 검색일자: 2020. 12. 17.

384) IBFD, China Updates Rule on Deduction of Advertisement and Promotion Expens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11_cn_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 단 담배, 알코올 주류 제조와 판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광고 및 홍보 비용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함

▣ 중국 국세청은 2020년 12월 4일에 SAT(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고시 [2020] 제19호에 저소득 근로자 원천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함³⁸⁵⁾

- ▶ 2021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년도 연간소득이 6만위안³⁸⁶⁾ 미만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음
 -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납부세액 계산 시 연간 표준공제 총액이 6만위안이기 때문임³⁸⁷⁾
-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간 소득이 6만위안 미만인 원천징수 대상자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지만 ‘전년도 연간 소득이 6만위안 미만’이라는 각주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함
 - 만약 특정 월에 직원의 누적 급여가 6만위안을 초과하면, 특정 월에 초과한 소득과 현 과세연도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2 홍콩

가. 로열티 소득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한 해석서 개정

[조세동향 20-08호]

▣ 홍콩 국세청은 2020년 8월 로열티 소득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한 해석서를 개정하여 IP 관련 소득의 간주 공급, 로열티 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원칙, 적정 간주 수익률 적용,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³⁸⁸⁾

385) IBFD, China Amends Withholding Rule for Low Income Employe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08_cn_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386)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10만원임

387) 세계법제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번역본(2018.8.31.개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31102&AST_SEQ=1086&, 검색일자: 2020. 12. 17.

388) Deloitte Tax@hand, “IRD Updates guidance on IP taxation and deductions”, <https://www.taxathand.com/article/15223/Hong-Kong/2020/IRD-updates-guidance-on-IP-taxation-and-deductions>, 검색일자: 2020. 8. 25.

▶ 본 지침은 2005년 발표한 국세청 해석서 제22호³⁸⁹⁾를 개정하여 구체화한 것임

▣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최신 해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홍콩 원천소득은 공급으로 간주하며 이익세(Profits tax) 과세 대상임
- ▶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로열티 소득을 판단하고자 해당 이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이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를 위해 사실관계, 개발된 IP의 허가(Licensing), 구매된 IP 허가, IP의 재허가(Sublicensing) 현황을 분석해야 함
- ▶ 다음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홍콩 내 영화 필름의 사용 및 전시
 - 홍콩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
 - 홍콩 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
 - 홍콩 내에서 가치가 증대된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
 - 공연자 저작권의 할당
- ▶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 로열티 소득은 일반적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됨
- ▶ 해당 로열티 소득의 소득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상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됨

3 인도

가. 알기 쉬운 과세 플랫폼 도입

[조세동향 20-08호]

▣ 인도 정부는 2020년 8월 14일 “알기 쉬운 과세”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389) 홍콩 국세청, “TAXATION OF ROYALTIES AND OTHER INCOME FROM INTELLECTUAL PROPERTIES,” <https://www.ird.gov.hk/eng/pdf/dipn22.pdf>, 검색일자: 2020. 8. 25.

납세자들을 위한 세무행정 절차를 도입함³⁹⁰⁾

- ▶ 알기 쉬운 과세 플랫폼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도입함
- ▶ 비대면 조사, 비대면 불복 및 납세자 현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인도 직접세 중앙위원회(th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소득세법」 제119조를 발행하여 2020년 8월 13일부터 비대면 조사 규정이 도입됨

- ▶ 비대면 조사 도입을 통해 세무조사 절차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납세자와 국세청 담당 직원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지님
- ▶ 단 다음의 경우는 비대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수색 및 압수 조치에 해당하는 중앙위원회에서 할당한 조사 명령
 - 국제조세 케이스에 해당하는 조사 명령(단 중앙위원회에서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불복 절차는 2020년 9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임

- ▶ 단 해당 내용은 향후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납세자 현장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2020년 8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함³⁹¹⁾

- ▶ 납세자 현장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됨
- ▶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세관청의 의무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하고 정중한 조사를 수행해야 함
 - 정직하게 대해야 함
 - 납세자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정확한 금액만을 징수해야 함
 - 납세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
- ▶ 납세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90) *The Economic Times*, "PM Modi launches Transparent Taxation platform to benefit honest taxpayer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pm-modi-launches-transparent-taxation-platform-to-benefit-honest-taxpayers/articleshow/77518538.cms?from=mdr>, 검색일자: 2020. 8. 25.

391) EY, https://www.ey.com/en_gl/tax-alerts/india-introduces-transparent-taxation-platform, 검색일자: 2020. 9. 1.

- 절차를 정직하게 준수해야 함
- 정확한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공한 정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
- 법에 따른 정보를 적시에 제출해야 함
- 세금을 적시에 납부해야 함

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발표

[조세동향 20-11호]

- ▣ 인도정부는 2020년 11월 12일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AatmaNirbhar Bharat 3.0 경기부양책을 발표함³⁹²⁾
 - ▶ 2020년 11월 12일 발표된 AatmaNirbhar Bharat 3.0의 경기부양액은 2.65조루피³⁹³⁾ 규모로, 12가지 경기부양책을 발표함³⁹⁴⁾
 - 조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건설업자 및 주택 구매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안이 포함됨³⁹⁵⁾

- ▣ 인도 정부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주거용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건설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발표함³⁹⁶⁾
 - ▶ 최대 2천만루피³⁹⁷⁾ 가치의 주거용 부동산 1차 판매에서 공시가격(Circle Rate)³⁹⁸⁾과 시장가격(Agreement Value) 간의 차이에 대한 제한을 20%로 상향함

392) Ministry of Finance, "Atmanirbhar Bharat Package 3.0," <https://static.pib.gov.in/WriteReadData/userfiles/MOF.pdf>,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2321>, 검색일자: 2020. 11. 17.

39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조 3,790억원임

394) Finance Minister announces measures on AatmaNirbhar Bharat 3.0,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2321>, 검색일자: 2020. 12. 01.

395) IBFD, COVID-19 Pandemic: India Subsidizes Provident Fund Contributions and Provides Tax Relief to Developers and Home Buyers in New Stimulus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13_in_2.html, 검색일자: 2020. 11. 13.

396) Ministry of Finance, Tax Relief to Developers and HomeBuyers, <https://static.pib.gov.in/WriteReadData/userfiles/MOF.pdf>, 검색일자: 2020. 11. 17.

397)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100만원임

398) Circle Rate는 Plot, Built-up 주택,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 등의 거래 시 지불할 의무가 있는 최소금액을 말함. Circle Rate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간 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음. Circle Rate는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Real Estate-Market Rate VS Circle Rate, <https://www.entrepreneur.com/article/322174>, 검색일자: 2020. 12. 1.

- 현행 인도 「소득세법」 Section 43CA는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10%로 제한하고 있어, 공시가격보다 10% 이상 낮게 거래되더라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되고 있음
- 변경된 20%를 적용할 경우 부동산 건설업자가 공시가격 대비 20% 낮은 가격 범위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더라도 공급가격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 ▣ 인도 「소득세법」 Section 56(2)(x)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는 중산층에 20%의 소득세 감면을 실시함³⁹⁹⁾
 - ▶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최대 2천만루피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한함
 -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인도 중산층의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4 인도네시아

가. 해외 디지털거래에 대한 VAT 과세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7호]

- ▣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2020년 6월 25일 국세청 규정 No. PER-12/PJ/2020을 통해 해외 디지털거래에 관한 VAT 과세규정을 발표함⁴⁰⁰⁾
 - ▶ 2020년 5월 5일에 발표한 재무부 규정 No. 48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해외 디지털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국세청 규정임⁴⁰¹⁾
- ▣ 2020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해외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 국내외 전자상거래 마켓운영자(이하 대상 기업)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VAT 징수의무자로 지정됨

399) Finance Minister announces measures on AatmaNirbhar Bharat 3.0, Income Tax relief for Developers & Home Buyers,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2321>, 검색일자: 2020. 12. 1.

400) News IBFD, "Indonesia-Indonesia Sets VAT Collection Threshold for E-Commerce Transactions," Jul 3,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03_id_1(accessed Jul 29, 2020).

4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05호, 2020, pp. 24-25.

- ▶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기업은 VAT 징수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장 결정에 의해 확정됨
 - 인도네시아 고객과의 거래가 연간 6억인도네시아루피⁴⁰²⁾를 초과하거나 월간 5천만 인도네시아루피⁴⁰³⁾를 초과함
 - 인도네시아 내 접속 트래픽이 연간 1만 2천명의 사용자를 초과하거나 월간 1천명의 사용자를 초과함
 - ▶ 대상 기업은 국세청장이 VAT 징수의무자로 결정된 사실을 고지한 다음 달부터 VAT 징수의무가 발생함⁴⁰⁴⁾
- ☑ 대상 기업이 VAT 징수의무자로 지정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 VAT를 납부해야 함
- ▶ VAT 징수의무자로 지정되는 날 이전에 국세청 시스템상 계정을 생성해야 함
 - ▶ 대상 기업은 인도네시아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VAT로 징수하며, 이를 증명하는 계산서, 영수증, 주문확인서 등을 발급해야 함
 - ▶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자적인 방법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한 VAT를 납부해야 함
 - ▶ 분기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고시스템에 VAT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함
 - 인도네시아 내 사용자 수, VAT를 제외한 매출액, 징수한 VAT 금액,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한 VAT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국세청장은 연 단위 VAT 신고서를 따로 요청할 수 있음

나.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결

[조세동향 20-10호]

- ☑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0년 10월 5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RANCANGAN UNDANG-UNDANG CIPTA KERJA)을 통과시킴⁴⁰⁵⁾

402)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억 7,600만원임

403) 2020. 7. 29.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9,750만원임

404) KPMG, "Value Added Tax on Offshore E-Commerce Transactions Implementing Rules,"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id/pdf/2020/07/id-tnf-july-2020.pdf>, 검색일자: 2020. 7. 29.

- ▶ 해당 법안은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투자, 고용, 환경 관련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법안에는 세법 개정안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⁴⁰⁶⁾

- ▶ 2023년까지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함
 - 현재 인도네시아의 표준 법인세율은 25%이나 총납입주식의 40% 이상이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기업에는 표준세율보다 5% 더 낮은 법인세율(20%)이 적용되고 있음
 - 법안에 의하면 2021~22 과세연도의 표준 법인세율은 22%로, 2023 과세연도의 표준 법인세율은 20%로 인하됨
 - 전체 주식의 40% 이상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기업은 2021 과세연도부터 표준 법인세율에서 3%의 법인세율이 추가로 인하되어 2021~22 과세연도에는 19%, 2023 과세연도에는 17%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 ▶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되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 ▶ 비과세 기간, 특별소득공제 등의 조세 혜택을 도입함
- ▶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는 현지 규제를 폐지함
-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처음 4년 동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적용함

다. 연구개발(R&D) 관련 추가 세제혜택 지침 발표

[조세동향 20-11호]

☐ 인도네시아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MoF)는 2020년 10월 9일 연구개발(R&D)과 관련하여 추가 세제혜택 지침을 발표함⁴⁰⁷⁾

405) *Bloomberg Tax*, Here's What to Know on Indonesia's Investment Law Overhaul(Oct 8, 2020); IBFD, Indonesia's Parliament Passes Omnibus Bill on Job Creation that Includes Revision to Tax Laws(Oct 9, 2020)

406) 인도네시아 국세청, JAGA EKONOMI INDONESIA, PEMERINTAH BERHARAP OMNIBUS LAW PERPAJAKAN DAPAT SEGERA DIUNDANGKAN, <https://www.pajak.go.id/sites/default/files/2020-02/SP%2004%20-%20Omnibus%20Law%20%28%20FINAL%29.pdf>, 검색일자: 2020. 10. 21.; IBFD, Omnibus bill on taxation submitted to House of Representatives(Feb 27, 2020); IBFD, Indonesia's Parliament Passes Omnibus Bill on Job Creation that Includes Revision to Tax Laws(Oct 9, 2020)

- ▶ 2019년 정부규정 제45호(Government Regulation No. 45 of 2019, GR-45)⁴⁰⁸⁾에 추가로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혜택 지침인 재무부 시행 규정(153/PMK.010/2020, PMK-153)을 발표함⁴⁰⁹⁾
 - ▶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내 법인납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구개발에 소요된 실제 비용의 최대 3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⁴¹⁰⁾
 - ▶ 해당 연도에 발생한 실제 연구개발비는 100% 세액공제되며, 추가로 연구개발비를 최대 200%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음⁴¹¹⁾
 -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사무소(Indonesian IPR office)에 등록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50% 세액공제가 가능함
 -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해외 지식재산권사무소에도 등록한 경우 25% 세액공제가 가능함
 -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을 상업화할 경우 100% 세액공제가 가능함
 - 인도네시아 정부 연구개발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적격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25% 세액공제가 가능함
- ▣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시행 규정(153/PMK.010/2020, PMK-153)에 기재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함⁴¹²⁾
- ▶ 2019년 6월 26일부터 인도네시아 법인 납세자가 실시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자산, 연구개발에 투입된 상품과 원재료, 연구개발 관련 임금비용,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인도네시아 정부 연구개발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지불한

407)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PMK) Nomor 153/PMK.010/2020, <https://peraturan.bpk.go.id/Home/Details/148409/pmk-no-153pmk0102020>, 검색일자: 2020. 11. 16.

408) 인도네시아 2019년 정부규정 제45호(No. 45 of 2019)는 2010년 정부규정 제94호(GR-94)를 개정한 것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국가의 인적자원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세계 기업의 참여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임, Govt Amends Regulation on Taxable Income Calculation, <https://setkab.go.id/en/govt-amends-regulation-on-taxable-income-calculation/>, 검색일자: 2020. 11. 16.

409) IBFD, Indonesia Issues Guidance on Tax Incentive for R&D Activi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03_id_1.html, 검색일자: 2020. 11. 13.

410)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PMK) Nomor 153/PMK.010/2020, <https://peraturan.bpk.go.id/Home/Details/148409/pmk-no-153pmk0102020>, 검색일자: 2020. 11. 16.

411) IBFD, Indonesia Issues Guidance on Tax Incentive for R&D Activi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03_id_1.html, 검색일자: 2020. 11. 13.

412) 상동

연구개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추가 세액공제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지식재산권 등록시점 또는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 상업화 단계 시작시점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적격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됨
 -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연구개발 추가 세액공제는 해당 회계연도 과세소득의 최대 40%까지 가능하며, 초과된 세액공제액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함
- ▣ 인도네시아 법인납세자는 재무부 시행 규정(153/PMK.010/2020, PMK-153)에 따라 재무부에 연구개발 활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해야 함⁴¹³⁾
 - ▶ 2020년 10월 9일 이전에 적격 연구개발을 수행한 법인납세자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연구개발 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세제혜택 발표

[조세동향 20-12호]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1월 26일 코로나19 백신의 수입과 유통에 관한 세제혜택을 발표함⁴¹⁴⁾
 - ▶ 코로나19 백신의 수입과 유통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면제됨
- ▣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코로나19 백신 수입과 유통에 대한 세제혜택 지침인 재무부 규정 제188호(No.188/PMK.04/2020: PMK-188)를 발표함⁴¹⁵⁾
 - ▶ 코로나19 백신 생산·접종에 필요한 원재료 및 장비 등을 포함한 수입에서 관세(Import duty), 특별소비세(Excise duty),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Sales tax), 「소득세법」 제22조⁴¹⁶⁾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됨

413) 상동

414) IBFD, COVID-19 Pandemic: Indonesia Grants Tax Incentives for Import of COVID-19 Vaccin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08_id_1.html, 검색일자: 2020. 12. 17.

415) No.188/PMK.04/2020: PMK-188, <https://peraturan.bcperak.net/sites/default/files/peraturan/2020/188-pmk04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7.

416)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6 TAHUN 2008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https://dpr.go.id/>

- 세제혜택은 보세창고를 통한 수입에 한하여 적용되며, 백신을 보세창고, 경제특구 지역, 수출전문기업 등에 유통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코로나19 백신의 수입과 유통 관련 세제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⁴¹⁷⁾

▶ 기관 또는 기업은 최초 수입 시 세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제출하면 됨

- 신청서 제출 후 세제혜택 적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세제혜택을 신청한 기관 또는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의 수입 및 유통과 관련된 세제혜택 외의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100~500%에 이르는 가산세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마.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추가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0-12호]

▣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2020년 11월 25일, 30일에 옴니버스 법률안(RANCANGAN UNDANG-UNDANG CIPTA KERJA)⁴¹⁸⁾에 따른 추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⁴¹⁹⁾

▶ 옴니버스 법안은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투자, 고용, 환경 관련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⁴²⁰⁾

-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3개월 이내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특정 기간을 발표할 예정임

dokjdih/document/uu/UU_2008_36.pdf, p. 29., 검색일자: 2020. 12. 17.

417) No.188/PMK.04/2020: PMK-188, <https://peraturan.bcbaperak.net/sites/default/files/peraturan/2020/188-pmk04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7.

418) JAGA EKONOMI INDONESIA, PEMERINTAH BERHARAP OMNIBUS LAW PERPAJAKAN DAPAT SEGERA DIUNDANGKAN, <https://www.pajak.go.id/sites/default/files/2020-02/SP%2004%20-%20Omnibus%20Law%20%28FINAL%29.pdf>, 검색일자: 2020. 12. 18.

419) IBFD, President Signs Omnibus Bill on Job Cre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10_id_1#tns_2020-11-10_id_1, 검색일자: 2020. 12. 18.

4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10호, 2020, pp. 25~26.

- ▣ 2020년 11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됨⁴²¹⁾

 - ▶ 개정안에 따르면 ①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을 거주기업(Resident company), 협동조합, 국영기업이 수령한 경우 ② 특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이 받은 배당금인 경우 ③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해외 고정사업장의 세후 소득을 인도네시아의 다른 사업활동에 투자한 경우 ④ 사회·종교단체 또는 기관이 잉여금을 4년 이내에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거나 기부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도입할 예정임

- ▣ 2020년 11월 30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법과 세법에 대한 일반조항 및 절차법(General Provision and Procedure on Taxes Law: GTL) 개정안이 포함됨⁴²²⁾

 -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위탁에 따른 과세물품의 인도나 양도는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자본투입 목적의 주식 교환 또는 자산의 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과세기업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음
 - 개업 전에 매입한 재화나 용역 중 영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탄광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인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이름, 주소, 여권번호 또는 식별번호를 포함해야 함
 - ▶ 세법에 대한 일반조항 및 절차법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기존 과세표준의 2%에서 1%로 낮춤
 -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해서는 납세신고서(Tax Assessment letters)가 발급되지 않음
 - 세금징수서(Tax Collection Letter) 발급 시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함

421) IBFD, Indonesia Introduces Tax Exemptions Under New Law on Job Cre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25_id_1.html, 검색일자: 2020. 12. 18.

422) IBFD, Indonesia Amends the Value Added Tax and Tax Administration Provisions under the New Law on Job Cre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30_id_1.html, 검색일자: 2020. 12. 18.

5 싱가포르

가. 코로나19 관련 지급금에 관한 세무처리규정 발표

[조세동향 20-07호]

- ☑ 싱가포르 국세청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지불되는 코로나19 관련 지급금에 관한 세무처리규정을 발표함⁴²³⁾

 - ▶ 본 규정은 코로나19 관련 지급금의 목적에 따라 과세 대상 및 비과세 대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함

- ☑ 성격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거나, 특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다음의 지급금은 과세하지 않음⁴²⁴⁾

 - ▶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 보조금
 - ▶ 코로나19로 인해 실업한 개인을 위한 보조금
 - ▶ 근로복지제도 특별지급금
 - ▶ 임시 재정지원 보조금
 - ▶ 싱가포르 무역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 싱가포르 관광청에 등록된 투어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임금
 - ▶ 싱가포르 해양청에 등록된 선원에게 제공하는 지급금
 - ▶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휴가자 및 재택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지급금
 - ▶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저소득층,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지급금

423) News IBFD, "Singapore - COVID-19 Pandemic: Income Tax Treatment of COVID-19-Related Payouts," Jul 2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21_sg_1(accessed Jul 29, 2020)

424) 싱가포르 국세청, "COVID-19 support measures and tax guidance," <https://www.iras.gov.sg/irashome/COVID-19-Support-Measures-and-Tax-Guidance/COVID-19-Support-Measures-and-Tax-Guidance>, 검색일자: 2020. 7. 22.

- ▣ 다음의 지급금은 비용 보상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함
 - ▶ 말레이시아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직원에 대한 임시 거주지 지원금
 - ▶ 노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방역비용 지원금
 - ▶ 택시 미운행 보조금
 - ▶ Wage Credit Scheme⁴²⁵⁾에 따른 싱가포르 근로자 임금 상승분에 대한 지원금

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0-08호]

-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0년 8월 5일 2020년도 예산안⁴²⁶⁾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⁴²⁷⁾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⁴²⁸⁾
 - ▶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명확히 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코로나19 피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다음과 같음
 - ▶ 2020년도 법인소득세 납부세액의 25%를 1만 5천싱가포르달러⁴²⁹⁾의 한도 내에서 감면함
 - ▶ 결손금 소급공제의 기준을 기존 직전 1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함
 - ▶ 개인 또는 사업자가 2020년도에 받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2021년, 2022년 소득세 계산 시 면제됨

425)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임금 상승 지원금으로, 2013년도 최초 도입되어 2020년도 예산에도 포함됨

42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 2020, pp. 45~46 참고

427) 싱가포르 재무부, "Income tax(Amendment) Bill 2020 launched," https://www.mof.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2020-itabill/itabill2020-entire-bill_9669b991d63d4291a4a488a5c0a7df01.pdf, 검색일자: 2020. 8. 25.

428) Deloitte Tax@hand, "Public consultation on draft Income Tax(Amendment) Bill 2020 launched," <https://www.taxathand.com/article/15096/Singapore/2020/Public-consultation-on-draft-Income-Tax-Amendment-Bill-2020-launched>, 검색일자: 2020. 9. 1.

429)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1,309만원임

- ▶ 적격 종업원이 2020년도에 숙박, 음식, 교통 등 생필품을 위해 제공받은 복리후생은 소득세 계산 시 면제됨
- ▶ 2020년도 공장 및 기계장치 취득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 계산 시 가속상각할 수 있음
- ▶ 2020년도 리노베이션, 재정비 등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 계산 시 가속상각할 수 있음
- ▶ 비거주자 중개인에게 2022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는 비용은 원천징수가 면제됨

☞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소득세 최고 책임자는 조세회피 목적의 계약에 대한 대응조정의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50%의 추가 과징금을 징수함
- ▶ 조세 환급 절차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제함
- ▶ 은행과 적격 기업에 대한 채무 및 채무증권의 충당부채 관련 비용공제 한도가 폐지됨
- ▶ 2022년 6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회사의 보통주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을 과세하지 않음(단 부동산 관련 사업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 중소기업의 세금신고 절차 디지털화 지원

[조세동향 20-09호]

- ☞ 싱가포르 회계·기업관리청(ACRA)과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세금신고를 자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함⁴³⁰⁾
- ▶ 싱가포르 기업은 매년 ACRA에 연간보고서 제출 및 IRAS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두 기관에 직접 신고 및 제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ACRA와 IRAS는 회계 소프트웨어에 두 기관에

430) Bloomberg Tax, "Singapore Digitizes Small and Mid-Size Company Tax Returns," Aug 19, 2020, 검색일자: 2020. 9. 16.; IRAS, "New Seamless Filing Initiative Enables SMEs to Go Digital", Aug 20, 2020,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Newsroom/Media-Releases-and-Speeches/Media-Releases/2020/New-Seamless-Filing-Initiative-Enables-SMEs-to-Go-Digital/>, 검색일자: 2020. 9. 16.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자동적으로 각 기관의 신고 서류가 생성되고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함

- 현재 ACRA와 IRAS에 신고 서류를 자동 제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Netiquette O2O Business Suite, SMECEN 두 개이나,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 ▶ 세무당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서류 신고 및 제출 시간이 9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현재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전 승인된 IT 솔루션 구매 시 구매비용의 80% 까지 지원할 예정임

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종 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0-10호]

- ▣ 2020년 10월 2일 싱가포르 재무부(MOF)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⁴³¹⁾
- ▣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MTF 적발 시 매입세액공제 청구가 불가능하며 세무당국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50%의 과징금이 부과됨⁴³²⁾
 - ▶ MTF(Missing Trader Fraud)란, 공급망(supply chain)을 이용하여 면세로 재화를 취득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하여 최종 구매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하지 않는 조세 포탈 행위를 의미함
 - ▶ 과세 대상자(공급자)가 본인의 거래 및 약정이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MTF임을 인지하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매입세액공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자에게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함

431) 싱가포르 재무부, "Summary of responses to public consultation on the draft Goods and Services Tax (Amendment) Bill 2020," [https://www.mof.gov.sg/newsroom/press-releases/summary-of-responses-to-public-consultation-on-the-draft-goods-and-services-tax-\(amendment\)-bill-2020](https://www.mof.gov.sg/newsroom/press-releases/summary-of-responses-to-public-consultation-on-the-draft-goods-and-services-tax-(amendment)-bill-2020), 검색일자: 2020. 10. 21.; 싱가포르 재무부, "Summary of responses to public consultation on the draft Income Tax(Amendment) Bill 2020," [https://www.mof.gov.sg/newsroom/press-releases/summary-of-responses-to-public-consultation-on-the-draft-income-tax-\(amendment\)-bill-2020](https://www.mof.gov.sg/newsroom/press-releases/summary-of-responses-to-public-consultation-on-the-draft-income-tax-(amendment)-bill-2020), 검색일자: 2020. 10. 21.

432) Goods and Services Tax(Amendment) Bill Section 47(A).; IBFD, "Singapore Proposes Tougher Anti-Avoidance Measures in the Goods and Services Tax(Amendment) Bill," Oct 8, 2020.

- ▶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세무당국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50%의 과징금이 부과됨
- ▶ 세무당국은 회계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해당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음
- ▣ 조세회피로 세무당국에 의해 조정되는 모든 소득세 및 인지세에 대하여 50%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됨⁴³³⁾
 - ▶ 소득세와 관련한 추가 과징금은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 인지세와 관련한 추가 과징금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발효일 이후 세무당국의 조정에 의해 추가되는 인지세에 적용됨
 - ▶ 소득세와 인지세에 대한 추가 과징금 모두 납부자의 이의 제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가 납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함
 - ▶ 추가로 부과된 인지세 및 과징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금액의 최대 4배의 벌금이 부과됨

마. 코로나19 대응 법인세 신고 간소화 발표

[조세동향 20-11호]

- ▣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0년 11월 5일 코로나19 대응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법인세 신고 간소화 세부사항을 발표함⁴³⁴⁾
 - ▶ 간소화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싱가포르 법인 중 연간 수익이 20만싱가포르달러⁴³⁵⁾ 미만인 곳이며, 약 6만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이 가능함⁴³⁶⁾

433) Income Tax(Amendment) Bill Section 33.; Income Tax(Amendment) Bill Section 63.; IBFD, "Singapore Proposes Tougher Anti-Avoidance Measures in the Income Tax(Amendment) Bill," Oct 9, 2020.

434) Corporate Tax Filing Simplified for Companies,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Newsroom/Media-Releases-and-Speeches/Media-Releases/2020/Corporate-Tax-Filing-Simplified-for-Companies/>, 검색일자: 2020. 11. 17.

435)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491만원임

436) Corporate Tax Filing Season 2020,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Tax-Filing-Season-2020/>, 검색일자: 2020. 11. 17.

- ▣ 간소화된 법인세 신고에는 새로운 양식(Form C-S(Lite))을 사용함⁴³⁷⁾

 - ▶ 기존 약식 법인세 신고양식(Form C-S)보다 3분의 2 축소된 6가지 필수 분야만 세부적으로 제공하면 됨
 - 단 해당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자본손실 및 사업손실에 대한 소급공제, 그룹공제(Group relief), 투자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 ▶ 간소화된 법인세 신고에 해당되는 회사는 모든 소득에 17% 세율이 과세⁴³⁸⁾되며, 재무제표와 세액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기업들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상기 문서들을 요청할 경우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⁴³⁹⁾

- ▣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모든 기업이 2020년 12월 15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⁴⁴⁰⁾

 - ▶ 직전 회계연도 종료가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2월 15일까지 법인세 신고가 어려울 경우 2021년 1월 15일까지 1개월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함
 -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법인세 신고연장서식(Request for Filing Extension for YA 2020 Corporate Income Tax Return⁴⁴¹⁾)을 제출해야 함
 - 신고연장서식 제출일로부터 7~10 영업일 이내에 MyTax Portal(CIT/ E-Service)에서 확인 가능함

437) Form C-S(Lite),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Filing-Taxes-Form-C-S-Form-C-/Form-C-S-Lite-/>, 검색일자: 2020. 11. 18.

438) 2010년 과세연도부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회사의 법인세율은 17%임, CCH(2019/20), p. 32.

439) *Bloomberg*, Singapore E-Filing Tax Compliance Burden Reduction is 'Timely', 검색일자: 2020. 11. 17.

440) IBFD, "COVID-19 Pandemic: Singapore to Extend YA 2020 Corporate Income Tax Return Filing Deadline on Case-by-Case Basi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1-12_sg_1.html, 검색일자: 2020. 11. 18.

441) Request for Filing Extension for YA 2020 Corporate Income Tax Return, <https://form.gov.sg/#/1/5f8e8176c6e6560012f502d4>, 검색일자: 2020. 11. 18.

6 호주

가. MEC 기업 집단의 양도소득세 회피 관련 주의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 호주 국세청(ATO)은 2020년 8월 24일 MEC(multi-entry consolidated) 기업 집단에 대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그룹 내 자산 매각방식에 관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Taxpayer Alert(TA) 2020/4를 발행함⁴⁴²⁾

 - ▶ TA 2020/4에서는 MEC 기업 집단에서 불필요하게 복잡한 방식으로 그룹 내 자회사(ET-1)를 이용해 기초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함
 - MEC(multi-entry consolidate) 기업 집단은 단일 외국 기업(Top company)이 지배하는 호주 거주 기업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며, ET-1(eligible tier-1) 회사는 해당 외국 기업이 100% 소유하는 호주 내 거주 기업을 의미함⁴⁴³⁾
 - ▶ TA 2020/4에서 지적하는 자산 매각방식을 살펴보면 ① 특정 회사가 MEC 그룹 내의 ET-1 회사로 신규 편입되고 ② 신규 편입된 ET-1 회사로 기초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이전되며 ③ 이후 해당 ET-1 회사가 MEC 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기초 자산이 MEC 그룹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자산 매각방식임
 - ▶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방식은 기초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있어 특정 회사를 그룹 내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자산 이전 후 다시 제외시키는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

442) Tax Notes, "Australia Warns Multinational Groups About CGT Avoidance," Aug 31, 2020, 검색일자: 2020. 9. 15.; Deloitte, "ATO highlights concerns over multiple entry consolidated groups avoiding CGT," Aug 27, 2020, <https://www.taxathand.com/article/15206/Australia/2020/ATO-highlights-concerns-over-multiple-entry-consolidated-groups-avoiding-CGT>, 검색일자: 2020. 9. 16.

443) Australian Government, "Multiple entry consolidated groups,"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3/C2015-015_MEC_grouptri_review.pdf, 검색일자: 2020. 9. 16.

나. 다국적기업 무이자 금전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 호주 국세청(ATO)은 2020년 8월 12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규제와 관련하여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이자 금전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인 PCG 2017/4DC Schedule 3 초안을 발표함⁴⁴⁴⁾
- ▣ Schedule 3에서는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이자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자체 위험 평가 지침 및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⁴⁴⁵⁾

 - ▶ 이전가격 관련 자체 위험평가 시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이자 금전 대여 계약의 경우 다른 이전가격 관련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고위험 등급(amber zone)에서부터 시작함을 명시함
 - ▶ 그러나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 등급을 낮게 평가할 수 있음
 - 무이자율이 정상 이자율인 경우
 - 금전 대여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분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 금전 대여가 아닌 지분 조달 약정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 호주 국세청은 해당 초안과 관련하여 무이자 금전 대여 관련 계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피드백을 받을 예정임

다. 2020/21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0-10호]

- ▣ 호주 재무부는 2020년 10월 6일 2020/21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함⁴⁴⁶⁾

444) *Bloomberg Tax*, "Australia Seeks Feedback on Draft Related-Party Loan Guidance," Aug 20, 2020, 검색일자: 2020. 9. 15.; ATO, "Draft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2017/4DC2,"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bulletins-newsroom/General/Draft-Practical-Compliance-Guideline-2017/4DC2/>, 검색일자: 2020. 9. 15.

445) ATO, "Draft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2017/4DC2,"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bulletins-newsroom/General/Draft-Practical-Compliance-Guideline-2017/4DC2/>, 검색일자: 2020. 9. 15.

446) 호주 재무부, "Budget 2020-21," <https://budget.gov.au/>, 검색일자: 2020. 10. 20.; 호주 국세청, "Loss carry back,"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Direct-taxes/Income-tax-for-businesses/Loss-carry-back/>, 검색일자: 2020. 10. 28.; IBFD, Australia Proposes Individual Tax Cuts and Various Corporate

- ▶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함
 - 19%의 세율 적용 한도를 3만 7천호주달러⁴⁴⁷⁾에서 4만 5천호주달러⁴⁴⁸⁾로 상향 조정함
 - 32.5% 세율 적용 한도를 9만호주달러⁴⁴⁹⁾에서 12만호주달러⁴⁵⁰⁾로 상향 조정함

〈표 III-1〉 호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단위: %, 호주달러)

소득세율	과세표준	
	현행(2018~19)	변경 후(2020~21)
0	0 ~ 18,200	0 ~ 18,200
19	18,201 ~ 37,000	18,201 ~ 45,000
32.5	37,001 ~ 90,000	45,001 ~ 120,000
37	90,001 ~ 180,000	120,001 ~ 180,000
45	>180,000	>180,000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0. 11. 3.

- ▶ 연 매출액이 50억호주달러⁴⁵¹⁾ 미만인 법인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함
 - 결손금 소급공제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나 2019/20, 2020/21, 2021/22 회계연도에 한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2018/19, 2019/20, 2020/21 회계연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음
- ▶ 자산의 즉시 상각 한도를 기존의 5억호주달러⁴⁵²⁾에서 50억호주달러⁴⁵³⁾로 확대하였으며, 자산의 즉시 상각 기한 또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적격 기업의 자산 구매가격이 15만호주달러⁴⁵⁴⁾ 이내인 경우 해당 자산을 즉시 상각할 수 있음

Tax Changes(Oct 7, 2020); IBFD, Australia Announces Individual Tax Cuts in 2020 Federal Budget(Oct 7, 2020)

447)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89만원임
 448)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36만원임
 449)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272만원임
 450)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696만원임
 451)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400억원임
 452)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40억원임
 453)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400억원임
 454)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120만원임

- ▶ 소규모 기업 세제 혜택 대상을 기존의 연 매출액 1천만호주달러⁴⁵⁵⁾ 미만 기업에서 연 매출액 5천만호주달러⁴⁵⁶⁾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며, 대표적인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적격 기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초기 사업비용 및 특정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함
 - 2021년 4월 1일부터 주차 경비, 휴대용 전자기기(예: 휴대폰, 노트북 등)에 관한 부가급여세(FBT)를 공제함⁴⁵⁷⁾

7 뉴질랜드

가.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 뉴질랜드 국세청은 암호화폐 자산이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 및 개인에게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전달하고자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⁴⁵⁸⁾
 - ▶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개인 및 기업 간에 판매, 거래 및 교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임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 암호화폐 소득도 포함해야 함
- ▣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소득 및 공제 대상, 암호화폐 기록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음⁴⁵⁹⁾
 - ▶ 암호화폐 소득에는 다음의 수입이 포함됨
 - 채굴한 암호화폐(블록 보상, 거래 수수료 등 포함)

455)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억 801만원임

456)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4억 94만원임

457)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는 일반적인 급여 외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물질적인 이득(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함

458) IRD, "New Inland Revenue guidance on cryptoassets," Sep 7, 2020. <https://www.media.ird.govt.nz/articles/new-inland-revenue-guidance-on-cryptoassets/>, 검색일자: 2020. 9. 15.; *Bloomberg Tax*, "New Zealand Cryptocurrency Traders Must Pay Tax on Foreign Sales," Sep 7, 2020, 검색일자: 2020. 9. 15.

459) IRD, "Taxing cryptoasset income," <https://www.ird.govt.nz/cryptoassets/taxing>, 검색일자: 2020. 9. 23.

- 지분 증명(proof of stake) 방식으로 얻은 암호화폐
- 암호화폐 대여를 통해 얻은 암호화폐 이자수익
- 암호화폐의 판매 또는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
- ▶ 암호화폐 소득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암호화폐 취득 시 지불한 비용(예: 거래 수수료)
 -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비
 -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타 비용(예: 전기료, 임차료 등)
- ▶ 소득세 신고 시 암호화폐 소득은 뉴질랜드달러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환율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납세자는 다음 정보에 대하여 최소 7년 동안 기록 및 보관해야 함
 - 암호화폐 유형, 거래 날짜, 거래 유형(예: 취득 또는 처분), 거래단위 수, 거래금액(뉴질랜드달러), 연초 및 연말에 보유한 각 암호화폐의 총단위 수, 화폐 교환 기록 및 은행 명세서, 암호화폐지갑 주소

나. ▶ 최고소득세율 개정안 국회 의결

[조세동향 20-12호]

- ▶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 12월 2일 과세표준 구간 및 최고세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뉴질랜드 국회는 12월 3일 개정안을 의결함⁴⁶⁰⁾
- ▶ 개정안에는 2021~2022년 과세연도 동안 개인소득세,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 tax),⁴⁶¹⁾ 근로자 퇴직연금(The Employer's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ESCT)에 대한 최고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됨

460) The Taxation(Income Tax Rate and Other Amendments) Bill, <https://www.ird.govt.nz/updates/news-folder/the-taxation-income-tax-rate-and-other-amendments-bill>, 검색일자: 2020. 12. 15.

461) 복리후생세란, 고용주가 제공하는 급여 외의 혜택을 말함. 대표적으로 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가용,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저금리 대출, 직원의 질병·사고·사망 시 혜택받는 기금에 대한 고용주의 기부, 회사에서 가입하는 특정 연금·보험제도가 있음. 직원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받는 경우 고용주는 복리후생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 과세표준 구간 및 최고세율을 개정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국가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⁴⁶²⁾
 -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 및 최고세율은 약 8만 6,700명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연간 약 5억 5천만뉴질랜드달러⁴⁶³⁾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나, 원천징수세(Resident Withholding Tax: RWT)⁴⁶⁴⁾에 대한 최고세율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 ▣ 2021~2022년 과세연도 동안 개인의 연간소득에는 18만뉴질랜드달러⁴⁶⁵⁾를 초과할 경우 개정된 최고세율인 39%가 적용됨⁴⁶⁶⁾
 - ▶ 기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인 33%는 2021~2022년 과세연도 동안 7만뉴질랜드달러⁴⁶⁷⁾에서 18만뉴질랜드달러 구간에 적용됨⁴⁶⁸⁾
- ▣ 뉴질랜드 복리후생세에는 12만 9,680뉴질랜드달러⁴⁶⁹⁾를 초과할 경우 개정된 최고세율인 63.93%가 적용됨⁴⁷⁰⁾
 - ▶ 기존 복리후생세금 최고세율인 49.25%는 5만 5,981뉴질랜드달러⁴⁷¹⁾에서 12만 9,680 뉴질랜드달러 구간에 적용됨
- ▣ 뉴질랜드 근로자 퇴직연금에는 21만 6천뉴질랜드달러⁴⁷²⁾를 초과할 경우에 최고세율 39%가 적용됨⁴⁷³⁾

462) IBFD, "Labour Party Proposes Higher Individual Tax Rat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9-10_nz_1#tns_2020-09-10_nz_1, 검색일자: 2020. 12. 15.

463)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56억 7,250만원임

464) Resident Withholding Tax on interest(RWT)payer's guide,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home/documents/forms-and-guides/ir200---ir299/ir283/ir283-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8.

465)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931만원임

466) IBFD, "Parliament Passes Taxation(Income Tax Rate and Other Amendments) Bill,"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04_nz_1.html, 검색일자: 2020. 12. 15.

467)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417만원임

468) IBFD, "Minister of Revenue Outlines Government's Tax Agenda,"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1-30_nz_1#tns_2020-11-30_nz_1, 검색일자: 2020. 12. 18.

469)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8만원임

470) Fringe Benefit Tax Guide,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home/documents/forms-and-guides/ir400---ir499/ir409/ir409-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8.

471)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93만원임

472)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703만원임

- ▶ 기존 근로자 퇴직연금 최고세율인 33%는 8만 4,001뉴질랜드달러⁴⁷⁴⁾에서 21만 6천뉴질랜드달러 구간에 적용됨

473) Employer's guide Information to help you with your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r, <https://www.ird.govt.nz/-/media/project/ir/home/documents/forms-and-guides/ir300---ir399/ir335/ir335-2020.pdf>, 검색일자: 2020. 12. 18.

474) 2020년 1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26만원임

IV 국제기구

1 OECD

가. 디지털세 논의 Pillar 1, 2 Blueprint 공개

[조세동향 20-10호]

- ☐ OECD는 2020년 10월 12일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국가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Pillar 1, 2 Blueprint를 공개함⁴⁷⁵⁾

 - ▶ 해당 보고서는 2019년 10월 및 11월에 공개된 Pillar 1, 2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개정한 것임
 - ▶ OECD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2020년 12월 14일까지 수렴하여 2021년 1월 중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 OECD/G20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를 2021년도 중반으로 연장할 것으로 발표함

- ☐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Pillar 1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음⁴⁷⁶⁾

 - ▶ Pillar 1의 핵심 구성요소를 Amount A, Amount B, 조세 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구성요소를 구체화하였음
 - ▶ Amount A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일부분을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으로 배분하는 것임
 - 대상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475) OECD, <http://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community-renews-commitment-to-address-tax-challenges-from-digitalisation-of-the-economy.htm>, 검색일자: 2020. 10. 21.

476) 기획재정부,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1788&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0. 10. 21.

- 글로벌 매출액 및 국외 대상 업종 매출액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함
- 과세연계점이 발생하는 최소 매출의 기준 금액을 적용함
- 시장소재지국으로 귀속할 매출액은 세부 업종별 지표에 따라 계산함
- 과세표준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함
- Amount A 과세이익은 이익률에 따라 초과이익을 계산한 뒤 배분율에 따라 시장소재지국 배분 대상 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함
- ▶ Amount B는 다국적기업 국외 관계사의 기본적인 판매 및 홍보활동에 대해 고정세율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임
- ▶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를 개발함

📌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Pillar 2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Pillar 2의 핵심 구성요소를 세원잠식방지규칙, 원천지국과세규칙, 규칙 간 적용순위 등 조정으로 구분하였음
 - 세원잠식방지규칙은 소득산입규칙과 비용공제부인규칙으로 세분화하였음
- ▶ 대상 기업은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해당하며,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⁴⁷⁷⁾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함
- ▶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 (Top-up Tax)으로 과세함
 - 실질 사업활동에 기반한 부분은 고정률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 소득산입 규칙의 경우 저세율 국가 소재 국외 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거주지국에서 지분율만큼 추가 세액을 부담함
- ▶ 비용공제부인규칙의 경우 저세율 국가 소재 구성회사에 공제되는 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구성회사는 원천지국에서 추가 세액을 부담함
- ▶ 규칙의 중복 적용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순위를 조정함

477) 2020. 10. 28. 원화 환산 시 약 9,990억원임

나. BEPS Action 14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0-11호]

☐ OECD는 2020년 10월 22일 BEPS 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체코, 덴마크,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등 8개국에 대한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peer review)를 발표함⁴⁷⁸⁾

- ▶ 상기 국가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BEPS Action 14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OECD는 프로젝트 참여국을 10개의 조로 나누어 최소 기준 충족 여부 및 “1단계 상호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 여부의 2단계 상호검토를 진행함⁴⁷⁹⁾
- ▶ 보고서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각국 이행사항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고,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AP 통계를 도입함
 - BEPS Action 14 최소 기준은 MAP을 평균 24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보고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국이 “MAP 통계보고체계(MAP statistics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한 MAP 통계를 도입함⁴⁸⁰⁾

☐ 8개국에 대한 2단계 상호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 8개국은 BEPS 방지 다자협약(Multilateral Instrument)에 서명하였고 5개국은 비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음
- ▶ 덴마크,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은 한 국가의 반대가 상대 관할국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지 또는 양자 합의 절차를 문서화함
- ▶ 8개국은 각각의 관할 관청에 인력을 더 배치하고, MAP 사례를 적시에 더욱 효과적인

478) OECD, “Action 14 peer review,” <http://www.oecd.org/tax/dispute/making-tax-dispute-resolution-more-effective-new-peer-review-assessments-for-czech-republic-denmark-finland-korea-norway-poland-singapore-and-spain-october-2s020.html>(accessed Nov 17, 2020); IBFD, “BEPS Action 14: OECD Welcomes Positive Progress in Stage 2 Peer Review Monitoring Report Results,” Oct 22,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0-22_o2_1.html(accessed Nov 17, 2020)

47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9-2호, 2019, p. 124.

480) OECD, “MAP Statistics Reporting Framework,” <https://www.oecd.org/tax/dispute/mutual-agreement-procedure-statistics-reporting-framework.pdf>(accessed Dec 1, 2020)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칙을 개선함

- ▶ 덴마크,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은 MAP 종결까지 요구되는 기간을 단축함
- ▶ 싱가포르는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싱가포르법상의 기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MAP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법을 수정함
- ▶ 덴마크, 핀란드, 대한민국, 노르웨이, 싱가포르는 MAP 지침을 발간 또는 개정함

다. 암호화폐 조세정책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0-11호]

- ▣ OECD는 2020년 10월 12일 암호화폐 조세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가 간 암호화폐 조세정책을 개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정책 이슈를 다룸⁴⁸¹⁾

 - ▶ 보고서는 암호화폐 조세정책 입법에 대한 국가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특히 암호화폐에 대하여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다룸
 - ▶ 본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조세정책 차이점에 대하여 통합적인 분석방법으로 접근한 OECD의 첫 번째 공식 보고서임
 - OECD는 가상자산(crypto assets)과 관련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고 및 교환을 위하여 기술적인 제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함
- ▣ 주된 내용은 첫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개념, 둘째, 조세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 셋째, 약 50개국의 암호화폐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한 것임

 -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정의, 특징, 암호화폐의 합법성 및 가치, 암호화폐의 발행에서 폐지까지의 각 단계에서 조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조세정책의 실행에 대해서 다룸
 - 가치안정 화폐(stable coins)⁴⁸²⁾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481)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EY, "OECD releases report on taxing virtual currencies," November 3, 20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releases-report-on-taxing-virtual-currencies(accessed Nov 17, 2020)

482) 가치안정 화폐란,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것으로 이를 발행·매각하는 주체는 시중은행 등 제3자에 법정화폐, 국채, 원자재 등과 같은 각종 안정자산을 담보 성격인 준비금으로 위탁하여 발행액과 준

CBDC)⁴⁸³⁾에 대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름

- ▶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관점에서 약 50개국의 조세정책을 비교하여 핵심 고려 사항을 다름
 - 대부분의 국가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는데 특히 영업권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암호화폐의 교환 및 상품·서비스 구매 시 암호화폐의 사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 받은 상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새롭게 채굴한 암호화폐를 발행받는 행위 또한 부가가치세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봄

2 EU

가. Tax Package 발표

[조세동향 20-07호]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5일 Tax Action Plan, 7차 DAC 개정, EU 및 EU 외의 국가들과의 조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Tax Package를 발표함⁴⁸⁴⁾
- ▶ EU 경제 회복을 위한 Tax Action Plan으로, 2024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는 25개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함⁴⁸⁵⁾

비금을 일치시킴으로써 가격안정성을 확보함. 전 세계 약 30종이 있으며 그중 테더(Tether)가 총거래액의 90%를 차지하고, 리브라(Libra)는 페이스북이 고안 및 설계하고 있는 가치안정 화폐임(한국금융연구원, 「암호화폐와 안정코인」, 주간금융브리프, 제28권 제13호, 2019, pp. 19~21)

48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란,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화폐로, 실물과 같은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 이체는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됨(김의석, 「디지털화폐와 화폐 변천과정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적패턴, CBDC, 리브라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5권 제2호, 2020, p. 117)

484) News IBFD, “European Union-European Commission Proposes Tax Action Plan, DAC7 and Review of EU Anti-Avoidance Instruments,” Jul 1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16_e2_1(accessed Jul 29, 2020); EU, “Package for fair and simple taxat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general-information-taxation/eu-tax-policy-strategy/package-fair-and-simple-taxation_en(accessed Jul 29, 2020)

485) EU, “Tax Action Plan for Fair and Simple Taxation Supporting the EU’s recovery,” Jul 15, 2020, <https://ec>

- 온라인 플랫폼 경제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반영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규정을 개정함
- 단일 VAT 등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EU 역내 재화 및 용역 거래를 활성화함
- EU 내 cross-border 근로자를 위한 거주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함
- ▶ 조세 행정 협력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DAC7), 디지털 플랫폼 이용 판매자들에 관한 소득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EU 역내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자 (Seller)에 관한 특정 정보를 해당 관할 국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후, 권한 있는 당국은 보고된 정보를 자동교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⁴⁸⁶⁾
- ▶ EU 비협조국 리스트와 행동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개선함으로써 EU 및 EU 외 국가 간 Tax Good Governance에 관한 의사소통을 강화함

나. 조세회피방지지침 이행 관련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0-08호]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8월 19일 EU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이행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함^{487), 488)}
-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이자비용공제규정,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하 ‘GAAR’), CFC 규정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개관하고 있음
- EU는 ATAD의 국내법 도입 시 회원국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선택 내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2020_tax_action_plan_for_fair_and_simple_taxation_supporting_eu_recovery_1.pdf](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2020_tax_action_plan_for_fair_and_simple_taxation_supporting_eu_recovery_1.pdf)(accessed Jul 29, 2020)

486) EU,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Jul 15, 2020,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2020_tax_package_dac7_en.pdf(accessed Aug 5, 2020)

487) News IBFD,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Issues First Implementation Report on ATAD,” Aug 2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0_e2_1(accessed Sep 1, 2020)

488)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20/EN/COM-2020-383-F1-EN-MAIN-PART-1.PDF>, 검색일자: 2020. 9. 1.

〈표 III-2〉 이자비용공제규정 관련 도입 현황

(단위: 국가 수)

분류	세부내용	
공제 가능 한도(2.1.a)	EBITDA의 30%	EBITDA의 30% 미만
	22	1
최소 기준/세이프 하버 적용 여부(2.1.b)	300만유로 ¹⁾	300만유로 미만
	16	6
비관계기업 공제 가능 한도(2.1.c)	독립기업 면제 허용	독립기업 면제 비허용
	9	18
ATAD 도입 이전 거래 소급 적용 여부(2.1.d)	2016. 6. 17. 이전 대출 제외	2016. 6. 17. 이전 대출 포함
	9	11
공공 인프라 관련 대출 거래 포함 여부(2.1.e)	제외	포함
	16	11
연결대상 종속기업 추가 시 공제한도 증가 방식(2.1.f)	Equity escape 허용	Group ratio rule 허용
	8	6
이월공제 가능 기간(2.1.g)	기간 제한 없음(option g.1)	5년 제한(option g.3)
	20	1
금융 거래 포함 여부(2.1.h)	제외	포함
	17	10

주: 1) 2020. 9. 1.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억 5천만원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20/EN/COM-2020-383-F1-EN-MAIN-PART-1.PDF>, 검색일자: 2020. 9. 1.

〈표 III-3〉 CFC 규정 관련 도입 현황

(단위: 국가 수)

분류	세부내용	
규정 방식(2.2.a)	특정 유형의 소득 대상 (Option A)	인위적으로 자회사/PE에 이전된 소득 대상(Option B)
	16	10
Option A: 비유럽국가로의 적용 범위 확장 여부(2.2.b)	제3국으로 확장	EU회원국으로 제한
	10	5
Option A: 대상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CFC 제외 규정(2.2.c)	도입	미도입
	12	3

〈표 III-3〉 계속

(단위: 국가 수)

분류	세부내용			
Option A: 일정 금액 미만의 금융거래구조를 CFC에서 제외(2.2.d)	제외함		제외하지 않음	
	5		10	
Option B: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 scope에서 제외하는 규정(2.2.e)	도입		미도입	
	7		3	
광의의 CFC 정의 규정(2.2.f)	CFC 정의 확장		CFC 정의 확장 규정 미도입	
	17		10	
화이트/블랙/그레이 리스트 이용 여부(2.2.g)	White list	Black list	White+Black list	미채택
	1	7	1	18

자료: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20/EN/COM-2020-383-F1-EN-MAIN-PART-1.PDF>, 검색일자: 2020. 9. 1.

- GAAR에 관해서 EU가 회원국들에 별도로 제시한 옵션이 없음
- ▶ 집행위원회는 4개 회원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이 이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상기 4개 회원국들에 2020년 8월까지 그 이행을 촉구함
- 회원국들은 2018년 말까지 이자비용공제규정, GAAR, CFC 관련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한 후 이를 EU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1월까지 출국세와 혼성불일치규정 등의 이행 여부 평가 등을 모두 반영한 전반적인 평가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라 밝힘

다. VAT GAP 조사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0-09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10일, 2018년도 실제 측정치를 반영한 VAT Gap 조사 보고서⁴⁸⁹⁾를 발표함⁴⁹⁰⁾

489) European Commission,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 Sep 2020.

490) EU,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tax-cooperation-control/vat-gap_en, 검색일자: 2020. 9. 16.

- ▶ VAT Gap이란 국가별 부가가치세 예상 수입과 실제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의미함
 - ▶ 해당 조사 보고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된 EU 28개 회원국의 VAT Gap을 조사하는 연구 보고서의 일환으로 발간됨
- ▣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VAT Gap은 140조유로로 예상되어 2017년도보다 약간의 감소세를 보임
- ▶ 2019년도 역시 VAT Gap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VAT Gap이 164조유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 절대 수치로 계산한 VAT Gap은 2014년 162조유로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도 141조유로, 2018년도 140조유로로 측정되었으며 2019년은 125조유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 부가가치세 징수금액 대비 비율로 계산한 VAT Gap은 2014년도 14.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도 11.5%, 2018년도 11%, 2019년도는 9.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 VAT Gap 예측치의 국가별 차이는 세무행정이행, 조세사기, 조세회피, 파산, 채무불이행 등의 EU 회원국 간 차이 상태를 반영함
- ▶ 2019년도 기준 VAT Gap을 부가가치세 징수금액 대비 비율로 계산하였을 때 수치가 높은 회원국은 루마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수치가 낮은 회원국은 스웨덴, 크로아티아, 핀란드가 해당됨
 - ▶ VAT Gap을 절대 수치로 계산하였을 때 가장 높은 회원국은 이탈리아이며, 영국과 독일이 뒤를 이음

라. DAC7 관련 합의 도출 및 DAC8 작업 착수

[조세동향 20-12호]

- ▣ EU는 2020년 11월 21일 강제정보보고 행정협력지침(DAC7)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DAC7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국의 내국법령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⁴⁹¹⁾

491) *Tax Notes International*, "EU Reaches Consensus on DAC 7," Nov 30, 2020, pp. 1224~1225.

- ▶ EU 집행위원회는 OECD 모델 보고 규칙의 대상활동(교통, 부동산 자산 임대, 배달 및 법률 업무와 같은 개인 서비스)에 더하여 상품 판매, 투자,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관련한 대출도 포함하여 대상활동으로 제안하였음
 - 일부 회원국은 상품 판매를 포함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합의안은 클라우드 펀딩 관련 대출만 제외함
- ▶ 적용 영역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역외 플랫폼을 포함하였으나 회원국은 규칙 적용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
 - 합의안에 따르면 EU 외의 관할국과 EU 회원국 사이에 동일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규정한 적절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역외 플랫폼은 EU 회원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 이 조항은 역외 플랫폼이 설립된 EU 외의 관할국이 DAC7과 동등한 수준의 강제 정보보고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 EU는 2020년 11월 23일 DAC8과 관련한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함⁴⁹²⁾

- ▶ EU 집행위원회는 조세투명성 강화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행정협력지침(2011/16/EU)의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crypto assets)과 사이버머니(e-money)로 확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과세 목적으로 적절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작업(DAC8)에 착수함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도입한 ‘디지털 재정 전략(digital finance strategy)’에 따라 DAC8과 관련한 작업을 하고, 시장에 기초한 규제 수단 및 법 제도를 강화하여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고자 함

492) *Tax Notes International*, “EU to Expand Exchange To Cryptoassets, E-Money Under DAC 8,” Nov 30, 2020, p. 1226.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2020년 12월 24일 인쇄

202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 유 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